

농어업위, 농어업인삶의질위 통합에 따른 추진체계 개편 방안 연구

2023. 05.

PCAFRP

PRESIDENTIAL COMMITTEE ON AGRICULTURE,
FISHERIES AND RURAL POLICY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정책연구보고

농어업위, 농어업인삶의질위 통합에 따른 추진체계 개편 방안 연구

발행 | 2023. 05.

발행인 | 장태평

발행처 |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우)03171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82 S빌딩 16층

대표전화 02-6260-120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제 출 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농어업위, 농어업인삶의질위 통합에 따른 추진체계 개편 방안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3년 5월

연구기관 : 한국행정학회

연구책임자 : 김 동 욱(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연구참여자 : 박 정 호(상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배 관 표(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교수)

전 대 성(전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연구보조원 : 박 종 석(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박사과정)

조 영 민(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과정)

최 한 별(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과정)

1.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기온상승 등 이상기후와 탄소중립을 위한 비용 증가에 따라 농어업·농어촌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으며 농어업인의 고령화 심화와 농어촌 소멸 위기가 계속되고 있고, 이러한 문제는 어느 한 정책 분야나 영역에 국한되지 않아 문제의 파악과 해결책의 제시에도 어려움이 노정되어 있음
- 최근 주목받고 있는 지능정보기술의 등장과 디지털 전환 등 기술의 발전은 작업의 지능화·자동화·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한국 농어업의 질적 도약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고, 100억 명에 이를 세계인구를 새로운 시장으로 고려할 때 한국 농어업의 양적 성장에 대한 기회에 주목할 수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농어업위는 향후 통합적 관점에서 농정 전환의 방향을 설정하고, 전환의 속도를 높여 농어업인의 행복과 농산어촌의 발전에 기여할 필요성이 대두됨
- 한편, 행정안전부는 '22년 7월 5일 국무회의에서 위원회의 30% 이상을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정부 위원회 폐지 및 통합 추진계획을 보고하였으며, 여기에 농어업위와 삶의질위를 통합하기 위한 법률안 개정이 포함됨
- 이에 위원회 통합에 따른 후속 조치의 필요성이 대두됨. 따라서 농어업위와 삶의질위의 통합으로 농어업위의 관점에서 추진체계 정비 및 기능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삶의질위의 기능을 농어업위가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연구의 목적

○ 위원회 통합 추진의 보완이 필요함

- 삶의질위 기능이 이관됨에 따라 농어업위의 전반적 변화가 요구되나 급격한 이관 결정으로 추진체계 개편 및 기능강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며, 삶의질위 기능의 농어업위 이관과정에서 기능공백이나 기능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통합 위원회의 강화가 요구됨

- 농어업위가 삶의질 기본계획을 심의하게 됨에 따라 농어업위의 책임과 권한의 강화는 필연적이나 농어업위의 책임과 권한의 강화가 지체되는 형국이기에 상설화 등에 대한 고민 필요

○ 법적 목표의 실현이 필요함

- 농어업위법의 목적인 ‘국가와 국민경제의 기반인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와 동시에 삶의질법의 목적인 ‘농어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함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연구의 범위

- 내용적 범위: 농어업위 환경분석, 농어업위 및 삶의질위 관련 제도 및 활동 분석
- 공간적 범위: 국내 사례 조사(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 등 행정기관위원회 전반과 벤치마킹이 필요한 주요 자문위원회 심층 분석)와 해외 사례 조사(주요국의 농정 전환 추진 위원회 전반과 벤치마킹이 필요한 주요 국 위원회 사례 심층 분석)

- 시간적 범위: 삶의질법이 공포된 2004년에서 가시적 성과도출이 가능한 2030년까지를 시간적 범위로 함

☐ 연구의 방법

- 문헌 분석: 국내외 문헌 분석 및 내부 자료 분석
- 심층 면담 및 서면 면담: 담당자 심층 면담 진행 및 서면 면담을 통한 보완,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면담

2. 위원회 환경분석

1) 거시 환경 분석

☐ 국가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 세계 경제는 경직되어 있으며, '23년 공급망 불안, 고유가, 고물가 등으로 성장세에서도 둔화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 한국 경제도 이러한 영향에 따라 낮은 수준의 경제성장률이 예상되며, 더욱이 원화의 가치는 평가절하되고, 수출입에서도 적자가 예상됨

☐ 세계 인구의 증가와 한국 인구의 감소

- 세계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한국은 저출산·고령화의 심화와 함께 지방소멸 등이 지속적인 사회문제이며, 농어촌 지역에서의 인구 유출과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 심화가 지속되고 있음

☐ 기술의 발달로 인한 노동력 부족 극복의 기회

-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지능정보기술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의 발달은 도전이자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음

2) 산업 동향 분석

☐ 한국 농업의 위기

- 한국에서의 농업은 경지면적의 감소와 농가인구 감소로 1인당 경지면적은 증가하나 외국과 비교하였을 때 매우 작은 수준임
- 농가인구와 호수는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이나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로 농가인구의 고령화가 심화되어, '32년에는 50% 이상이 65세 이상 농가인구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농가소득은 부(-)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음

☐ 한국 어업의 위기

- 한국의 어항은 '21년 기준 628개이며, 이 중 약 절반(49.7%)이 경남 지역에 위치하며, 한반도 본토(육지)뿐 아니라 도서에도 상당수의 어항이 위치함
- 어가인구와 호수는 줄어들고 있고, 어가소득은 과거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어업소득은 어가소득의 40%에 못미치는 수준

3) 정책 동향 분석

☐ 주요 농정이슈

- 농업 안정화를 위해 ‘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영농 대책 마련’, ‘식량자급률 목표치 재설정과 달성 전략 수립’, ‘다각적 농정 목표 달성을 위한 직불제 확대·개편 추진’, ‘청년농 육성과 농업 노동력 공급 확대’, ‘취약계층 식생활 보장을 위한 정부 역할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 농업 혁신을 위해 ‘농촌공간계획법」 시행에 따른 농촌 정책의 혁신’, ‘농산물 유통 디지털화 진전’, ‘스마트농업 인프라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 농업 글로벌화를 위해 ‘IPEF 참여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전략 마련’, ‘2030 NDC 감축 로드맵 이행 조치 및 기후변화 적응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 국정과제 및 정부 정책

-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농업(70-72) 및 어업(73) 분야와 관련 국정과제로 복지 분야(44-48), 문화 분야(56, 61), 보건 분야(66, 68), 환경 분야(86-87), 청년 분야(90), 지방 분야(111-114, 120)가 확인되며, 120개 중 21개임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업무계획에서 ‘멈추지 않는 농업 혁신, 미래로 도약하는 K-농업!’을 목표로 하고, ① 굳건한 식량안보 확보, ②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③ 든든한 농가경영안전망, ④ 농촌주민·도시민을 위한 새로운 농촌 조성 및 동물복지 강화의 4가지 추진과제를 설정함
- 해양수산부는 2023년 업무계획에서 ‘단단하고 든든한 신해양강국’을 목표로, ① 단단한 해양산업(국제물류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수출형 블루푸드산업 육성, 해양모빌리티산업 주도권 확보, 지역기반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 ② 든든한 국민생활(살기좋은 섬·연안 조성, 기후

변화 대응, 재해 안전 연안 조성)을 주요 과제로 설정함

4) 환경 분석 결과 종합

□ 농어업 · 농어촌의 현재

- 농업인들과 어업인들 모두 농가소득과 어가소득의 대부분이 농업소득과 어업소득이 아니라 이전소득, 농어업외 소득 등에서 나오고 있음

□ 위기의 농어업 · 농어촌

- 농업과 어업으로만 생계를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농업과 어업의 근간이 되는 자연 환경에서 기온상승 등 이상기후와 탄소중립을 위한 비용 증가에 따라 농어업 · 농어촌의 위기는 가중될 수밖에 없음
- 또한 농어업인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농어촌은 소멸위기에 처해 있어 새로운 혁신을 시도하기 어려운 상황임

□ 기회의 농어업 · 농어촌

- 지능정보기술의 등장과 디지털 전환으로 작업이 지능화 · 자동화 · 효율화되어, 한국 농어업의 질적 도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더욱이 국내 시장에 한정하지 않고 100억 명에 이를 세계 인구를 고려할 때 양적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농어업위의 역할

- 통합적 관점에서 농정 전환의 방향을 설정하고, 전환의 속도를 높여 농어업인의 행복과 농산어촌의 발전에 기여할 필요성 대두됨

3. 위원회 현황 진단

1)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현황 진단

□ 농어업위의 설치 배경 및 경과

- '17년 4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농정공약으로 추진하였으나 부진하다가 '19년 4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임
- 대통령이 농정을 직접 챙겨야 한다는 농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설치되었으며, 2022년에는 3대 위원장이 취임함

□ 농어업위 위원회 및 사무국

- 농어업위는 본위원회와 분과위원회(농어업, 농어촌, 농수산식품), 특별위원회(미래수산, 미래산림, 미래신산업, 미래기술, 농업세제개선) 그리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으로 구성됨
- 농어업위 사무국은 협의안건 기획 및 정책 개발, 위원회 개최 및 회의자료 준비, 등 주로 지원업무에 한정되어 있으며, 총괄기획팀, 농어업정책팀, 농어촌정책팀, 농수산식품팀, 대외협력팀으로 구성됨

□ 농어업위 운영 현황

- 농어업위의 본위원회에는 장관 및 차관의 참석이 저조하며, 주로 농식품부와 해수부만 참석하였으며, 대부분의 안건이 원안 의결되었으며, 대통령의 참여는 2019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타운홀미팅

보고대회)가 유일함

- 농어업위는 최근까지의 운영을 통해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을 전환을 농정비전으로 제시’, ‘농민을 위한 농협 혁신 방안을 제시하여 입법화’, ‘농지 소유 및 이용 제도 개선’, ‘식량안보와 국민 먹거리 보장 실현 지원’의 성과를 달성하였음
- 또한 각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 제안을 통해 농어촌 활력 제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으로의 전환’, ‘산림의 공익적 가치 실현’, ‘지속가능한 농축산업으로의 전환 기반 마련’에 기여하였으며, 더 나아가 현장과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도 하였음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현황 진단

□ 삶의 질위 설치 배경 및 경과

- '04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설치되었으며, FTA 대응 및 농어촌 생활여건 향상을 위해 '05년 <제1차 농어촌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5년마다 기본계획을 발표해왔으며 '20년에는 제4차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음

□ 삶의 질위 및 사무국

- 삶의 질위는 본위원회와 실무위원회 그리고 3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되며, 본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5년마다 삶의 질기본계획을 심의하는 것임
- 삶의 질위의 사무국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대신 농림축산식품부 장

관이 위원장(겸 간사위원)으로 하고, 계획의 수립과 심의, 하위 계획, 실태 조사, 평가·점검, 사전 협의(이행계획) 등을 위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실무위원회를 두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지원기관(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지정함

□ 삶의질위 운영현황

- 삶의질위는 기본계획 심의를 위해 제한적으로 개최되었고, 개최된 회의도 대면회의 보다 서면보고가 주를 이룸
- 제3차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종합적 평가와 이를 통한 과제별 개선방안 도출과 종합평가 연구를 통한 중점 추진과제 도출, 부문별 핵심과제 도출 및 이슈페이퍼 작성을 통해 제4차 기본계획을 수립함
- 제4차 기본계획은 ①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과 포용적 공동체 육성, ② 교육·문화 기회의 형평성 보장, ③ 농어촌다움이 살아 있는 정주기반 구축, ④ 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 등 4대 전략별 183개 과제를 제시하였음
- 이 외에도 농어촌 영향평가 제도, 농촌협약, 농어촌서비스기준, 시행계획평가, 현장 모니터링 그리고 사전협의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존 기본계획의 한계를 개선하고자 하였음

3) 위원회 통합 추진 경과 및 주요 쟁점

□ 위원회 통합 추진 경과

- 행정안전부는 '22년 7월 5일 국무회의에서 위원회의 30% 이상을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정부 위원회 폐지 및 통합 추진계획을 보고하였고, 정

부위원회 636개 중 246개(약 39%)를 폐지 또는 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법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국회에 제출함

- 이 중 농식품부는 통합을 통해 3개 위원회 축소, 12개 비상설화, 2개 폐지, 농촌진흥청은 통합을 통해 1개 위원회 축소, 산림청은 통합을 통해 3개 위원회 축소가 각각 해당됨
- 여기에 농어업위와 삶의질위를 통합하기 위한 법률안 개정이 포함되었음. 좀 더 구체적으로 농어업위 위원을 기존 30명에서 50명으로 확대, 삶의질기본계획 수립시 농어업위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삶의질위를 폐지하고 해당 기능을 농어업위에 이관하는 것임

□ 위원회 통합의 주요 쟁점

- 농어업위와 삶의질위 통합을 통해 시너지를 유발하고, 농어업위가 삶의질위의 기능을 추가적으로 수행하는 방식으로의 통합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농어업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업위의 존속기한을 폐지하여, 5년 단위의 삶의질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상설기구화가 우선시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헌법에 명시된 기구는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대통령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정립해야함
- 기존 농어업위는 불명확한 조직목표, 협의기구에 집중하여 자문기구 역할 미흡, 실질적인 정책결정 미흡에 따라 자체적 안전 발굴 곤란, 의결 안전의 집행 및 평가·환류가 곤란하다는 한계를 가지며, 근본적으로 조직자원도 부족한 실정임
- 기존 삶의질위는 심의기구로서의 역할만 수행하고, 그 외 실질적으로

활동은 없었으며, 법률에 따라 정책 총괄 및 조정기구이지만 그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룸

- 실무위원회가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농식품부가 간사 역할을 수행하여 실질적으로 농식품부 중심으로만 운영되었고, 삶의질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대부분의 역할은 전문지원기관이 수행하였음

4) 위원회 현황 진단 결과

☐ 삶의질위의 한계

- 실질적 활동의 부재, 정책 총괄 및 조정 역할 수행 미흡, 농식품부 중심의 운영, 전문지원기관 위주의 기본계획 수립, 각 부처별 계획 및 정책 취합에 그친 삶의질기본계획 등

☐ 위원회 통합의 특성

- 농어업위와 삶의질위의 통합은 농어업인들의 큰 관심사이며, 통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 유발이 기대됨
- 이를 위해 농어업위 위원회 및 사무국이 기반으로 삶의질기본계획, 사전협의, 농어촌영향평가, 농촌협약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추가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여기에는 농어업위의 존속기한 연장, 농어업위 자원 확보가 요구됨

4. 국내외 사례 분석

1) 국내 사례 분석

☐ 행정기관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

- '22년 6월말 기준, 법률과 대통령령에 근거한 행정기관위원회는 총 636개이며, 이 중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21개(행정위원회 2개, 자문위원회 19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는 61개(행정위원회 10개, 자문위원회 51개), 각 부처 소속 위원회는 554개임
- 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평균 회의 예산은 5억 4천여만원이며, 연간 평균 26.57회의 출석회의, 3.48회의 서면회의를 실시함

□ 대표 사례 분석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05년 설립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로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사무국(부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 사무국장 1명, 5개과)을 두고 있음. 관계 기관과의 활발한 협력을 통해 관련 정책 의제를 주도하고 있음
- 국민통합위원회는 2022년 설립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로 3국 9과의 국민통합지원단을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음
- 사회보장위원회는 2013년 설립된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 보건복지부 내에 사무국을 두고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사회보장 기본계획이 여타 계획보다 우선함

2) 국외 사례 분석

□ 미국 사례 분석

- 농업법(Farm Bill)의 5-7년 주기의 제·개정을 통해 국가 전체의 경제기조에 발맞춘 농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농어촌 혁신 및 경제발전 위원회(Council on Rural Community

Innov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CRCIED)의 설치 및 운영. 트럼프 행정부가 대통령 행정명령에 근거해 설치했던 TF를 확대·재편하고 상설기구화하여 설치하였으며, 그 권한을 확대하여 위상을 높여 운영하고 있음

□ 일본 사례 분석

- 지방농정국은 지역의 자연적·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농림수산성이 정한 식량 농업·농촌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각 지역의 상황에 맞는 농정추진을 실시하고 있음
- 식량안정공급·농림수산업기반강화본부는 '13년 농림수산업·지역이 미래에 국가활력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농림수산업·지역의 활력창조 본부로 설치되었다가 '22년 6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림수산업의 기반 강화 도모, 스마트 농림수산업의 추진, 농림수산물·식품의 수출 촉진, 농림수산업의 그린화 등을 추진하기 위해 개편됨

3) 국내외 사례의 시사점

□ 국내 사례 시사점

- 위원회 통합에 따른 조직 및 절차 설계에 있어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기본계획 작성에 있어서 7개 분과위, 130여 명의 전문가들이 10개월에 걸쳐 작성), 국민통합위원회(비전과 정책과제의 유기적 연결, 17개 시도 지역협력위원회 구성을 통한 연계 활동), 사회보장위원회(사회보장 기본계획과 타 계획과의 관계, 보건복지부 내 사무국 설치 등)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음

□ 국외 사례 시사점

- 미국과 일본에서 한국의 농어업위와 유사한 조직을 발견하였으며, 미국은 근거 법령을 정비하고, 일본은 조직 명칭을 변경하는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해당 조직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범부처 조직의 운영과 농림수산업 통합 계획의 수립·집행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음
- 미국의 CRCIED 사례에서는 ① 농림수산업 관련 범부처조직을 설치하고, 충분한 권한을 부여한 점 ② 트럼프 행정부에서 행정명령에 의해 설치했던 조직을 여야 합의를 거친 농업법 개정으로 상설기구화한 점을 참조할 수 있음
- 일본의 농림수산업기반강화본부 사례에서는 범부처조직의 설립과 식량안보 등의 정책방향을 강조하면서, 위원회 조직을 통해 농정 전환을 주도하고 있음을 참조할 수 있음

5. 추진체계 정비 방안

1) 농어업위 기능 강화의 필요성

□ 농어촌 관련 정책조정 중요성 증가

- 여러 부처들이 각각의 정책영역 내에서 각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종합적인 조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더욱이 기후위기 및 지방소멸을 비롯하여 영역을 넘나드는 다양한 농어촌 정책 환경의 변화로 국가 전체의 농어촌 관련 정책조정 기능 필요성이 강화됨
-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다수의 정책이 농어촌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에 따라 부처간 기능 중복의 해결과 미래 정책 추

진을 위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정책조정의 한계점과 필요성이 부각됨

□ 농어촌 정책의 조정기능 기구의 한계점

- 삶의질위 및 사무국 기능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음: ① 위원회 기능 및 운영 미흡: 운영의 형식화, 삶의질기본계획 심의 역할 수행에 그치고 이행 수준 점검이나 선도적인 정책 제안 기능 부족 및 분과위원회 운영 미흡, ② 농식품부 중심 운영, ③ 삶의질위 별도의 사무국 부재, ④ 부실한 기본계획 ⑤ 지역 연계 미흡, ⑥ 추진체계 미활성화
- 농어업위 및 사무국 기능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음: ① 부처의 저조한 농어업위 위원회 참여, ② 사무국이 지원기능에 초점을 맞춰 운영되어 정책 기획 기능과 성과점검 기능 미흡

2) 위원회 기능강화 방향

□ 위원회의 5대 기능 강화

- 대통령 자문기능 강화: 임무 중심형 기관으로서 부처 발굴 과제와 자체 발굴 과제별 자문 수행(난제 중심으로 의제를 발굴하고, 하위 의제로 구체화하여 대통령 자문기능 활성화 기대)이 요구됨
- 부처간 협업기능 강화: 실태조사 → 사전협의 → 기본계획 → 실행계획 → 이행점검의 절차 활용을 위해 삶의질위의 실무위원회와 같은 위원회 조직 구성이 필요하며, 상기 절차를 제도화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관련 부처에서 예산 및 인력이 배분될 필요가 있음(사회보장위원회나 미국 CRCIED의 사례와 같이 통합 위원회의 위상 강화 검토 가능)
- 농어민 소통기능 강화: 농어업위의 차별화된 기능으로, 대외협력팀 강

화를 통해 직능별, 지역별, 이슈별 소통 채널의 체계화와 다양화를 통해 적극적 소통이 필요함

- 미래 대응 의제 주도 기능 강화: 농정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위원회가 소극적인 자문기구로만 머물지 않고, 중장기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주도하는 기능을 행사하도록 하는 재편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성 위기 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정책 및 계획의 심의 및 평가기능 강화: 농어업위에 부재한 정책 및 계획의 점검, 평가, 심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며, 통합 위원회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 증가와 삶의 질 관련 정책 범위의 확대에 따라 부처에서 분야별 인력 파견 필요함

☐ 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한 고려사항

- 중앙-지방의 정책연계성 및 확장성을 위해 기존 지방조직 및 위원회와의 협력적 연계 고려 필요함
- 법적, 제도적 근거 마련을 통해 농어업위 존치와 안정적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명실상부한 농어업 관련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기능할 필요성 대두됨

3) 분과위원회 및 사무국 조직 정비방안

☐ 분과위원회 정비방안

- 삶의질위 기능을 위한 분과위원회 설치: '23년 5월 현재 농어업위와 삶의질위가 통합되는 행정적 개편만 있고, 각각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통합법령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삶의질위를 통합

농어업위의 분과위원회 중 하나로 임시 설치하여 해당 기능 담당시키는 방안이 적절함

- 특히, 과거 삶의질위 본회의 개최는 다소 미흡하였으나 실무위원회나 분과위원회는 비교적 활발한 활동을 해온 점을 고려할 때 긍정적임
- 향후, 농어업위법과 삶의질법이 개정되는 등 두 법령의 통합 수준이 높아지는 상황에 이르면 분과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재조정하는 후속 조치가 필요함
- 현재 설치된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는 정책영역(기능)과 대상이 다소 중복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이를 5대 정책기능(미래, 산업, 공간, 사람, 상품·기술)으로 재편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사무국 조직 정비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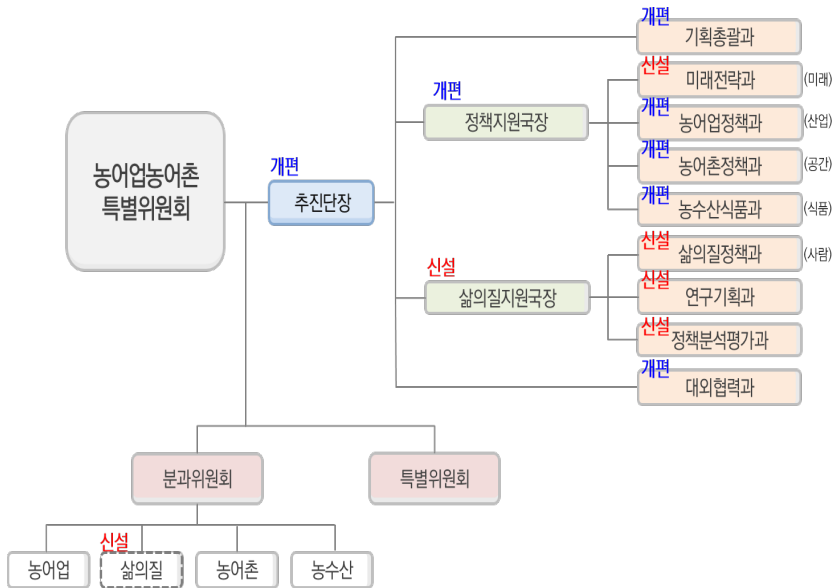
- 삶의질위 사무국 기능 신설: 과거 삶의질위의 별도의 사무국이 실질적으로 부재한 상황에서 삶의질위의 기능을 농어업위로 이관하는 것은 통합 농어업위에 삶의질위 사무국이 신설되는 상황으로 과거 삶의질위의 기능과 역할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직구조 및 인력구성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정책의 심의·총괄·조정기구로서의 기능강화: 농어업위의 고유기능과 이질적인 속성(삶의질위)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농어업위의 핵심기능의 확립과 기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
- 기능의 체계화 및 영역별 정책 구분: 통합 농어업위는 현안 대응뿐 아니라 미래 정책에도 균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영역과 대상을 ‘미래’, ‘산업’, ‘공간’, ‘상품’, ‘사람’의 5개 핵심영역으로 구분하여 분과위원회

와 특별위원회 및 사무국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위원회 위상 및 권한 강화: ① 농어업위의 정책조정 역량 강화를 위해 사무국 직급과 직제 개편, ② 정책점검 및 평가기능의 명확화 및 확대, ③ 교육, 보건복지, 교통, 통신 등 관련된 정책분야의 정책조정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통합된 농어업위에 담당 기능과 사무를 제시하고 관련 부처 공무원 파견 및 전문인력 확보 필요함
- 통합 농어업위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및 사무국 구성 방향: ①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설치 형태에 따른 사무국의 국(과)단위, 과(팀)단위 조직 업무와 기능연계성을 고려하여 사무국 기능과 역할 조정 필요, ② 사무국의 전문성과 업무 지속성 강화를 위해 전문지원기관과의 협력관계 강화 및 위원회 내 전문성을 갖춘 인력 충원, ③ 위원회의 정책조정 및 미래 정책기획을 위한 사무국 예산 확보 필요(정책조정과 축진을 위한 지원 예산과 지원기관의 역할 지원 예산)

□ 사무국 조직 개편(안)

- 사무국 조직 개편 방안: 1국 5팀에서 1단 2국 9과로의 직제 변경, 기존 사무국장은 추진단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상을 강화함, 삶의질 지원국을 신설하여 삶의질 분과위원회 지원·운영, 농어업위의 정책 전반의 기획과 분석평가 기능을 담당하며, 이를 포함한 농어업위 위원회 및 사무국 구성(안)은 다음과 같음



- 농어업위는 임무중심형 위원회 기관으로의 기능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① 미래 농업정책의 의제를 주도하기 위해 농어업위가 장기발전계획을 담당, ② 농어업위의 정책조율 범위 확대가 필요함(교육, 보건복지, 산업 등), ③ 농어업위와 추진단에 다양한 부처 참여를 위한 인력(현원) 파견이 요구됨, ④ 정책 및 계획의 심의 및 평가기능 강화: 농어업위에 부재한 정책 및 계획의 점검, 평가, 심의기능 강화 필요

□ 사무국 조직의 부서별 직제 및 적정 인력규모(안)

- 현원이 26명에서 60명으로 증가되지만, 임기제 및 공무원 인력의 신규채용을 최소화하며, 관계부처의 인력을 파견받아 정책집행과 조정의 실효성을 강화함

- 구체적으로, 삶의질위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의 인력과 사업인력을 이관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인원 증원과 예산 증액을 최소화함(파견:임기직인력 비율을 38:18로 조정함)

□ 적정 규모의 예산(안)

- 예산편성의 효율화와 재무건전성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무실 임차료, 소수의 전문임기제·공무직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정책기획을 위한 연구용역비 등의 증액이 불가피하며, 적정 예산은 92.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농어업위 사무국 36.5억 원, 삶의질위 업무관련 20.0억 원이 기소요되고 있었으며, 전문기관 예산 약 20억 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약 10.1억 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약 7억 원, 농촌진흥청 약 3억 원)과 임차료, 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증액분을 고려한 것임

□ 법률의 개정방향 및 부분개정(안)

- 농어업위 법령 개정 방향: 현재는 농어업위법과 삶의질법으로 분절적으로 설계되어 종합적인 농어업 관련 정책조정에 대한 명확한 권한과 기능 제시에는 한계 노정, 부처들은 개별적으로 농산어촌, 농수산업, 임업, 주민복지 등 농어업위와 관련된 국가 기본계획이 중복적·분절적으로 수립되는 문제 발생함
- 국가법정계획의 난립과 정책조정의 한계 개선을 위해 농어업위의 근거 법령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법률안으로 명시(포함) 필요: ①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회’ 명칭을 ‘농어업·농어촌위원회’로 변경 필요, ② 개정된 법률안에 농어업위가 “농어업위가 「농어업·농어촌 국가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한다.” 규정 명시가 필요, ③ 개정된 법률안에 농어업위의 “농어업·농어촌 국가장기발전계획은 부처별 법정계획을 수립하는데 근거가 된다.” 규정 명시가 필요, ④ 통합 농어업위에 설치되는 삶의 질지원국과 삶의 질정책과가 과거 삶의 질위의 실무위원회를 대체한다는 사항을 법률 개정예 포함 필요, ⑤ 농어업위 법률에서 농어업위 존속 시한 규정 조항 삭제도 개정사항에 포함 필요

차 례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7
제2장 위원회 환경 분석	11
1. 거시 환경 분석	13
2. 산업 동향 분석	21
3. 정책 동향 분석	30
4. 소결	40
제3장 위원회 현황 진단	43
1.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현황 진단	45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현황 진단	59
3. 위원회 통합 추진 경과 및 주요 쟁점	75
4. 소결	83
제4장 국내외 사례 분석	85
1. 국내 사례 분석	87
2. 해외 사례 분석	106
3. 소결	116

제5장 추진체계 정비 방안	119
1.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기능 강화의 필요성	121
2. 위원회 기능강화 방향	124
3. 분과위원회 및 사무국 조직 정비방안	128

표 차례

제2장

<표 2-1> 세계 경제성장률 동향과 전망	14
<표 2-2> 국제 원유 가격 동향과 전망	15
<표 2-3> 환율 동향	15
<표 2-4> 수출입 동향	16
<표 2-5> 한국 경제 동향과 전망	16
<표 2-6> 시·도별 최대 인구 증가·감소 지역(시·군·구)	19
<표 2-7> 경지면적과 경지이용률 동향과 전망	22
<표 2-8> 농가호수, 농가인구 동향과 전망	22
<표 2-9> 호당 농가소득(명목) 동향과 전망	23
<표 2-10> 어촌정주 어항 현황	24
<표 2-11> 어가 변화	27
<표 2-12> 어가 인구 변화	28
<표 2-13> 어가 소득 변화	29
<표 2-14>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관련 내용	34

제3장

<표 3-1> 농어업위법의 주요 내용	46
<표 3-2> 농어업위의 주요 연혁	47
<표 3-3> 본위원회 운영 실적	52
<표 3-4> 삶의질법의 주요 내용(삶의질위 관련)	60
<표 3-5> 삶의질법의 주요 내용(삶의질계획 관련)	61
<표 3-6> 삶의질법의 주요 내용(삶의질 정책 대상 관련)	62
<표 3-7> 삶의질위의 주요 연혁	63
<표 3-8> 삶의질기본계획의 비교	69
<표 3-9> 삶의질기본계획 과제별 이슈페이퍼 작성	70
<표 3-10> 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 소관 위원회 정비 방안	76
<표 3-11> 농어업위 통합 관련 기타 개정 사항	77

제4장

〈표 4-1〉 행정기관위원회 설치근거별 현황	87
〈표 4-2〉 행정기관위원회 소속별 현황(총괄)	88
〈표 4-3〉 소속별 행정기관위원회 현황(세부)	88
〈표 4-4〉 대통령 소속 행정기관위원회 설치 현황	90
〈표 4-5〉 국무총리 소속 행정기관위원회 설치 현황	91
〈표 4-6〉 행정기관위원회 운영 현황	92
〈표 4-7〉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현황	93
〈표 4-8〉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 경과(1차)	94
〈표 4-9〉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 경과(2차)	94
〈표 4-10〉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 경과(3차)	95
〈표 4-11〉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 경과(4차)	96
〈표 4-12〉 국민통합위원회 현황	98
〈표 4-13〉 사회보장위원회 현황	100
〈표 4-14〉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립 경과(1차)	104
〈표 4-15〉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립 경과(2차)	105
〈표 4-16〉 미국 농업법의 변천과 주요 정책 내용	108

제5장

〈표 5-1〉 농어업위 개편전후 비교	136
〈표 5-2〉 직제 및 적정 인력규모(안)	138
〈표 5-3〉 업무분장(안)	139
〈표 5-4〉 농어업위 및 삶의질위 연도별 예산 현황	141
〈표 5-5〉 농어업위 사무국 운영 예산(안)	142
〈표 5-6〉 농어업위법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45
〈표 5-7〉 농어업인 삶의질법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46

그림 차례

제1장

<그림 1-1> 『2023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 중 삶의질위→농어업위 관련 부분	6
--	---

제2장

<그림 2-1> 세계 인구 전망	17
<그림 2-2> 한국의 인구 변화	18
<그림 2-3> 지역별 고령인구 비율 변화	20
<그림 2-4> 기술적 특이점	20
<그림 2-5>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업무계획의 주요 내용	37
<그림 2-6> 해양수산부 2023년 업무계획의 주요 내용	39

제3장

<그림 3-1> 농어업위의 구성	48
<그림 3-2> 사무국의 구성	51
<그림 3-3> 농어촌영향평가의 절차	63
<그림 3-4> 삶의질위의 구성	65
<그림 3-5> 삶의질위 실무위원회의 구성	66
<그림 3-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	67
<그림 3-7> 삶의질 정책 추진체계	71
<그림 3-8> <제4차 삶의질기본계획>의 전략체계	73
<그림 3-9> 사전협의 절차	74
<그림 3-10> 농촌협약의 개념도	74
<그림 3-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 홈페이지	80
<그림 3-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 향상 컨퍼런스 자료집	81

제4장

〈그림 4-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조직도	98
〈그림 4-2〉 국민통합위원회 비전과 목표	99
〈그림 4-3〉 국민통합위원회 조직도	100
〈그림 4-4〉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타 계획간 관계	101
〈그림 4-5〉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102

제5장

〈그림 5-1〉 농어업위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정비방안 구성(안)	129
〈그림 5-2〉 농어업위 정책영역	132
〈그림 5-3〉 현행(개편 전) 농어업위 조직도	135
〈그림 5-4〉 통합(개편 후) 농어업위 조직도	135
〈그림 5-5〉 통합(개편 후) 농어업위 위원회 및 사무국 구성(안)	137

제1장

서론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1. 연구의 배경

□ 외부환경 변화

- 거시환경 분석: 불확실성 증가와 경제성장률 둔화
 -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한국 경제의 낮은 성장률이 예상: '23년 공급망 불안, 고유가, 고물가 등으로 성장세에서도 둔화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 한국은 저출산·고령화의 심화와 함께 지방소멸의 가속화와 농어촌 지역에서 인구 유출 문제의 심화를 경험하고 있음
 - 지능정보기술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도전에 직면
- 산업동향 분석: 농어업과 농어촌의 위기
 - 한국의 농가인구와 호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율의 증가로 농가인구의 고령화가 심화되어, '32년에는 50% 이상

이 65세 이상 농가인구가 될 것으로 전망함

- 한국의 어가인구와 호수는 줄어들고 있으며 어업소득은 어가소득의 40%에 못미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정책동향 분석: 농업 안정화와 농업 혁신을 추구

- 농업 안정화를 위해 ‘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영농 대책 마련’, ‘식량자급률 목표치 재설정과 달성 전략 수립’, ‘다각적 농정 목표 달성을 위한 직불제 확대·개편 추진’, ‘청년농 육성과 농업 노동력 공급 확대’, ‘취약계층 식생활 보장을 위한 정부 역할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 농업 혁신을 위해 「농촌공간계획법」 시행에 따른 농촌 정책의 혁신, ‘농산물 유통 디지털화 진전’, ‘스마트농업 인프라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농업(70-72) 및 어업(73) 분야와 관련 국정과제로 복지 분야(44-48), 문화 분야(56, 61), 보건 분야(66, 68), 환경 분야(86-87), 청년 분야(90), 지방 분야(111-114, 120)가 확인되며, 120개 중 21개임

□ 경제·사회 구조 전환에 따른 행정조직의 변화가 필요

- 세계 경제의 성장 둔화에 따른 한국 경제의 낮은 성장률의 지속과 한국의 농가인구의 감소와 농어업인의 고령화 심화와 소멸위기에 처한 농어촌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농어업 관련 행정조직의 변화가 필요함
- 지능정보기술의 등장과 디지털 전환으로 작업이 지능화·자동화·효율화되어, 한국 농어업의 질적 도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더욱이 국내 시장에 한정하지 않고 100억 명에 이를 세계인구를 고려할 때 양적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농어업 관련 행정조직의 경우 농정 전환의 방향을 설정하고, 전환의 속도를 높여 농어업인의 행복과 농산어촌의 발전에 기여할 필요성이 대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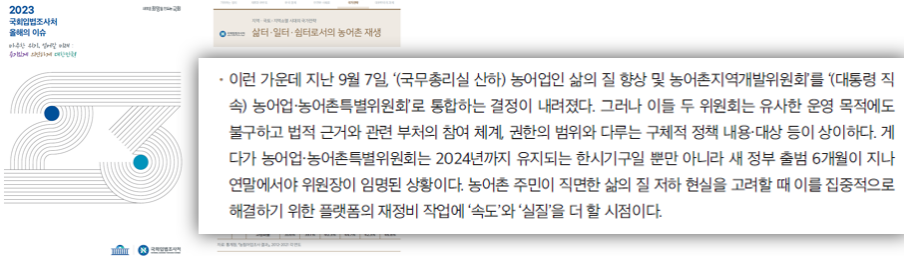
□ 정부위원회 폐지 및 통합 결정

- 행정안전부는 '22년 7월 5일 국무회의에서 위원회의 30% 이상을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정부위원회 폐지 및 통합 추진계획을 보고함
- 정부는 '22년 9월 30일 국회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함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와 농어업의삶의질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이하, '삶의질위')를 통합하는 내용이 포함됨
 - 제정안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삶의질법') 제10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를 삭제하여 삶의질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음
 - 제정안은 해당 기능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위법')에 따른 농어업위에서 수행하도록 함
 - 또한 제정안은 삶의질위의 폐지 및 농어업위로의 통합을 위하여 농어업위의 위원을 기존 3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음
 - 아울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삶의질위 대신 농어업위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

□ 위원회 통합에 따른 후속 조치의 필요성

- 농어업위와 삶의질위의 통합으로 농어업위의 관점에서 추진체계 정비 및 기능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특히 삶의질위의 기능을 농어업위가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필요한 경우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농어업위는 '24년까지 유지되는 한시기구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상설기구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며 전환을 전제로 후속조치 마련이 필요함
- ※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도 '23년 올해의 이슈'로 농어업위 기능 강화에 대하여 언급하였을 만큼 농어업위 이슈는 각계의 관심을 받고 있음

그림 1-1 『2023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 중 삶의질위→농어업위 관련 부분



※ 출처: 국회입법조사처(2023). 『2023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 국회입법조사처.

1.2. 연구의 목적

□ 위원회 통합 추진의 보완

- 삶의질위 기능이 이관됨에 따라 농어업위의 전반적 변화가 요구되나 급격한 이관 결정으로 추진체계가 개편 및 기능강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못함
- 삶의질위 기능의 농어업위 이관과정에서 기능공백이나 기능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통합 위원회 강화

- 농어업위가 삶의질위의 기능, 특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심의하게 됨에 따라 농어업위의 책임과 권한이 확대될 수밖에 없음
- 농어업위가 상설화될 경우, 그에 걸맞게 농어업위의 책임과 권한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상설화는 통합과 함께 고민되어야 함
 - 농어업위는 농어업위법 제13조(존속기한)에 따라 존속기한이 5년으로 제한됨
 - 다만 최근 농어업위를 상설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음¹⁾

□ 법적 목표의 실현

- 궁극적으로 농어업위법의 목적인 ‘국가와 국민경제의 기반인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해야 함
- 아울러 삶의질법의 목적인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함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2.1. 연구의 범위

□ 내용적 범위

- 농어업위 환경을 분석함
 - 거시 환경: 경제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을 분석함
 - 산업 동향: 한국 농업 및 어업 전망을 분석하고 주요 농정이슈를 제시함
 - 정책 환경: 정책동향을 농어업, 농어촌, 농어민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 농어업위 및 삶의질위 관련 제도 및 활동을 분석함
 - 법령: 농어업위법, 삶의질법을 중심으로 하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산림기본법」, 「해양수산물발전 기본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등도 검토함
 - 조직: 농어업위, 삶의질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원조직,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지원조직 등을 검토함
 -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등 농어업위 및 삶의질위 관련 기관들의 제도 및 활동을 추가 분석함

1) 국회의원 홍문표.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역할과 발전방향 정책 토론회. 2023.02.02. 국회의원회관

☐ 공간적 범위

☐ 국내 사례를 조사함

-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 전반을 조사함
- 벤치마킹이 필요한 주요 자문위원회를 심층 분석함
- ※ 법정 계획 의결 기능을 가진 자문위원회를 주로 분석함

☐ 국외 사례를 조사함

- 주요 외국의 농정 전환 추진 위원회 전반을 조사함
- 벤치마킹이 필요한 주요 자문위원회를 심층 분석함

☐ 시간적 범위

☐ 삶의질법이 공포된 2004년을 시간적 범위의 시작으로 함

- 2004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공포
- 2012년: 삶의질위 전문지원기관(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정
- 2018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 2020년: 삶의질위 전문지원기관(한국해양수산개발원) 지정

☐ 가시적 성과 도출이 가능한 2030년까지를 시간적 범위의 끝으로 함

2.2. 연구의 방법

☐ 문헌 분석

- ☐ (국내외 문헌 분석) 관련 정책 논문 및 보고서 등을 분석함
- ☐ (내부 자료 분석) 위원회 및 관련 기관 자료 등을 분석함

☐ 심층 면담 및 서면 면담

- ☐ 담당자를 심층 면담하고, 서면 면담을 통해 보완함

- 농어업위, 삶의질위 운영 담당자를 면담함('23.02.07.&03.17.)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3.03.17.), 한국해양수산개발원('23.03.20.& 03.27.) 담당자를 면담함
 - 농식품부('23.02.10. & 03.17.), 해수부('23.03.23.), 농진청 담당자를 면담함
-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를 면담함
- 농어업위 민간위원(농어업인대표 등)를 면담함('23.03.09.&03.17.)
 - 한국행정학회, 농업경제학회 등 소속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음('23.03.24.)

제2장

위원회 환경 분석

위원회 환경 분석

1. 거시 환경 분석

1.1. 경제 환경

거시환경 분석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행한 『2023 농업전망』에서 재인용함. 한국농촌경제 연구원은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등을 종합하여 내용을 정리한 바 있음

□ 세계 경제 동향과 전망

- '22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크게 줄었음
- 팬데믹의 종식으로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으나 '23년 공급망 불안, 고유가, 고물가 등으로 성장세는 '22년 추정치보다 1.0%p 낮은 2.0%로 전망함
 - 미국의 경우,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성장이 둔화되어 '22년 추정치 대비 1.3%p 낮은 0.4%로 전망함
 - 유럽연합의 경우, 에너지 공급 불안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22년 추정치 대비 3.2%p 낮은 0.0%로 전망하여, 다른 국가에 비하여 경제성장세가 크

계 둔화할 것으로 보임

- 중국의 경우, 부동산 경기침체 및 세계 경제 침체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성장세가 둔화되어 4.5% 수준의 성장이 전망되며 팬데믹으로 인한 불안 요소가 큰 편임
- 일본의 경우 세계 경제 침체로 인한 수출 부진 및 물가 상승으로 '22년 대비 0.2%p 낮은 1.3%로 전망하고 있음

표 2-1 세계 경제성장률 동향과 전망

(단위: %)

구분	'20 (GI)	'21 (GI)	'22(추정)				'23(전망)			
			IMF	WB	GI	평균	IMF	WB	GI	평균
전 세계	-3.2	5.9	3.2	2.9	2.9	3.0	2.7	1.7	1.5	2.0
선진국	-4.2	5.3	2.4	2.5	2.5	2.5	1.1	2.5	0.1	1.2
미국	-2.8	5.9	1.6	1.9	1.8	1.8	1.0	0.5	-0.2	0.4
일본	-4.6	1.7	1.7	1.2	1.6	1.5	1.6	1.0	1.2	1.3
유로지역	-6.2	5.3	3.1	3.3	3.2	3.2	0.5	0.0	-0.5	0.0
개도국1)	-1.8	6.8	3.7	3.4	3.4	3.5	3.7	3.4	3.4	3.5
아프리카2)	-1.9	4.6	3.6	3.4	3.4	3.5	3.7	3.6	3.3	3.5
아시아	-0.9	6.2	4.4	4.7	3.4	4.2	4.9	4.9	3.8	4.5
중국	2.2	8.1	3.2	2.7	3.0	3.0	4.4	4.3	4.4	4.4
중동&북아프리카3)	-4.5	5.0	5.0	5.7	6.1	5.6	3.6	3.5	3.4	3.5
중남미4)	-6.7	6.7	3.5	3.6	3.3	3.5	1.7	1.3	1.5	1.5

1) 사하라사막 이남 지역, 2) WB는 동아시아와 남아시아 평균임, 3) IMF는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포함임, 4) GI는 베네수엘라 제외임

IMF(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22), World Bank(Global Economic Prospects, January 2023), Global Insight(World Overview, December 2022)

※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3). 『2023 농업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2년에 국제유가는 '21년보다 42.0% 상승하였는데, '23년에는 약 11.4% 하락을 전망함

표 2-2 국제 원유 가격 동향과 전망

(단위: 달러/배럴)

기관	구분	'22	'23(전망)				
			1/4	2/4	3/4	4.4	평균
GI	WTI	95.65	85.08	78.48	81.50	84.80	82.47
	BRENT	101.89	91.00	83.67	86.67	90.00	87.83
EIA	WTI	95.08	83.00	87.33	88.00	87.00	86.33
	BRENT	101.29	89.00	93.33	94.00	93.00	92.33

Global Insight 2022.12월 전망치,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2022.12월 전망치임.

※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3). 『2023 농업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국 경제 동향과 전망

- COVID-19 방역 정책 완화로 민간소비가 회복되고 있으나 인플레이션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하여 '22년 대비 1.5%p 감소한 2.6% 성장을 추정함
 - ※ '23년 5월 한국은행은 '23년 경제성장률을 1.4%로 전망하고 있음
- 대면 활동 확대, 고용 여건 개선이 이뤄졌으나 인플레이션 등으로 실질구매력이 하락하여 회복세가 제약될 것으로 예상하여 '22년 대비 4.7% 증가할 것으로 추정함
- 미국 금리 상승에 따른 글로벌 달러화 강세 흐름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한 대내외 여건 악화로 원화 가치가 절하되어 '22년 원/달러 환율은 12.9% 상승한 바 있음

표 2-3 환율 동향

(단위: 원/달러, %)

구분	'20	'21	'22				
			1/4	2/4	3/4	4.4	연간
원/달러	1,180	1,144	1,205	1,260	1,338	1,359	1,292

(변화율)	1.2	-3.0	8.2	12.3	15.6	14.9	12.9
원/위안	171	177	190	190	195	191	192
(변화율)	1.4	3.8	10.3	9.8	9.2	3.1	8.0

※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3). 『2023 농업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중국으로의 수출이 침체하여 수출 경기가 악화된 가운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입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22년 무역수지는 472.3억 달러 적자로 추정함

표 2-4 수출입 동향

(단위: 억 달러, %)

구분	'20	'21	'22				
			1/4	2/4	3/4	4.4	연간
수출액(A)	5,125.0	6,444.0	1,734.1	1,771.3	1,741.0	1,593.2	6,839.5
변화율	-5.5	25.7	18.4	13.0	5.8	-9.9	6.1
수입액(B)	4,676.3	6,150.9	1,776.3	1,834.5	1,923.7	1,777.2	7,311.8
변화율	-7.1	31.5	30.0	22.9	22.6	3.1	18.9
무역수지(A-B)	448.7	293.1	-42.2	-63.3	-182.8	-184.0	-772.3

※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3). 『2023 농업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23년 전반기에는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경제의 성장세가 미약할 것으로 예상하나, 2023년 하반기에는 세계 경제 회복으로 경제성장률이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표 2-5 한국 경제 동향과 전망

(단위: %)

구분	'22(추정)1)	'23(전망)		
		한국은행2)	기획재정부3)	평균
경제성장	2.6	1.7	1.6	1.7

민간소비	4.7	2.7	2.5	2.6
설비투자	-2.0	-3.1	-2.8	-3.0
건설투자	-2.4	-0.2	-0.4	-0.3
상품수출	3.4	0.7	-4.5	-1.9
고용(실업률)	3.0	3.4	3.2	3.3
소비자물가	5.1	3.6	3.5	3.6
경상수지(억 달러)	250	280	210	2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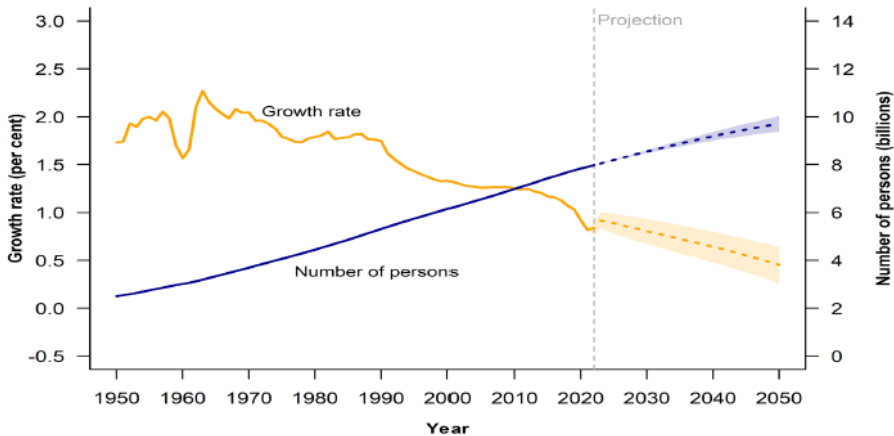
※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3). 『2023 농업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2. 사회 환경

사회환경 분석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행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역할과 발전방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간한 『인구구조 변화대응 및 지역상생을 위한 인구정책 방안 연구』 등에서 재인용함

그림 2-1 세계 인구 전망

Global population size and annual growth rate: estimates, 1950-2022, and medium scenario with 95 per cent prediction intervals, 2022-2050



※ 출처: UN(2022).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2*. UN Department of Economics and Social Affai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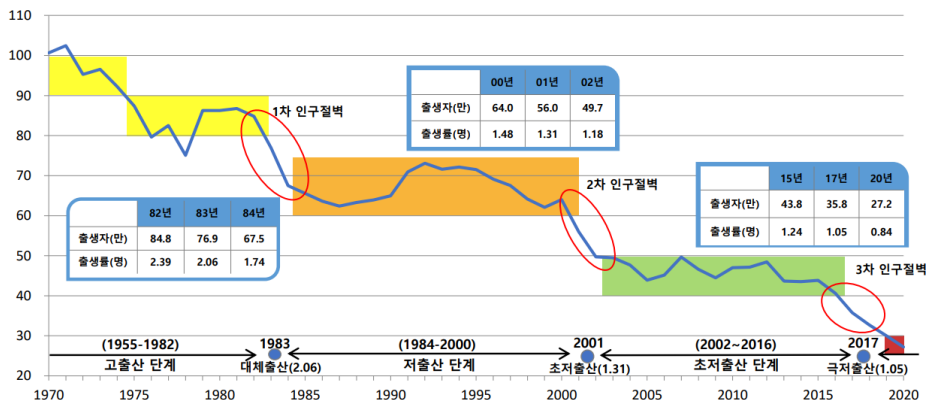
□ 세계인구의 증가²⁾

- 세계인구 증가율은 최근 1% 아래로 떨어졌으나, 인구는 계속 증가함
- '21년 78억 세계인구는 2050년 97억 명에 도달하고, 2080년에 104억 명으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함
- '21년부터는 인도가 인구 1위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함
- 유럽 인구는 2100년까지 계속 줄어든 것으로 예상함

□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격차

-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2년 0.81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한국은 '25년 고령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함
- 한국의 생산연령인구 비율은 2020년 72.1%에서 2030년 61.8%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함

그림 2-2 한국의 인구 변화



※ 출처: 서형수(2021). 「인구변화와 대응」.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 UN(2022).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2*. UN Department of Economics and Social Affairs.

○ 인구구조 변화는 지역간 차이가 발견되고 있음

- 합계출산율은 농어촌지역이 높으나,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전출 인구가 높은 수준임

표 2-6 시·도별 최대 인구 증가·감소 지역(시·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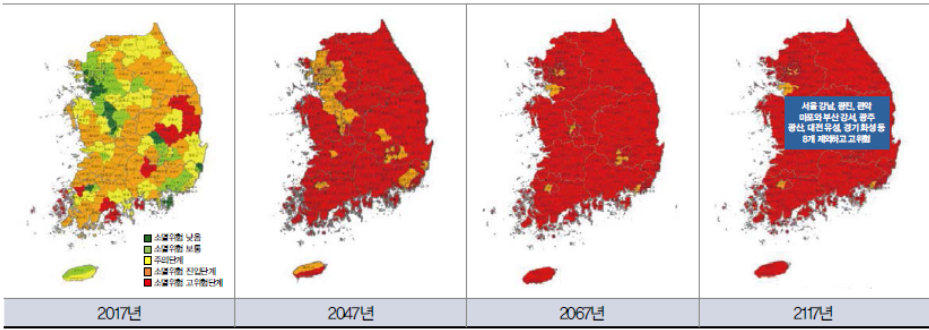
시도	최대 증가 지역	증가 수준(명)	최대 감소 지역	감소 수준(명)
서울특별시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강서구	-4만 8,830
부산광역시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부산진구	-5만 755
대구광역시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달서구	-5만 2,71
인천광역시	서구	3만 1,276	강화군	-1만 3,499
광주광역시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북구	-4만 7,429
대전광역시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중구	-2만 9,197
울산광역시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울주군	-2만 6,194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21만 5,168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경기도	화성시	7만 1,939	양평군	-9,357
강원도	원주시	2만 1,087	횡성군	-4,827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2만 8,859	괴산군	-6,457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7만 4,666	서천군	-6,380
전라북도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정읍시	-1만 5,866
전라남도	순천시	8,462	고흥군	-1만 4,898
경상북도	구미시	2만 9,412	경주시	-1만 7,134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2,488	밀양시	-1만 6,82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9만 4,597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출처: 이보경(2019), 『2040 장래인구 분포 전망 연구』, 국토연구원.

○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고, 지방소멸론이 제기되고 있음

- 감사원은 합계출산율 0.98명 가정하에 소멸 고위험지역이 '17년 12개에서 30년 후인 '47년에는 157개로 급격히 증가하고, '47년에는 서울 강남구 등 전국의 8개 시·군·구를 제외하고 모든 지방이 소멸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음³⁾

그림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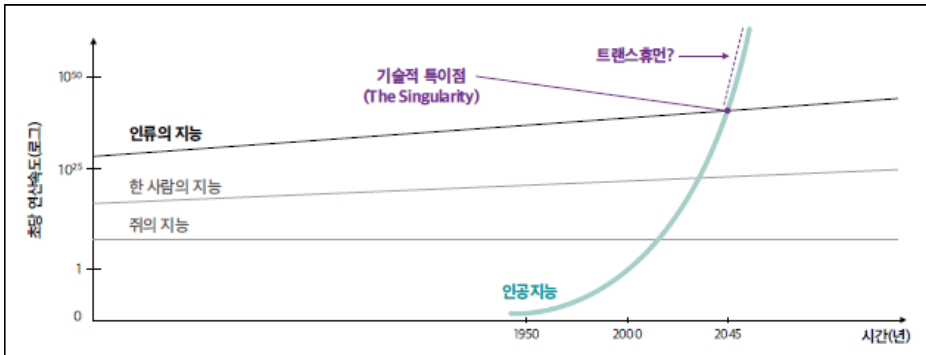
※ 출처: 감사원(2021). 『감사보고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실태 I (지역)』. 서울: 감사원.

1.3. 기술 환경 분석

☐ **지능정보기술의 확산**

- 인공지능 기술로 대표되는 지능정보기술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 Raymond Kurzweil은 기술적 특이점(singularity)을 2045년으로 전망함

그림 2-4



※ 출처: Kurzweil(2005). *The singularity is near: When humans transcend biology*

3) 감사원(2021). 『감사보고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실태 I (지역)』. 서울: 감사원.

□ 국내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 국내 인공지능 기술 발전은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음(오승환, 2020)⁴⁾
 - 인공지능 전체 기업 수는 주요 8개국 중 8위에 불과하나 스타트업은 2위로 향후 발전을 기대해볼 수 있음
 - 인공지능 관련 등록 특허 수는 주요 7개국 중 3위, 특허 점유율도 3위임

2. 산업 동향 분석

2.1. 농업 현황

농업 현황 분석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행한 『2023 농업전망』에서 재인용함. 23년 5월에 발표한 「2022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일부 수정함

□ 농업 현황

- 경지면적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농가인구 감소로 1인당 경지면적은 증가할 것임
 - '22년 경지면적은 전년 대비 0.9% 감소한 153.2만 ha로 추정함
 - '23년에는 전년 대비 1.0% 감소한 151.7만 ha로 전망함
 - '27년에는 경지면적은 유사하나, 1인당 경지면적이 0.1% 증가한 70.0a로 전망함
- 재배면적은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며, 일부 작목의 재배면적만 증가할 것으로 추정함
- 농가인구당 경지면적이 1ha보다 작은 70.0a로 다른 국가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임

4) 오승환 외. (2020). 『인공지능 기술 활용 강국을 향한 과학기술정책 제고 전략』.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표 2-7 경지면적과 경지이용률 동향과 전망

구분	'02	'21	'22 (전망)	전망			연평균 변화율(%)			
				'23	'27	'32	21/02	22/21	23/22	32/02
경지면적 (천ha)	1,863	1,547	1,532	1,517	1,503	1,480	-1.0	-0.9	-1.0	-0.3
호당 경지면적(ha)	1.46	1.50	1.50	1.50	1.53	1.55	0.2	0.1	0.0	0.3
인구당 경지면적(ha)	51.9	69.8	69.9	70.0	72.8	76.2	1.6	0.2	0.1	0.9
경작가능면적(천ha)	1,876	1,504	1,490	1,475	1,461	1,439	-1.2	-0.9	-1.0	-0.3
재배면적(천ha)	2,020	1,614	1,601	1,598	1,569	1,531	-1.2	-0.8	-0.2	-0.4
경지이용률(%)*	107.6	107.3	107.5	108.4	107.4	106.4	-0.0	0.1	0.9	-0.1

※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3). 『2023 농업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가 인구 현황

- '21년 농가인구는 221.5만명으로, '02년부터 연평균 약 2.5% 감소함
 - '32년에는 194.3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함
 - 총인구 중 농가인구 비율은 '32년 3.8% 수준까지 줄어듦 전망임
- '21년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율은 46.8%로 '02년부터 연평균 1.1%p 증가함
 - '32년에는 연평균 0.5%p 증가하여 52.0%까지 확대될 전망임
- '21년 농가호수는 103.1만 호로 '02년 128.0만 호에서 연평균 1.1% 감소함
- '22년부터 10년간 연평균 0.6% 감소하여 '32년에는 95.7만 호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표 2-8 농가호수, 농가인구 동향과 전망

구분	'02	'21	'22 (전망)	전망			연평균 변화율(%)			
				'23	'27	'32	21/02	22/21	23/22	32/02
농가호수(만호)	128.0	103.1	102.1	101.0	98.2	95.7	-1.1	-1.0	-1.1	-0.6
농가인구(만명)	359.1	221.5	219.1	216.7	206.4	194.3	-2.5	-1.1	-1.1	-1.2
65세 이상 농가인구비율(%)	26.2	46.8	46.8	46.8	47.7	52.0	1.1	0.0	0.0	0.5

구분	'02	'21	'22 (전망)	전망			연평균 변화율(%)			
				'23	'27	'32	21/02	22/21	23/22	32/02
총 인구 중 농가 인구 비율(%)	7.5	4.3	4.2	4.2	4.0	3.8	0.2	0.0	0.0	0.0

※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3). 『2023 농업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가소득 현황

- '22년 농가소득은 전년 대비 3.4% 감소한 46,152천 원이었음
- '23년 농가소득은 전년 대비 2.2% 증가한 48,019천 원으로 추정함
- 그러나 농업소득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전망도 밝지 못함

표 2-9 호당 농가소득(명목) 동향과 전망

(단위: 천원, %)

구분	'02	'21	'22	전망			연평균 변화율(%)			
				'23	'27	'32	21/02	22/21	23/22	32/02
농가소득	24,475	47,758	46,153	48,019	51,928	56,240	3.6	-1.6	2.2	1.8
- 농업소득	11,274	12,961	9,485	12,233	14,233	15,291	0.7	-14.7	10.7	3.3
- 농외소득	8,140	17,883	19,202	18,405	18,904	20,554	4.2	5.3	-2.3	0.9
- 이전소득	5,060	14,809	14,853	15,245	16,299	17,785	5.8	0.3	1.3	1.8
- 비경상소득	-	2,105	2,248	2,221	2,492	2,611	-	6.8	3.7	1.5

※ 22년 데이터는 <2022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함

※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3). 『2023 농업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2. 어업 현황

□ 어촌 현황

- '21년 기준 어촌정주 어항은 628개임
- 경남에 가장 많은 312개의 어항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의 49.7%임

표 2-10 어촌정주 어항 현황

(단위: 개)

지역	시군구	구분	어항수	어항
부산	서 구	육지	1	암남항
	해운대구	육지	1	미포항
	사하구	육지	2	장림항, 홍치항
	강서구	육지	4	대항새바지항, 순아항, 신전항, 신호항
	기장군	육지	4	공수항, 동암항, 이천항, 증동항
인천	중 구	육지	5	덕교항, 삼목항, 영종항, 예단포항, 잠진항
		도서	1	소무의항
	남동구	육지	1	남동항
	서 구	도서	1	세어도항
	강화군	육지	7	건평항, 더러미항, 분오리항, 서두물항, 선두4리항, 초지항, 황산도항
	옹진군	육지	2	뱃말항, 선재항
		도서	16	고봉포항, 달바위항, 대이작항, 도우항, 문갑항, 백아리1(학교)항, 백아리2(부대)항, 서포리항, 소아리항, 소이작항, 송봉항, 신도2리항, 웅암항, 장촌항, 중화동항, 지도항
울산	동 구	육지	3	남·상진항, 일산항, 화암항
	북 구	육지	4	곰바우항, 신명항, 어물항, 제전항
	울주군	육지	6	강양항, 대송항, 송정항, 신리항, 진하항, 평동항
경기	안산시	육지	4	구봉항, 선감항, 풍도항, 행남곡항
	김포시	육지	2	고양항, 신안항
	화성시	육지	4	고온항, 매향2리항, 백미항, 송교항
		도서	3	국화항, 도리도항, 입파항
강원	강릉시	육지	3	심곡항, 안인진항, 정동항
	동해시	육지	3	대진항, 어달항, 천곡항
	속초시	육지	2	설악항, 장사항
	삼척시	육지	8	갈남항, 광진항, 노곡항, 대진항, 비화항, 용화항, 월천항, 후진항
	고성군	육지	2	반암항, 초도항
	양양군	육지	4	낙산항, 오산항, 인구항, 후진항
충남	보령시	육지	3	사호항, 죽도항, 학성항

전북		도서	1	오봉산향
	서산시	육지	6	도성향, 별말향, 왕산향, 웅도향, 증왕향, 호리향
		도서	2	고파도향, 우도향
	당진시	육지	4	도비도향, 마섬향, 왜목향, 응무치향
	서천시	육지	3	송림향, 월포향, 장포향
	홍성군	육지	1	수룡향
		도서	1	죽도향
	태안군	육지	12	가경주향, 개목향, 당암향, 대야도향, 연포향, 의점포향, 정산포향, 청산향, 탄개포향, 황골향, 황도향, 황포향
	군산시	도서	11	관리도향, 두리도향, 명도향, 무녀도1구향, 선유1구향, 선유2구향, 신시도향, 신치향, 야미도향, 장자도향, 죽도향
		육지	3	도청향, 모향향, 왕포향
전남	여수시	육지	25	가정향, 감도향, 고내향, 굴전향, 금천향, 두룡개향, 만흥향, 모장향, 봉전향, 상동향, 서외향, 섬달천향, 소치향, 신덕향, 오천향, 월전포향, 이목향, 임포향, 작금향, (돌산읍 우두리)진목향, (소라면사곡리)진목향, 집앞개향, 평사향, 향대향, 호두향
		도서	25	내동향, 대동향, 대두라향, 대유향, 독정향, 모전향, 백야향, 소경도향, 송고향, 송도동편향, 송여자향, 심포향, 안도향, 여석향, 역포향, 오복향, 외동향, 월호향, 유촌향, 장지향, 적금향, 제도향, 죽촌향, 진막향, 산향
	순천시	육지	4	거차향, 대대향, 와온향, 용두향
	보성군	육지	11	객산향, 군농향, 군학향, 대포향, 동율향, 서당향, 선소향, 예당향, 장양향, 청암향, 해평향
	장흥군	도서	1	장흥노력향
	해남군	육지	2	내장향, 한자산소향
	무안군	육지	9	구로향, 남촌향, 닭머리향, 마동향, 복길향, 송현향, 신월향, 월두향, 장재향
	함평군	육지	1	함평향
	영광군	육지	1	대신향
	완도군	도서	8	국화향, 내동향, 당인향, 동천향, 용출향, 일정향, 청별향, 충무향
	진도군	육지	4	금갑향, 동헌향, 보전향, 청룡향
경북	경주시	육지	1	모곡향
	영덕군	육지	6	경정2향, 대부향, 대진1향, 대진3향, 사진2향, 하저향

	울진군	육지	5	금음향, 동정향, 석호향, 울진향, 죽진향
경남	통영시	육지	25	고다골향, 구진향, 공향향, 기호향, 내촌향, 내포향, 당동향, 대방포향, 대안향, 동암향, 모상향, 미수향, 민양향, 삼화향, 소포향, 손덕향, 수월향, 신리향, 양화향, 연기향, 오촌향, 적촌향, 조암향, 중화향, 창포향
		도서	24	거망향, 관암향, 내지향, 답포향, (사량면 금평리)대향향, (산양읍 추도리)대향향, 덕동향, 동부향, 동좌향, 먹방향, 미조향, 봉암향, 상리향, 서부향, 서좌향, 소고포향, 수도향, 수우향, 어의향, 여차향, 옥동향, 외지향, 용초향, 읍포향
	사천시	육지	34	갯섬향, 검도향, 검정향, 광포향, 구랑향, 구우진향, 구포향, 금문향, 내구향, 다맥향, 미룡향, 비토향, 산분령향, 상촌향, 선전향, 선진향, 송도향, 송포향, 신선향, 신소향, 실안향, 안도향, 장천향, 점복개향, 조도향, 종포향, 주문향, 중방향, 중봉향, 중촌향, 초양향, 하봉향, 하부포향, 환포향
		도서	6	대구향, 마도향, 신도향, 월등도향, 저도향, 진도향
	거제시	육지	52	갈곶향, 견내량향, 고당향, 광리향, 구영향, 농농향, 금포향, 내간향, 내평향, 녹산향, 대계향, 대금향, 덕곡향, 덕포향, 두모향, 망치향, 명사향, 법동향, 사곡향, 석포향, 성내향, 소계향, 소량향, 송진포향, 수산향, 술역향, 아사향, 양지말향, 양화향, 어구향, 여차향, 영복향, 영월향, 예구향, 오송향, 오수향, 옥림향, 와현향, 유계향, 저구향, 지석향, 쪽박향, 청곡향, 청포향, 탑포향, 학동향, 학산향, 함박향, 향도향, 호곡향, 후포향, 흥남향
		도서	28	계도향, 고개도향, 곡촌향, 군령포향, 금곡향, 내도향, 대곡향, 면포향, 미포향, 발포향, 산전향, 산후향, 송포향, 신교향, 신전향, 실리향, 실전향, 어온향, 연구향, 염막포향, 옥계향, 왜선포향, 장곶향, 지심도향, 진두향, 창외향, 창촌향, 황덕향
	창원시	육지	4	명동향, 삼포향, 죽곡향, 행암향
		도서	2	우도향, 잠도향
	고성군	육지	58	가룡향, 거운향, 검포향, 곡용향, 구선창향, 군령포향, 내신향, 대가룡향, 대구막향, 대막포향, 대천향, 대포향, 덕곡향, 덕명향, 던재향, 돈막향, 동문향, 동촌향, 동해향, 두모향, 마리개향, 망일포향, 매화향, 모래지향, 발막개향, 배암목향, 병산향, 봉곡향, 봉화굴향, 북촌향, 세포향, 소가룡향, 소구학포향, 술섬향, 신부향, 어신향, 오장동향, 용암포향, 용호향, 용흥향, 우두포향, 임포향, (하이면 월흥리)입암향, (동해면 봉암리)입암향, 장기향, 장백향, 장지향, 장향향, 전도향, 전포향, 제전향, 좌부천향, 지포향, 큰구학포향, 평촌향, 하장향, 하중촌향, 화당향
	남해군	육지	91	가인포향, 가인향, 가천향, 감암향, 고두향, 고모향, 고사향, 고순향, 고잔향, 고현향, 곤유향, 광두향, 구도향, 구미향, 금송향, 금전향, 금평향, 금포향, 남상향, (미조면 송정리)노구향, (서면 노구리)노구향, 노량향, 노루목향, 단향향, 답하향, 당향향, 대곡향, 대량향, 대지포향, 덕월향, 도마향, 동대향, 동비향, 동흥향, 두곡

				항, 두모항, 모천항, 문항항, 벽련항, 보천항, 북병항, 봉우항, 북섬항, 사촌항, 사포항, 상남항, 상주항, 서갈화항, 서대항, 선구항, 설리항, 석호항, 소량항, 소벽항, 송남항, 수원늘항, 속호항, 식포항, 신흥항, 심천항, 양화금항, 연포항, 염해항, 예계항, 옥동항, 와현항, 왕지항, 용소항, 월곡항, 월포항, 유구항, 울도항, 이어항, 작장항, 장항항, 전도항, 정포항, 지족2항, 지족항, 진목항, 차면항, 천포항, 초양항, 초전항, 토촌항, 평산2항, 평산항, 흥현항, 화계항, 화전항, 후리망골항
		도서	3	노도항, 조도항, 호도항
	하동군	육지	9	고포항, 나팔항, 내도항, 대치항, 명덕항, 서근항, 송문항, 양포항, 연막항
		도서	1	대도항
제주	제주시	육지	36	가문동항, 고내항, 광지항, 구엄항, 귀덕2항, 금능항, 금성항, 내도항, 도두사수항, 동김녕항, 동복항, 두모항, 미수동항, 북촌항, 삼양1동항, 삼양3동항, 신엄항, 신촌항, 신흥항, 웅포항, 외도연대항, 용담3동항, 용당항, 용수항, 용운동항, 월령항, 월정항, 이호1동항, 이호현사항, 판포항, 평대항, 하도항, 한동항, 함덕항, 행원항, 협재항
	서귀포시	육지	10	남원항, 대평항, 산이수동항, 세화항, 신도항, 신산항, 신흥항, 온평항, 태흥3항, 하천항

※ 출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 (검색일: 2023.03.20.)

□ 어가인구 현황

- '21년 전국 어가는 43,327개이며, '02년 73,124개와 비교하면 크게 감소하였음
- '21년 전국 어가인구는 93,798명인데, '02년 215,174명과 비교하면 크게 감소하였음

표 2-11 어가 변화

(단위: 개)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연도	어가	연도	어가	연도	어가	연도	어가
1990	121,525	2000	81,571	2010	65,775	2020	43,149
1991	119,756	2001	77,717	2011	63,251	2021	43,327
1992	116,165	2002	73,124	2012	61,493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연도	어가	연도	어가	연도	어가	연도	어가
1993	113,617	2003	72,760	2013	60,325		
1994	110,415	2004	72,513	2014	58,791		
1995	104,480	2005	79,942	2015	54,793		
1996	101,677	2006	77,001	2016	53,221		
1997	99,912	2007	73,934	2017	52,808		
1998	98,972	2008	71,046	2018	51,494		
1999	97,754	2009	69,379	2019	50,909		

※ 출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 (검색일: 2023.03.20.)

표 2-12 어가 인구 변화

(단위: 명)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연도	어가 인구	연도	어가 인구	연도	어가 인구	연도	어가 인구
1990	496,089	2000	251,349	2010	171,191	2020	97,062
1991	469,520	2001	234,434	2011	159,299	2021	93,798
1992	424,939	2002	215,174	2012	153,106		
1993	404,610	2003	212,104	2013	147,330		
1994	381,864	2004	209,855	2014	141,344		
1995	347,210	2005	221,132	2015	128,352		
1996	330,464	2006	211,610	2016	125,660		
1997	323,383	2007	201,512	2017	121,734		
1998	322,229	2008	192,341	2018	116,883		
1999	315,198	2009	183,710	2019	113,898		

※ 출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 (검색일: 2023.03.20.)

□ 어가 소득 현황

- '21년 어가 소득은 52,911천원이며, '02년 21,590천원에 비하면 상당히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그러나 어업소득은 '22년 20,722천원에 불과함

표 2-13 어가 소득 변화

(단위: 천원)

연도	어가소득	어업소득	어업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1990	10,023	5,217	3,192	1,614	-
1991	11,309	5,285	3,776	2,248	-
1992	12,371	6,036	4,217	2,118	-
1993	14,432	6,222	4,684	3,525	-
1994	17,110	8,665	5,719	2,726	-
1995	18,780	9,437	6,075	3,268	-
1996	19,039	10,526	5,410	3,103	-
1997	20,331	11,768	5,820	2,743	-
1998	16,794	9,254	5,201	2,339	-
1999	18,401	8,475	6,243	3,683	-
2000	19,618	8,428	7,431	3,759	-
2001	21,463	8,556	8,425	4,482	-
2002	21,590	9,060	7,944	4,586	-
2003	23,916	10,741	8,619	861	3,695
2004	26,159	11,959	9,168	1,477	3,555
2005	28,028	11,950	9,399	2,245	4,434
2006	30,006	11,603	10,361	2,728	5,315
2007	30,668	11,975	10,981	2,913	4,799
2008	31,176	13,801	10,120	2,423	4,831
2009	33,945	16,220	11,136	2,857	3,732
2010	35,696	16,607	11,931	3,191	3,968
2011	38,623	20,432	11,378	3,309	3,504
2012	37,381	19,539	11,360	3,272	3,210
2013	38,586	18,538	13,037	3,646	3,366
2014	41,015	20,987	11,897	4,341	3,790

연도	어가소득	어업소득	어업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2015	43,895	23,086	11,728	5,079	4,002
2016	47,077	26,598	11,551	5,479	3,448
2017	49,016	26,692	12,576	6,055	3,693
2018	51,836	25,670	13,523	10,193	2,450
2019	48,415	20,672	13,326	11,220	3,198
2020	53,187	22,716	12,959	14,331	3,181
2021	52,392	19,676	14,313	15,711	2,693
2022	52,911	20,722	12,685	17,131	2,373

※ 출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 (검색일: 2023.03.20.)

3. 정책 동향 분석

3.1. 주요 농정 이슈

주요 농정 이슈는 한국농업경제연구원의 『2023년 10대 농정이슈』에서 발췌함.

□ 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영농 안정 대책 마련

- 농가 판매가격은 하락하는 반면 농가 구입가격은 지속적으로 증가함
- '23년 농가 교역조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원자재 수급 안정을 위한 수요·공급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함

□ 식량자급률 목표치 재설정과 달성 전략 수립

- 국산 주요 곡물 가격의 안정성이 문제가 되고 있음
- 윤석열 정부는 '27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55.5%로 결정함

- 곡물 수급 안정 및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다각적 농정 목표 달성을 위한 직불제 확대·개편 추진

- 농업 부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수요에 부응할 필요가 있음
- 최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는 등 관련한 정책 변화가 확인되고 있음
- 직불제 확대·개편 청사진과 추진전략을 제시하여 농정 목표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필요가 있음

□ 「농촌공간계획법」 시행에 따른 농촌 정책의 혁신

- 「농촌공간계획법」 제정에 따라 선계획, 후사업 체계가 확립됨
- 농촌 재생을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되고 있음
 - 농촌공간 정책의 종합적·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농촌공간 관련 계획 및 주요 시책 등의 심의기구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앙정책위원회, 시도는 광역정책위원회, 시군은 기초정책위원회를 설치함
- 농촌재생 프로젝트 정책 분야에 맞추어 중앙의 농촌 정책조직 및 예산구조가 변화될 필요가 있음

□ IPEF 참여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전략 마련

- IPEF(인도양-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22년 5월 공식 출범에 이어 9월 4개 분야별 각료 선언문에 합의하고 공식 협상 개시를 선언함
 - ※ IPEF는 전통적 다자통상체제·지역무역협정을 대체할 새로운 형태의 경제통상 협력체제로 부상하고 있음
- 농업계·연구계·학계·정부 간의 소통을 강화하여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한 협상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농산물 유통 디지털화 진전

- 농산물 온라인 비대면 거래 수요 증가에 따른 농산물 유통 디지털화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스마트 물류 기술 기반의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 확대 및 거점 물류 시설 건립이 필요함
 - 공공형 B2B 농산물 온라인거래소 구축 및 도매거래 디지털화 추진이 필요함
 - 농산물 유통 데이터 표준화 및 물류 정보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농산물 유통 디지털화를 위한 인프라 투자 및 시스템 구축 병행 추진을 통한 디지털화 진전이 필요함

□ 청년농 육성과 농업 노동력 공급 확대

- 농업생산에서 기본 투입 요소인 노동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임
 - 농업경영주 중 65세 이상 농업경영주 비율은 '00년 32.7%에서 '10년 46.4%, '20년 56.0%로 증가함
 - 이에 반해 만 40세 미만 청년 농업경영주 비율은 '00년 6.6%에서 '10년 2.8%, '20년 1.2%로 급감함
- 현재의 추세가 이어진다면 미래 농업생산 지속 및 혁신 역량을 갖춘 농업경영주 육성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음
- 청년 농업경영주 양적 확대와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단계별 지원 방식·개선 강화가 필요함
- 품목 특성에 맞는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편과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 확대 검토될 필요가 있음
- 농업 고용인력 정책 수립과 중장기 인력계획 수립이 필요함

□ 취약계층 식생활 보장을 위한 정부 역할의 확대

- 취약계층의 경우 가구소득이 낮아 식품비 지출 여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음

- 먹거리 현물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취약계층 식생활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취약계층 대상 식생활 지원제도는 수혜자 지향적 방향으로 설계하는 등 지속해서 발전 방향을 모색해나가야 함

☐ 스마트농업 인프라 강화

-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전문인력 양성, 효율적 R&D 및 민간 주도 운영 활성화가 필요함
- 스마트농업의 핵심인 플랫폼 구축과 효율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주체별 역할 강화가 필요함

☐ 2030 NDC 감축로드맵 이행 조치 및 기후변화 적응 강화

- 이상기후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고 2030 NDC 목표의 상향 조정이 이뤄짐
- 2030 NDC 목표의 상향 조정 등에 대응한 감축 경로 설정이 필요함
- 식량안보를 위한 기후변화 적응시스템 구축의 구체화가 요구됨

3.2. 국정과제 및 정부 정책

☐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 농업 분야, 어업 분야 등 국정과제는 다음과 같음
- 농업 분야, 어업 분야 외에도 복지 분야, 지방 분야 등에서 농민의 삶의 질, 지방정부의 과제 등 관련 국정과제가 다수 확인되고 있음

표 2-14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관련 내용

구분	번호	제목	주요 내용
농업 분야	70	농산촌 지원강화 및 성장 환경 조성	- 농촌공간의 쾌적성·편리성을 높이고,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 - 산림 재해 대응역량 강화 및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
	71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 농업혁신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 및 농식품 분야 혁신생태계 조성 - 환경친화적인 농축산업으로 전환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마련
	72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 기초식량 중심으로 자급률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 확보 - 농업직불금 확대 및 위험관리체계 구축으로 농가경영안정 기반 확충
어업 분야	73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 어촌 주민의 정주·생활환경과 소득을 도시민 수준으로 강화 - 수산물 생산·가공·유통 혁신으로 경쟁력 확보 및 안전한 수산물 공급체계 확립 - 해양바이오, 레저관광, 창업투자 등 신산업 활성화로 연안경제 활력 제고
복지 분야	44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 다양한 공급주체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돌봄체계로 사회서비스를 혁신
	45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	-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질 높은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일자리·건강·돌봄 지원
	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 임신·출산 지원, 영유아·아동 양육, 보육 및 돌봄, 건강 관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저출산 위기 -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학대 예방으로 아동의 공정한 출발 보장
	47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 실현	- 수요자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를 통해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권리 증진
	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 하는 사회 구현	- 학교 밖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구축 및 청소년 위기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필요에 따른 가족서비스 지원 강화 - 교정시설 과밀화·노후화 해소를 통한 인권친화적 수용환경 조성 - 이주민 인권개선 등을 통해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 존중하는 사회환경 조성 - 사람과 동물이 모두 함께 행복한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

구분	번호	제목	주요 내용
문화 분야	56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 취약계층 등 문화 향유 기회 확대로 국민의 문화기본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 전통문화, 한국어 등 우리 문화 경쟁력 제고 및 확산
	61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	- 코로나19 이후 심각한 침체를 겪은 관광시장의 빠른 회복 및 재도약 - 국민 여행 기회 확대, 지역 경제활력 제고, 관광산업 미래 경쟁력 확보
보건 분야	66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 언제 어디서든 모든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필수 의료 인력 및 인프라 강화 -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재난적 의료비 등 지원 확대 -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통해 신뢰받는 건강보험제도를 구축하고, 빈틈없는 재정관리를 통한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68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 환경	- 새로운 일상의 먹거리 안전망 확충과 건강위해요인 통합 관리로 안전 - 사각지대 해소, 국가 식생활 관리체계 구축으로 모두가 건강한 삶을 향유 - 환경오염 피해 및 화학물질 노출을 선제적·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국민 건강 보호
환경 분야	86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 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	- 글로벌 탈탄소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탄소중립 정책 추진 - 녹색산업·기술을 기반으로 녹색투자자 소비를 촉진하는 경제 생태계 조성
	87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	- 모두에게 안전하고 스마트한 새로운 물 서비스 제공, 자연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해 기후재해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청년 분야	90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 청년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등 주거사다리 복원 - 청년특화 취·창업지원 확대를 통한 일자리 기회 창출 - 신기술 분야 인재 양성 및 청년의 교육 기회 확대
지방 분야	111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
	112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	-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권한의 이양과 지방의 재정책임성 기반 마련
	113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 다양한 교육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자유특구를 통한 학교에 대한 규제 개선 및 대안 학교 운영 활성화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대학 및 산업 등에 대한 자기책임성을 강화하여 '지역인재양성·취업·창업·정주'의 지역 인

구분	번호	제목	주요 내용
			재양성체계 구축
	114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 · 소통 · 협력 강화	-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확대에 상응하는 자기책임성 확보기제 마련 - 초광역지역연합(메가시티) 구축 및 지자체 간 협력 활성화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중앙-지방간 수평적 협력관계 구축
	120	지방소멸방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	- 지역이 먼저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면, 국가가 행 · 재정적으로 다양하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 추진 - 지역공약을 임기 내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정책 체감효과 극대화

※ 출처: 국무조정실 홈페이지 (검색일: 2023.03.20.)

□ 농림축산식품부의 업무계획

- 농림축산식품부는 ‘멈추지 않는 농업 혁신, 미래로 도약하는 K-농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네 가지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있음
- 굳건한 식량안보 확보를 추진함
 - (식량자급률 제고) '23년부터 주요 곡물 자급률 상승세 전환으로 '27년 식량자급률 55.5%를 달성함
 - (농업 생산성 향상) 비농업부문 기술 · 자본 활용을 위해 기업적 경영방식 도입을 확대함
-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꾀함
 - (스마트농업 확산) '27년까지 온실 · 축사의 30%를 스마트화함
 - (미래 신산업 육성)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신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함
 - (수출 및 ODA 확대) 농식품 수출액 100억 불 달성 및 한국형 스마트팜 신시장에 진출함
- 든든한 농가경영안전망 구축을 추진함
 - (농가 경영위기 극복 지원) 농자재 · 금리 · 인력 등 농가의 경영 위험

요인 관리체계를 강화함

- (유통 선진화 및 수급 안정) 유통비용 절감 및 수급안정을 도모함
- 농촌주민·도시민을 위한 새로운 농촌 조성 및 동물복지 강화를 추진함
 - (농촌공간계획 및 재생) 농촌주민, 도시민을 위한 농촌다움이 살아있는 공간으로 재생함
 - (농촌사회서비스 강화) 농촌 어디에서나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
 - (동물복지 강화) 동물복지를 강화하여 사람·동물 모두 행복한 One-Welfare를 실현함

그림 2-5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업무계획의 주요 내용

◇ 식량안보, 미래성장산업화, 농가경영안전망, 매력적 농촌공간조성 및 동물복지강화 등 목표 달성을 위해 10대 과제 중점 추진 ◇ 농업혁신, 자율, 창의 등을 바탕으로 식량안보 등 핵심과제를 추진하되,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연대·상생협력) 강화			
	[여건]	[정책목표]	[핵심과제]
식량공급	○ 공급망 교란 ○ 만성적 쌀 과잉 ○ 곡물자급률 하락	1. 굳건한 식량안보 확보	1-① 식량자급률 제고 1-② 농업 생산성 향상
농업성장	○ 저성장 산업구조 ○ 고령화, 인구감소 ○ 고용 창출력 부족	2.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2-① 스마트농업 확산 2-② 미래 신산업 육성 2-③ 수출 및 ODA 확대
농가경영	○ 생산비 급등 ○ 가격 급등락 ○ 기후위기 심화	3. 든든한 농가경영안전망	3-① 농가 경영위기 극복 지원 3-② 유통 선진화 및 수급안정
농촌발전	○ 지역 소멸 ○ 농촌 난개발 ○ 복지전달체계 약화	4. 농촌주민·도시민을 위한 새로운 농촌 조성 및 동물복지 강화	4-① 농촌공간계획 및 재생 4-② 농촌사회서비스 강화 4-③ 동물복지 강화
기반	농업혁신, 자율, 시장, 연대협력		

※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검색일: 2023년 3월 2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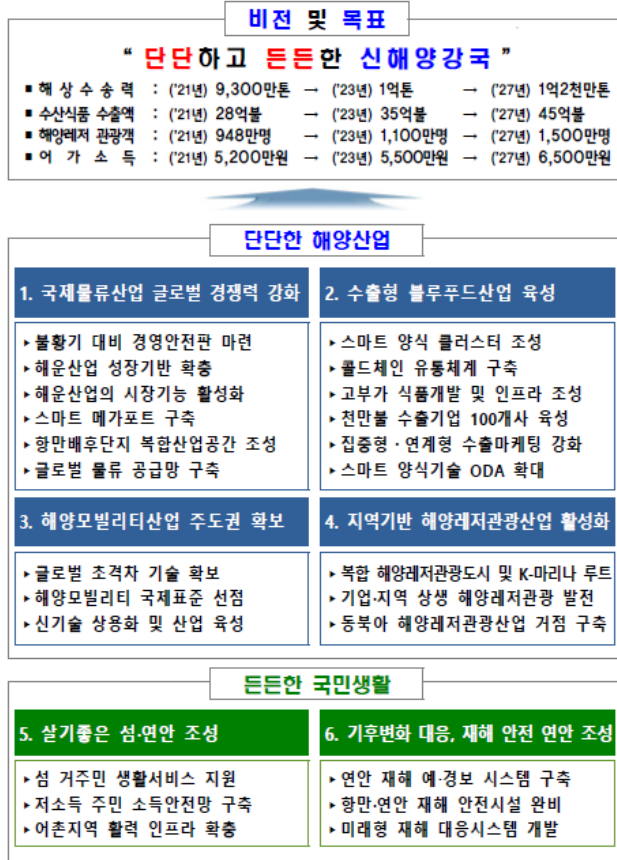
□ 해양수산부의 업무계획

- 해양수산부는 ‘단단하고 든든한 신해양강국’ 실현을 위하여 ‘단단한 해양산업 육성’과 ‘든든한 국민생활 지원’을 추진함

- 국제물류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추진함
 - ※ 불황기 대비 3조 원 규모의 해운 경영 안전판을 마련함
 - 수출 주도 경제구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해운산업 성장기반을 확충함
 - 해운산업의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고자 함
 -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메가포트를 구축함
 - 항만배후단지 민간투자 1.4조원 유치, 복합 산업공간으로 조성함
 - 글로벌 물류 공급망 확보를 통한 수출 경쟁력을 제고함
- 수출형 블루푸드산업을 육성하고자 함
 - 대규모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를 조성함
 - 신선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공급을 위한 콜드체인 체계를 구축함
 - 최신 소비트렌드를 고려한 가공식품 개발 및 인프라를 조성함
 - 블루푸드 천만불 수출기업 100개 사를 육성함
 - 블루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집중형·연계형 마케팅을 강화함
 - 스마트·친환경 양식기술 ODA 및 국제협력을 확대함
- 해양모빌리티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함
 - 해양모빌리티 글로벌 초격차 기술을 확보함
 - 디지털 친환경 기술·소재·부품·장비의 국제표준을 확보함
 - 해양모빌리티 신기술 조기 상용화,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함
-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자 함
 -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및 K-마리나 루트를 조성함
 - 기업·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해양관광산업을 육성함
 - 동북아 해양레저관광산업 중심지 구축 및 글로벌 브랜드화함
- 살기좋은 섬, 연안지역을 조성함
 - 소외된 섬 거주민 교통·물류 필수 생활서비스를 지원함
 - 어촌지역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전망을 구축함
 - 어촌지역 활력 증진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함
- 기후변화 대응, 재해로부터 안전한 연안을 조성하고자 함
 - 연안재해 예·경보시스템 ‘K-Ocean Watch’를 구축함

- 항만·연안지역 재해 안전시설을 완비함
- 미래형 연안재해 대응체계를 구축함

그림 2-6 해양수산부 2023년 업무계획의 주요 내용



※ 출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검색일: 2023년 3월 21일)

4. 소결

□ 농어업 · 농어촌의 현재

- 세계경제의 불확실한 거시경제 상황과 인구 유출에 따른 농어촌 지방소멸과 농어업 인구의 고령화는 농어업 위기에 해당됨
- '22년 농업인들의 농가소득은 46,153천 원에 불과하고, 농업소득은 9,485천 원에 불과하여 농업인들은 농업으로만 생계를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임
- 어업인들도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어가소득은 52,911천 원인데 어업소득은 20,722천 원에 불과함

□ 위기의 농어업 · 농어촌

- 기온상승과 이상기후로 피해가 증가하며 탄소중립을 위한 비용 증가 등 기후변화로 농어업 · 농어촌의 위기는 가중될 수밖에 없음
-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이 줄어들고 농어업인이 고령화되면서 농어촌은 소멸하고 있으며 혁신을 시도하기 어려운 상황임

□ 미래의 농어업 · 농어촌

- 지능정보기술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디지털 전환이 이뤄지면서 작업은 지능화 · 자동화 · 효율화되어, 한국 농어업의 질적 도약이 가능해지고 있음
- 세계 인구가 100억 명까지 증가할 것이고, 한국 농어업이 세계시장을 바라볼 때 양적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 농어업위의 역할

- 이처럼 ‘위기의 농어업·농어촌’과 ‘기회의 농어업·농어촌’은 합계출산율, 인구절벽, 지방소멸 등 사회구조 변화에 해당되며 이러한 흐름에 따라 농어업·농어촌 관련 행정조직의 변화와 효율적 대응이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멈추지 않는 농업 혁신, 미래로 도약하는 K-농업!’ 실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는 ‘단단하고 든든한 신해양강국’ 실현을 위하여 각종 정책들을 펼치고 있으나 농정 전환에 대한 농어업인의 요구는 여전함
- 농어업위가 통합적 관점에서 농정 전환의 방향을 설정하고, 전환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면 농어업인의 행복과 농어촌의 발전을 꾀할 수 있음

제3장

위원회 현황 진단

위원회 현황 진단

1.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회 현황 진단

1.1. 농어업위 설치 배경 및 경과

□ 농어업위법에 따른 설치

- '19년 4월 출범한 농어업위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임
 - 5년 일몰 조직으로 존속기한은 2024년 4월까지임
- 대통령이 농정을 직접 챙겨야 한다는 농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설치함
 - '17년 4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농정공약으로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 설치'가 제시되었으나, 농어업위 설치를 위한 법 제정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찬반 의견이 있었음
 - 농어업, 농어촌 발전정책과 관련된 농어업인 대표, 관련 부처,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통해 현장성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 동시에 범정부 차원의 전담기구로서 정책 추진력 제고를 기대하며 찬성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에, 기존의 위원회, 농식품부 및 해수부와 기능·

역할이 중복될 우려가 있다는 점, 2002년부터 8년간 지속된 과거 농어업특위의 운영성과 미흡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 있었음

- ※ 이전에 유사한 성격의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가 2002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8년간 운영된 바 있음
-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간 무역협상을 위한 도하개발아젠다(DDA)의 채택과 한-칠레 FTA의 협상 등 농수산물 시장 개발 가속화로 인한 위기감이 배경이 되어 농어촌의 위기 극복과 농어업·농어촌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음

□ 농어업위법의 주요 내용

- 농어업위법은 농어업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함

표 3-1 농어업위법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목적	-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
기능	-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협의 - 농어촌 지역발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협의 - 농어촌 생태·환경·자원의 체계적 보전 및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 협의 -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기초한 자율 농정 수립에 대한 사항 협의 -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국민 먹거리에 관한 사항 협의 - 농어업과 농어촌의 다원적 가치 실현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협의 -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한 사항 협의 - 실천계획과 추진사항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협의 - 그 밖에 대통령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협의
위원	- 위원장 1명 포함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 당연직 위원: 기획재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농어업인 단체 대표 12명 이내 - 관련 분야 전문가 12명 이내
임기	- 2년(연임 가능)
회의	- 대통령이 소집을 요구할 때 등
구성	-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설치 가능
지원	- 위원회 내 사무국 설치

구분	주요 내용
인력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 - 관련분야 전문가의 임기제 공무원 채용
협조	- 전문가 및 관계기관 등에 협조 요청 가능 - 전문가 또는 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 의뢰 가능 -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통하여 여론 수렴 가능
보고	- 주요 활동 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 - 운영실적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
존속기한	- 위원회는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2024년 4월까지)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일: 2023년 3월 21일)

□ 농어업위의 주요 연혁

○ 농어업위의 주요 연혁은 다음과 같음

표 3-2 농어업위의 주요 연혁

연월	주요 내용
'02.01	- 농어업·농어촌 중장기 발전 정책 마련을 위해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특별대책위원회 설치
'09.09.	-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폐지
'17.04.	- 대통령 직속 '농어촌 특별기구' 설치 공약이 발표되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추진과제가 포함됨
'18.12.	- 농어업위 설치 관련 4건의 법안* 발의 후 국회 본회의 의결('18.12.07.) * 황주홍 의원안('16.07.), 이개호 의원안('17.08.), 김현권 의원안('17.08.), 위성곤 의원안('17.09.)을 통합 심의
'18.12.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18.12.24.)
'19.04.	- 농어업위 출범('19.04.25.) 28인의 위원으로 위원회 구성
'19.04.	- 제1대 위원장 박진도 취임('19.04.24.)
'20.06.	- 제2대 위원장 정현찬 취임('20.06.30.)
'22.12.	- 제3대 위원장 장태평 취임('22.12.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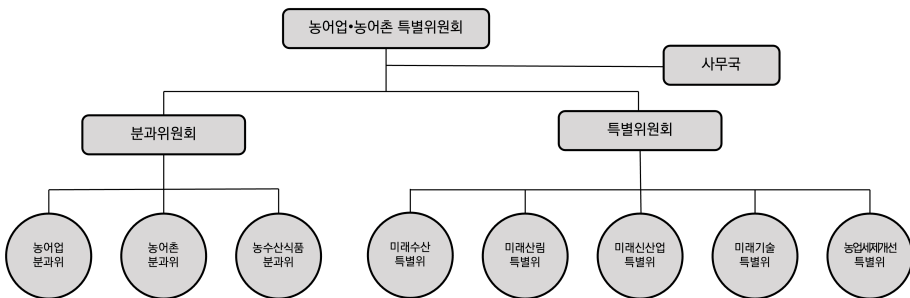
※ 출처: 농어업위 홈페이지 (검색일: 2023년 3월 21일)

1.2. 농어업위 위원회 및 사무국

□ 농어업위의 구성

- 본위원회와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그리고 사무국으로 구성됨
- 분과위원회는 농어업, 농어촌, 농수산물 분과위원회로 구성됨
- 특별위원회는 미래수산, 미래산림, 미래신산업, 미래기술, 농업세계개선 특별위원회로 구성됨

그림 3-1 농어업위의 구성



□ 본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 위원회(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됨
- 위원 중 당연직의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5명임
- 대통령 위촉위원은 24명으로서 농어업인 단체 대표가 12명 이내, 농어업·농어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등 관련분야 전문가 12명 이내로 구성됨
- 대통령 위촉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 가능함

□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 본위원회는 본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내용의 검토·조정,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한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 여론 수렴과 국내외 조사·연구, 의견제출 등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둠
- 각 분과위는 농어업위원장이 위촉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함
- 분과위원은 농어업인 단체의 관련 전문가, 소비자·시민사회단체, 생활협동조합 등의 관련 전문가, 학계 및 관련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분과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함
- 농어업분과위원회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음
 - 농어업 및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협의함
 -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기초한 자율 농정 수립 방안을 협의함
 - 남북농업협력 방안을 협의함
 - 농어업 및 농어촌의 다원적 가치 실현 방안을 협의함
- 농어촌분과위원회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음
 - 농어촌 지역발전 및 복지 증진 방안을 협의함
 - 농어촌 생태·환경·자원의 체계적 보전 및 효율적 이용 방안을 협의함
- 농수산식품분과위원회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음
 - 농수산식품의 생산·가공·공급·소비 등 먹거리 전반을 협의함
 - 농수산식품분야의 연구개발에 관하여 협의함

□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라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분과위원회 간 협의·조정과 의사일정 협의 및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의 처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

- 농어업위 위원장, 분과위원장, 사무국장 및 그 밖에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농어업위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직함

□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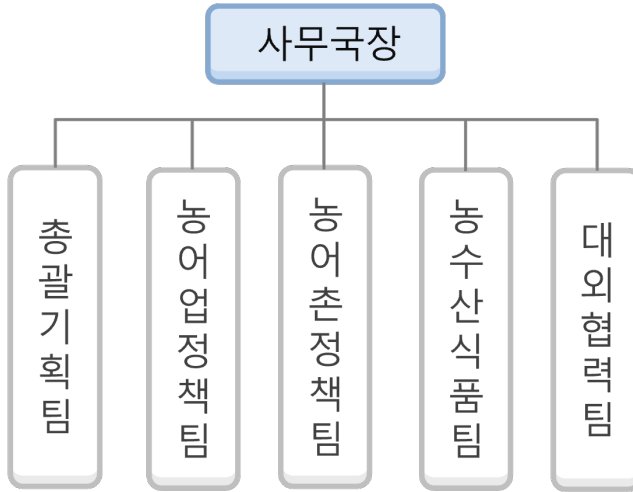
- 위원회 소관 업무 중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존속기간을 정하여 특별위원회를 운영함
 - 존속기간은 최대 1년이나, 필요시 위원회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가능함
- 특별위원회는 농어업위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별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농어업·농어촌 관련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함
- 좋은농협위원회, 농산어촌청년희망위원회, 남북농림수산협력위원회, 농어업 농어촌탄소중립위원회, 수산혁신특별위원회, 농어촌여성정책특별위원회, 산림혁신특별위원회 등 총 7개의 특별위원회가 운영된 바 있음

□ 사무국 구성 및 역할

- 위원회 협의안건의 기획 및 정책 개발, 위원회 개최 및 회의자료 준비, 분과·특별위원회 개최 및 회의자료 준비, 위원회·분과·특별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협의·조정, 회의자료 배포 및 회의록 작성·보고, 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대한 이행사항 점검·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사무국장은 농식품부장관이 해수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추천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되며, 사무국 업무 총괄과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함
- 사무국에는 총괄기획팀, 농어업정책팀, 농어촌정책팀, 농수산식품팀, 대외협력팀을 두어 운영함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공공기관·단체·연구소 등에서 파견된 직원 및 별도로 채용된 전문임기제 공무원이 근무함

그림 3-2 사무국의 구성



1.3. 운영 현황

□ 본 위원회 운영 실적

- 본위원회의 운영 실적은 다음과 같음
 - 장관 및 차관의 참석 실적이 저조하며, 농식품부와 해수부만 주로 참여함
 - 위촉직 위원들의 참석율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함
 - 14차 회의에서 회의 중 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차기 회의로 미뤄졌음
 - 대부분의 안건이 원안 의결되었음
 -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등에서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대부분의 안건이 원안 의결될 수 있었으며 일부 안건에서만 수정 의결이 확인됨
 - 11차 회의에서 공익직불제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개선 촉구(안)은 논의 끝에 의결되지 못했고, 농식품부가 조속히 관련 제도를 보완할 수 있도록

- 권고 또는 건의하는 등의 별도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됨
- 2019년 12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타운홀미팅 보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대통령은 농정틀 전환을 위한 5가지 방향을 제시하였음

표 3-3 본위원회 운영 실적

차수	일시	참석 인원	주요 내용
01	'19.06.18.	24명(위원장, 당연직 3/5명-농식품부 차관·해수부차관·기재부2차관, 위촉직 20/22명)	☐ (운영세칙) 위원회 원안 의결 ○ 위원장 구체적인 역할(위원회 소집, 안건 결정, 의사진행 등), 개최시기(분기 1회 등), 분과위·특별위 구성 방안, 사무국 구성 등 ☐ (운영계획) 농어업위 비전, 목표 및 핵심과제별 주요 운영방향 보고 ① 농정틀 전환 개혁의제 중심 운영, ② 민관 및 범정부 거버넌스 구축, ③ 농어업계·외부의 소통 활성화로 국민 공감대 형성 ☐ (기타) 수산 및 산림분야 소외 우려 ○ (위원장) 필요시 분과위 내 소분과 운영을 통해 논의 예정
02	'19.09.24.	20명(위원장, 당연직 2/5명-농식품부 차관·해수부실장, 위촉직 17/22명)	☐ (보고안건) 농어업위 운영 현황 보고 ○ 분과위·특별위 활동내역, 정책연구용역 추진 현황 등 ☐ (심의안건) 농협 중앙회장 및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방안(안) : 원안 의결 ○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및 유권자의 알권리 강화,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 농협중앙회장 및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 ☐ (토론) ○ 지방자치단체 민관협치형 농어촌정책 추진체계 정비 방안(안) ○ 농정비전(안)
03	'19.12.03.	21명(위원장, 당연직 3/5명-농식품부 실장·해수부실장·국무조정실정책관, 위촉직 17/22명)	☐ (심의안건) ○ 지방자치단체 농어촌정책의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구축(안) : 원안 의결 ○ 지역자원 기반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방안(안) : 원안 의결 ○ 지속가능한 저탄소사회를 위한 산림자원순환형 임업 실현 방안(안) : 원안 의결 ☐ (보고안건) ○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비전과 전략 ○ 농정틀 전환을 위한 2019 전국 순회 타운홀미팅 결과 ☐ (토론과제) ○ 농어촌 지역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안)
04	'20.02.19.	19명(위원장, 당연직 2/5명-농식품부 차관·해수부실장, 위촉직 16/19명)	☐ 보고안건 ○ (안건 1) '20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 보고 ○ (안건 2) 청년세대를 통한 농산어촌 활성화 방향(안) 보고
05	'20.07.14.	26명(위원장, 당연직 3/5명-농식품부	☐ (심의안건) ○ 특별위원회 존속기간 및 특별위원 임기 연장(안) : 원안 의결

차수	일시	참석 인원	주요 내용
		차관·해수부실장 ·국무조정실정책 관, 위촉직 22/24 명)	☐ (보고안건) ○ 의결사항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 '19년 중점 정책연구과제 연구용역 결과 ○ '20년 중점 관리과제 추진 계획(안)
06	'20.10.13.	25명(위원장, 당연 직 2/5명-농식품부 차관·해수부실장, 위촉직 22/24명)	☐ (심의안건) ○ 농어촌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안) : 원안 의결 ○ 농어업 분야 청년 취·창업 활성화 방안(안) : 원안 의결 ○ 남북농림수산협력위원회 존속기간 및 위원 임기 연장(안) : 원안 의결 ☐ (보고안건) ○ 좋은농협위원회 운영 현황 및 계획(안) ○ (서면보고) 농정대전환을 위한 사회협약 추진 계획(안), 농어업·농어촌 분야 뉴딜(안) 수립 경과 및 계획
07	'20.12.21.	27명(위원장, 당연 직 5/5명-미확인, 위촉직 21/24명)	☐ 심의안건 ○ 농산어촌 발전의 신 주체로서 청년층 지원 및 육성 방안(안) : 원안 의결 ○ 평화경제 구현을 위한 남북 농업공동체 협력방안(안) : 원안 의결 ○ 산림의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경영구조 개선 방안(안) : 원안 의결 ○ 지속가능한 수산업업을 위한 연근해어업 혁신 방안(안) : 원안 의결 ○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선택형 직불 확대 방안(안) : 원안 의결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 도입 : 원안 의결 ☐ 보고안건 ○ 수산분야 공익형 직불제 확대 방안(안) ○ 국가 식량 계획(안) ○ '20년 농정대전환 전국순회 원탁회의 추진 결과 ☐ 추가 사항 ○ 단순 검토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필요시 수정 의결)를 위원장에게 위임 : 원안 의결 ○ 쟁점 사항이 많은 안건에 대해서는 과반수 동의를 받았더라도 다음 본위원회에 재상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 : 원안 의결
08	'21.02.22.	28명(위원장, 당연 직 4/5명-미확인, 위촉직 23/23명)	☐ 심의안건 ○ 농지 소유 및 이용 제도개선 방향과 과제(안) : 원안 의결 ○ 지역자원기반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축산농가 경영안정화 방안(안) : 원안 의결 ○ 국가 식량 계획(안) : 원안 의결 ○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구조 제도개선(안) : 원안 의결 ☐ 보고안건 ○ 농산물 가격 안정 방안(안) ○ 친환경 양식업을 위한 배출수 관리 및 인증제도 개선방안(안) ○ 농어업위 1기 운영 성과 및 2021년 계획(안)
09	'21.04.20.	19명(위원장, 당연	☐ 사전행사

차수	일시	참석 인원	주요 내용
		직 3/5명-미확인, 위촉직 15/24명)	○ 임기만료 1기 위원 대상 공로패 수여 및 성과동영상 시청 □ 보고안건 ○ 사람과 환경 중심, 농정틀 전환의 비전과 과제(안) ○ 뉴노멀시대 수산·어촌 미래비전 마련(안) ○ 사료 수급 이용실태 및 자급률 제고 방안(안)
10	'21.06.23.	24명(위원장, 당연 직 2/5명-미확인, 위촉직 21/23명)	□ 위촉장 수여식 □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논의
11	'21.11.17. (영상회의)	24명(위원장, 당연 직 2/5명-미확인, 위촉직 21/24명)	□ 심의안건 ○ 공익직불제의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개선 촉구(안)-미의결 □ 보고안건 ○ 의결사항 지연과제 현황 및 대책(안) ○ 본위원회 워크숍(TF회의) 논의에 대한 검토 및 반영 사항(안) ○ 사람과 환경 중심의 지속가능 농업 농촌을 위한 정책과제 추진(안)
12	'22.01.18.	21명(위원장, 당연 직 2/5명-미확인, 위촉직 18/24명)	□ 심의안건 ○ 농지 이용과 보전 제도개선 방안(안): 원안 의결 ○ 2050 탄소중립 산림경영 실현 및 목재자급 증진 방안(안): 원안 의결 ○ 탄소중립시대, 수산·어촌부문 정책지원 방안(안): 수정 의결 ○ 어촌 지역소멸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전략(안): 수정 의결 □ 보고안건 ○ 농지전수실태조사 특별법(가칭) 제정(안) ○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친환경농업 역할 강화 방안(안) ○ 농민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화 방안 및 과제(안)
13	'22.02.23.	21명(위원장, 당연 직 3/5명-미확인, 위촉직 20/24명)	□ 심의안건 ○ 특별위원회 존속기간 연장(안): 원안 의결 ○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을 위한 축산분야 정책 방안(안): 수정 의결 ○ 농어촌형 돌봄센터 설립을 통한 농어촌 지역 노인 돌봄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안(안): 원안 의결 ○ 탄소중립을 위한 농어업·농어촌분야 에너지 전환 방안(안): 차기 회의 재상정 ○ 지역사회 먹거리 돌봄 활성화 방안(안): 원안 의결 ○ 식량자급률 관리 체계 개선방안(안): 차기 회의 재상정 ○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위한 여성농어업인 정책 추진 체계 구축방안(안): 원안 의결 □ 보고안건 ○ 먹거리보장 강화를 위한 공공급식 활성화 방안(안) ※(추가사항) 검토의견 반영 여부 및 안건 재상정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안)
14	'22.03.21.	17명(위원장, 당연 직 3/5명-미확인,	□ 심의안건 ○ 탄소중립을 위한 농어업·농어촌분야 에너지 전환 방안(안)

차수	일시	참석 인원	주요 내용
		위촉직 13/24명)	- 위원장 직권으로 제13차 회의에서 원안 의결된 것으로 함 ○ 식량자급률 관리 체계 개선방안(안): 원안 의결 ○ 공영도매시장 공공성 강화 방안(안): 정족수 미달로 부결 ○ 농어촌 유희·저이용시설 활용도 제고 방안(안): 정족수 미달로 부결 □ 보고안건 ○ 농작물 재해 국가책임성 강화 방안(안) ○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안)
15	'22.04.08.	24명(위원장, 당연직 4/5명-미확인, 위촉직 19/24명)	□ 심의안건 ○ 공영도매시장 제도개선 방안(안): 원안 의결 ○ 농어촌 유희·저이용 시설 활용도 제고 방안(안): 원안 의결
16	'23.02.16.	21명(위원장, 당연직-미확인, 위촉직)	□ 심의안건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안): 원안 의결 □ 보고안건 ○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 구성방안(안) ○ 위원회 2023년 추진 의제(agenda)(안) ○ 농어업인삶의질 관련 정책연구용역 추진현황(안)

※ 출처: 농어업위 홈페이지 (검색일: 2023년 5월 31일)

□ 주요 성과

-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틀 전환을 농정비전으로 제시함
 - 농어업위는 과거 생산·경쟁력 중심 농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방향을 제시하였음
 - 2020년 7월 정부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는데, 농어업·농어촌 분야의 정책 반영이 미흡하다는 판단으로 농어업위는 작업반을 구성하여 <농어업·농어촌 분야 뉴딜 계획>을 마련하고 중장기적 추진을 위한 농정비전 과제로 선정함 바 있음
- 농민을 위한 농협 혁신 방안을 제시하여 입법화함
 - 농어업위는 농협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2차 본위원회에서 「농협중앙회장 및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안」을 농정개혁 1호 안건으로 의결하였음
 - 농어업위는 농식품부와 국회 등에 의결사항을 알리고 「공공단체위탁선거법」(선거운동 범위 확대, 유권자 알권리 강화), 「농협법」(농협중앙회장 직선제)

개정을 위한 입법 지원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2021년 「농협법」이 개정된 바 있음

- 아울러 8차 본위원회에서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구조 제도 개선안」을 의결하는 등 농협 혁신에 앞장서고 있음

○ 농지 소유 및 이용 제도의 개선을 이끌어냄

-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농어업위는 8차 본위원회에서 「농지소유 및 이용제도 개선 방향과 과제」를 의결하고, 실경작자 중심의 농지소유·이용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하였음
- '21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불법·탈법적 부동산 투기행위 폭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농어업위는 의결안건의 주요 내용이 정부의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농식품부는 「농지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농지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등의 법률 개정도 이어졌음
- 농어업위는 이후 근본적 문제 해결 방안을 협의하여, 12차 본위원회에서 「농지 이용과 보전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하고 농업생산 기반의 안정적 유지와 농지 이용의 효율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식량안보와 국민 먹거리 보장 실현을 지원함

- 1차 본위원회에서 「국가 단위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을 의결하고, 이후 최초의 국가 단위 먹거리 종합전략인 국가식량계획을 수립하였음
 - 국가식량계획은 ‘식량안보 강화와 국민 먹거리 보장 실현’을 비전으로 함
 - 국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식량 자급기반 확대, 지속가능한 먹거리 생산·소비 기반구축,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 실현을 기본 방향으로 함
 - 식량자급력 제고 및 생산기반 강화 등 10대 중점과제를 담았음
- 농어업위의 국가식량계획은 '21년 9월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국가식량계획의 바탕이 되었으며,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의 기초자료로도 활용됨
- 농어업위는 구체적인 정책 실현을 위하여 13차 본위원회에서 「지역사회 먹거리 돌봄 활성화 방안」, 「식량자급률 관리체계 개선」을 의결함

- 다양한 정책을 제안함으로써 농어촌 활력 제고에 기여함
 - (농어촌정책 민관협치형 추진)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 확정으로 지방 사무 이양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농어업위는 단위 사업 중심에서 통합적인 행정 추진체계로의 개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정책을 기획하여, 「지방자치단체 농어촌정책의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구축」을 제안함
 - (농어촌지역 사회적 경제활동 활성화) '19년 12월 정부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사회적 경제 연계 농산어촌 활성화 방안을 토대로 하여 「농어촌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제안하여 사회적 경제의 차근에 기여하고 있음
 - (농어촌지역 복지 여건 개선) 농어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농어촌형 돌봄센터 설립을 통한 농어촌지역 노인돌봄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의제를 의결하였으며 관련 사업에 반영하였고 관련 문제를 공론화하였음
 - (농어촌지역 양성평등 실현 및 청년 육성) 13차 본위원회에서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위한 여성농어업인 정책 추진체계 구축방안」을, 4차 본위원회에서 「청년세대를 통한 농산어촌 활성화 방향」을, 5차 본위원회에서 「농어업분야 청년 취·창업 활성화 방안」을, 7차 본위원회에서 「농산어촌 발전의 신 주체로서 청년층 지원 및 육성방안」을 의결하였음
- 지속가능한 수산업으로의 전환에 기여하였음
 - (연근해어업 혁신 및 미래 수산업으로의 도약) 7차 본위원회에서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연근해어업 혁신 방안」을 의결하고, 12차 본위원회에서 「탄소중립시대, 수산어촌 분야 정책지원 방안」을 의결함으로써 자원 감소와 어장 축소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가능성을 회복하는 방향을 제시함
 - (어업기반 유지를 위한 어촌소멸 위기 대응) 12차 본위원회에서 「어촌 지역 소멸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전략」 의제를 의결하고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어촌 문제를 공론화하고 논의의 지속과 실행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음
-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에 기여하였음
 - 3차 본위원회에서 「지속가능한 저탄소사회를 위한 산림자원 순환형 임업 실현방안」을 의결하여 산림자원 순환형 임업을 제시하였으며, 7차 본위원회에서 「산림의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경영구조 개선방안」을 의결하고 산주·임

업인 지원을 통한 사유림 경영 활성화,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국유림 경영, 산림복지시설 운영지원을 통한 안정적 서비스 제공 등을 제안하였고, 12차 본위원회에서 「2050 탄소중립 산림경영 실현 및 목재자급 증진 방안」을 의결하여 국산목재 산업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음

○ 지속가능한 농축산업으로의 전환 기반 마련에 기여하였음

-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선택형 직불 확대) 농어업위는 다양한 관점에서 선택형 직불제를 논의하고 신규 선택형 직불 프로그램 발굴 방안을 논의하여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선택형 직불 확대 방안」을 7차 본위원회에서 의결하였고 직불제 추진 과정에서 농어업위를 통해 당사자 및 전문가들이 협의 할 수 있는 자리를 가졌음
-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농어업위는 농업과 축산, 환경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축산업을 위해 「지역자원 기반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방안」을 3차 본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모델 개발과 시범단지 운영, 토양양분관리제 도입 등을 제안하였고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축산농가 경영 안정화 방안」을 8차 본위원회에서 의결하여 관련 법제도 개선, 적정사육두수 관리방안 마련 등을 제안하였음. 아울러 13차 본위원회에서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을 위한 축산분야 정책방안」을 의결하여 가축 생산성 향상과 사료 자급률 제고, 지역자원 기반 탄소중립형 경축순환농업 추진 등을 제안하였음
- (공영도매시장 공공성 강화) 15차 본위원회에서 「공영도매시장 제도개선 방안」을 의결하고 공영도매시장의 개선 방향과 추진과제를 관련 부처에 제안하였는데, 오랫동안 지속된 사회적 갈등 해결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탄소중립 공감대 조성 및 인식 확대) 농어업위는 13차 본위원회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농업·농촌 분야 에너지 전환제도」를 의결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전환 지원, 에너지 전환 거버넌스 구축, 에너지 전환 데이터 기반 구축, 에너지 전환 특별법 제정 등을 제안하며, 홍보에도 앞장섬

○ 현장과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함

- (타운홀 미팅) 2019년 10월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 9개도 순회 타운홀 미팅

을 실시, 10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타운홀 미팅 결과는 12개 개혁과제를 도출한 「농어업·농어촌 비전과 전략」 안건으로 본위원회에서 보고함. 농어업위는 대통령이 참석한 <타운홀미팅 보고대회>를 개최함

- (전국순회 원탁회의) 농어업위는 2020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함께 생산자, 소비자, 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전국순회 원탁회의를 5차까지 개최하였으며, 원탁회의를 통해 국가먹거리 종합전략, 농어업·농어촌분야 뉴딜 과제 필요성 등의 의견을 수렴함
- (대국민 소통 활동) 2019년 농어업위 위원장의 한국농업방송(NBS) 대담프로그램 출연을 시작으로 다양한 대국민 소통 활동이 이뤄짐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현황 진단

2.1. 삶의 질위 설치 배경 및 경과

□ 삶의 질법에 따른 설치

- 삶의 질위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정부 행정기관들의 협의기구로서 삶의 질위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됨
- 삶의 질법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정함
- 삶의 질위는 삶의 질법 제10조에 따라 “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었음
- 삶의 질위는 범정부 차원에서 농어촌 삶의 질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정부가 수립한 기본계획을 심의하여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는 임무를 수행함

- 2004년 FTA 등 시장개방 대응 및 농어촌 생활여건 향상을 위해 정부가 삶의 질법을 발의하였고, 동법에 의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기본계획>(이하, 삶의 질계획)을 수립하는데 2020년 제4차 기본계획이 발표된 바 있음

□ 삶의 질법의 주요 내용

- 삶의 질법은 삶의 질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삶의 질계획 등에 관한 내용을 다양하게 담고 있음
- 삶의 질위와 관련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3-4 삶의 질법의 주요 내용(삶의 질위 관련)

구분	주요 내용
목적	- 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설치
기능	- 삶의 질계획을 심의 -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에 대한 점검·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을 심의 -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심의 -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에 관한 사항을 심의 -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를 심의 - 그 밖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개발 정책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
위원	- 위원장 1명 포함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당연직 위원: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15명 이상) - 어업인 또는 농어업인단체의 대표자와 농어촌의 복지·교육·지역개발 분야에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임기	- 2년
회의	- 기본계획 수립 시에 심의
구성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위원장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를 둠
지원	- 별도로 없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간사위원) - 전문지원기관을 지정(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구분	주요 내용
인력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
협조	-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해야 함 - 시·도지사는 5년마다 시·도계획을 세우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계획을 세움
보고	- 기본계획을 3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해야 함 -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결과 등을 6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존속기한	- 존속기한 없음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일: 2023년 3월 21일)

○ 삶의질계획과 관련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3-5 삶의질법의 주요 내용(삶의질계획 관련)

구분	주요 내용
목적	- 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의 촉진
내용	-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 -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및 사회안전망 확충에 관한 사항 - 고령 농어업인에 대한 소득안정화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 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 농어촌의 의료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에 관한 사항 - 제31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확대에 관한 사항 - 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에 관한 사항 - 필요한 재원의 투자계획 및 조달에 관한 사항 - 농어촌서비스기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의 지역개발 등에 관한 사항
심의	- 계획 수립 및 변경 때 삶의질위의 심의를 받아야 함
하위 계획	-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은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해야 함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을 세우고 시행해야 함
실태 조사	- 5년마다 농어업인등의 복지실태 등을 조사해야 함
평가·점검	- 기본계획 기간 종료시 기본계획 추진실적을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평가 - 매년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평가
사전 협의 (이행계획)	- 점검과 평가 결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협의 대상 통보 -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은 이행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 필요 - 위원회는 이행계획서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다시 통보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일: 2023년 3월 21일)

○ 삶의 질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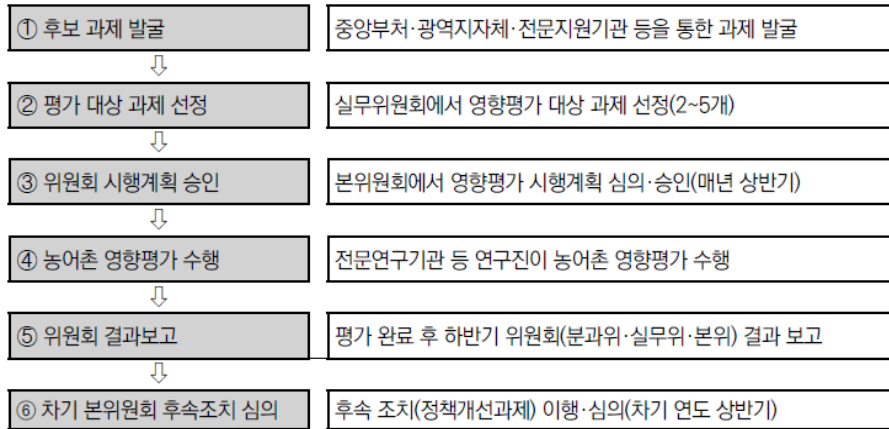
표 3-6 삶의질법의 주요 내용(삶의질 정책 대상 관련)

구분	주요 내용
복지증진	- 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농어업인 질환의 예방·치료 등의 지원 - 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 농어업인 질환의 예방 등을 위한 시설의 지원 -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 농어업인의 영유아 보육비 지원 - 농어촌 지역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 농어촌 여성의 복지증진 -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복지증진 지원 - 고령 농어업인의 생활안정 지원 - 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의 실시 - 고령 등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 등의 영양개선 - 농어업인 등의 일차리 창출 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 - 자동차손해배상에서 농어업인에 대한 지급액의 보장 등
교육여건 개선	-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 농어촌 유치원 유아의 교육·보호 -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 농업·수산업 기초인력의 양성 - 농어촌학교 교직원의 확보·배치 - 농어촌학교 교직원의 우대 -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 농어촌학교의 시설·설비 등 지원 - 농어업인 등의 평생교육 지원
지역개발	- 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 농어촌 경관의 보전 - 국가주요농업유산의 보전·활용 - 국가중요어업유산의 보전·활용 - 농어촌산업 육성 - 농어촌의 정보화 촉진 - 농업·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등 - 농어촌의 문화예술 진흥 - 농어촌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확대 - 농어촌지역 교통편의 증진 지원 - 내항 화물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 지원 - 농어촌 투자유치 활성화 - 도·농교류센터의 설치·운영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일: 2023년 3월 21일)

○ 삶의질법은 농어촌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그림 3-3 농어촌영향평가의 절차



※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1). 『2021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연차보고서』.

□ 삶의질위의 주요 연혁

○ 삶의질위의 주요 연혁은 다음과 같음

표 3-7 삶의질위의 주요 연혁

연월	주요 내용
'04.03.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공포
'05.04.	- 「제1차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발표
'09.12.	- 「제2차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발표
'10.07.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
'12.04.	-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정
'14.06.	- 삶의 질 향상 위원회 회의 개최
'14.12.	-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발표
'15.07.	- 농어업인 삶의 질 정책지원 네트워크 출범
'16.01.	- 삶의 질 향상 위원회 분과위원회 설치 운영
'16.11.	- 삶의 질 향상 위원회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회의 개최
'17.12.	- 삶의 질 향상 위원회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연월	주요 내용
'18.12.	- 삶의 질 향상 위원회 보건·복지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19.09.	- 삶의 질 향상 위원회 보건·복지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19.12.	-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실무위원회 회의 개최(서면)
'20.02.	- 삶의 질 향상 위원회 회의 개최 (대면) -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발표
'20.12.	- 삶의 질 향상 위원회 보건·복지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21.05.	-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실무위원회 회의 개최(서면)
'21.06.	- 삶의 질 향상 위원회 본위원회 개최 (서면)
'21.11.	- 삶의 질 향상 위원회 보건·복지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 삶의 질 향상 위원회 교육·문화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1). 『202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연차보고서』.

2.2. 삶의 질 위원회 및 사무국

□ 위원회의 구성

- 삶의 질위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전문지원기관으로 역할함
- 분과위원회는 보건·복지 분과위원회와 교육·문화 분과위원회가 있음
- ※ 삶의 질법은 분과위원회 외에도 특별분과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음

□ 본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 본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등 14개 부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22년 말 기준 9명의 민간 위원이 위촉돼 총 25명으로 구성됨
-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5년마다 삶의 질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임

그림 3-4 삶의질위의 구성

- 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 정부위원(당연직)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 민간위원(위촉)				
이성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임준택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장	이숙원 한국여성농업인 중앙연합회장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정화 전남대 생활환경정책학과 교수	임후남 한국교육개발원 고등평생교육연구본부장	오승은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김정혁 (주)자이언트 대표	

※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 홈페이지 (검색일: 2023.05.31.)

□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 실무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제1차관, 교육부 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보건복지부 차관, 환경부 차관, 고용노동부 차관, 여성가족부 차관, 국토교통부 제2차관, 해양수산부 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국무조정실 제2차장, 통계청장, 경찰청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등 14개 부처 차관, 국무조정실 제2차장 및 6개 청장, 22년 말 기준 15명의 민간위원이 위촉돼 총 37명으로 구성됨

그림 3-5 삶의질위 실무위원회의 구성

- 위원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정부위원(당연직)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	장상윤 교육부 차관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전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차관	유재철 환경부 차관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이정원 국무조정실 제2차장
한 훈 통계청장	윤희근 경찰청장	조재호 농촌진흥청장	남성현 산림청장	이홍교 소방청장
정봉훈 해양경찰청장				
- 민간위원(위촉)				
이재식 농협중앙회 전무이사	홍진근 수협중앙회 지도경제사업 대표이사	최홍식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수석부회장	이춘선 전국여성농민회중앙회 사무총장	박준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조정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원장	김동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영란 목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양병찬 공주대 교육학과 교수	박주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강미나 국토연구원 주택정책연구센터장	최병숙 전북대 주거환경학과 교수	엄정희 경북대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손병창 나사렛대 재활공학과 교수	양원탁 전북연구원 부연구위원

※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 홈페이지 (검색일: 2023.05.31.)

○ 실무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함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의 수립 및 조정 관련 심의함
- 연도별 시행계획의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
- 농어촌특별세로 지원되는 사업의 총괄·조정 및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
-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농어업인 등의 복지 증진, 농어촌의 교육 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함

□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 분과위원회는 보건·복지 분과위원회와 교육·문화 분과위원회가 있음

그림 3-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



※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홈페이지 (검색일: 2023.03.22.)

□ 전문지원기관의 구성 및 역할

- 삶의질법 제46조는 전문지원기관을 지정하여 지원함을 정하고 있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됨
- 전문지원기관은 삶의질위 관련 업무를 지원함
 - 시행계획에 대한 점검·평가, 농어촌서비스 기준 달성 정도 점검·분석, 농어촌 영향평가제도 운영지원을 함
 - 삶의질 실태에 대한 DB 분석 결과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함
 - 분야별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홍보·교육·컨설팅 등 지원활동을 수행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삶의질 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는 별도의 센터를 설치하고 있지 않음

2.3. 운영 현황

□ 본위원회 운영 실적

- 정부가 삶의질위 본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옴
 - 현재 51조 원 규모의 투융자 계획을 담은 제4차('20~'24) 기본계획이 시행 중임
 - 기본계획은 단일 부처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을 부처간 협업을 통해 수립하는 범부처 계획으로, 총리 주재 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부처별 시행계획 및 지자체 계획의 지침이 됨
- 삶의질위는 5년마다 수립되는 기본계획 심의를 위해서 제한적으로 개최됨
 - '05년~'22년까지 총 21회 개최되었는데, 그중 13회가 서면보고였으며, 총리 대면보고는 8회에 불과함
 - '21년 7월부터 '22년 6월 사이 본위원회 회의는 1회(서면),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별 매 1회 실시되었음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 <제3차 삶의질기본계획>까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1차 삶의질기본계획>은 “삶과 휴양, 산업이 조화된 복합 정주공간으로서의 농산어촌”을 비전으로 22.8조원의 투융자가 이루어졌으며, 주로 농어촌에 중소도시 수준 생활 인프라 구축을 중점과제로 하여 '13년까지 농촌 인구를 전체 인구의 20%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제2차 삶의질기본계획>은 “삶터, 일터, 쉼터가 조화된 행복한 농어촌 구현”을 비전으로 하여, 34.5조원의 투융자가 이루어졌으며, 기초 생활인프라와 복지기반이 갖추어지고, 다양한 산업이 발전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농어촌을 목표로 하였음. 이에 2대 선진 제도로 농어촌 서비스 기준(rural service standard)과 농어촌 영향평가(rural proofing)을 시행함
 - <제3차 삶의질기본계획>은 “활력있는 공동체를 기반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농어촌 구현”을 비전으로 도-농 격차 완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음

며, 46.5조원의 투융자를 실행함

표 3-8 삶의질기본계획의 비교

구분	제1차 기본계획	제2차 기본계획	제3차 기본계획
기간	'05~'09	'10~'14	'15~'19
추진 배경	한칠레 FTA 체결 농업·농촌 종합대책 (농업경쟁력 강화 + 소득증 대 + 정주여건 개선)	포괄보조금 도입, 기초생활권 정책 재편 등	지역행복생활권 정책 도입
주요 내용	농촌의 각종 인프라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 등 (4대 부문 133개 과제)	농촌의 각종 인프라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 등 (4대 부문 133개 과제)	맞춤형 체감복지 확충, 공공 서비스 사각지대 최소 화 등 (7대 부문 185개 과제)
투융자 규모	(계획) 20.3조원	(계획) 34.5조 원	(계획) 46.5조 원
참여 부처	농식품부, 해수부, 교육부, 복지부, 문체부, 국토부 등 14개 부처	농식품부, 해수부, 교육부, 복지부, 문체부, 국토부 등 14개 부처	농식품부, 해수부, 교육부, 복지부, 문체부, 국토부 등 15개 부처
특징	H/W 중심의 중앙정부, 공급자 관점	농어촌서비스기준, 농어촌 영향평가 등 선진제도 신규 도입	부처들의 관심 부족으로 정책 조성 성과 미흡

※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1). 『2021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연차보고서』.

○ <제4차 삶의질기본계획>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수립됨(한국농촌경제연구
원, 2021)

- '18년 연도별 시행계획과 제3차 기본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 3개년 시행계획 평가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8개 부진과제(10개 세부
과제)를 도출하고 각 과제별 개선방안을 제시함
 - 제3차 삶의질기본계획 종합평가 연구(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관) 실시
및 중점 추진과제를 도출함
- '19년 3월 부문별 핵심과제 도출 및 이슈페이퍼 작성을 실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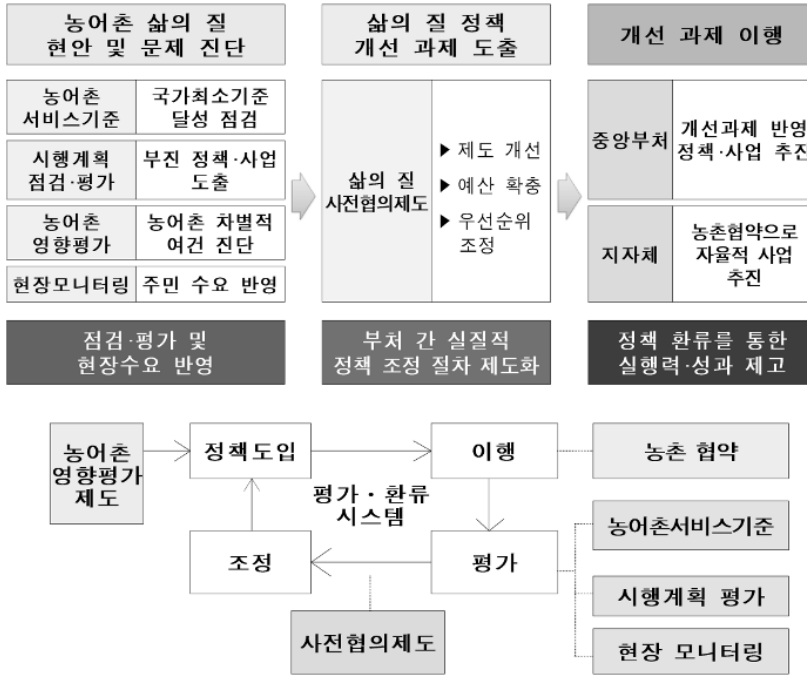
표 3-9 삶의질기본계획 과제별 이슈페이퍼 작성

과제명	집필진
① 농어촌 커뮤니티케어 모델 구축	남일성 교수(성공회대)
② 농어촌 지역 고령자 공동이용시설 구축	이중섭 박사(전북연구원)
③ 농어촌형 교통모델 확산(보급)	김용욱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④ 다문화 가정 소득 확충 방안	장민기 소장(농정연구센터)
⑤ 농촌 지역 여성 농업인 특화 건강검진 지원	고상백 교수(연세대)
⑥ 해양 조업 안전사고 예방	박상우 박사(한국해양수산개발원)
⑦ 농촌형 사회 서비스 제공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황영모 박사(전북연구원)

※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1). 『2021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연차보고서』.

- '19년 5월 <제4차 삶의질기본계획> 기본방향을 도출함
 - 농어촌 지역 간 격차 및 정책 수요 파악을 위해 농어업인복지실태조사 및 농어촌서비스 기준 분석 작업을 수행함
 - 기존 제1~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평가함
 - 제4차 기본계획의 정책 방향 및 비전·목표, 추진과제 및 추진전략을 도출함
 - 분야별 세부과제 및 역점 추진과제를 도출함
 - 농어촌 서비스 기준, 농어촌영향평가 제도의 개편과 사전협의제도 도입 등 추진체계 개편 방향을 추진함
 - 국무조정실 검토 및 일정 협의를 진행함
 - 위원회 개최를 위한 전문가 자문단 운영 및 연구를 진행함

그림 3-7 삶의 질 정책 추진체계



○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보도자료, 2020.02.19.)⁵⁾

- 3차에 걸친 삶의 질 기본계획 등을 통해 정주생활 기반이나 경제·일자리, 안전 인프라 등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진료·응급 서비스, 영유아 보육, 초중학교 교육, 대중교통 등은 여전히 도시에 비해 서비스가 부족하고 전반적 생활 여건 만족도도 농어촌이 도시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고령화·공동화 등이 도시보다 농어촌 지역에서 빠르게 심화되고 있고, 농어촌 내 지역 간 양극화 진전 및 도시와의 생활여건 격차로 지방소멸 위기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반면, 귀농어·귀촌 인구 증가, 힐링공간으로서의 농어촌 가치 향상 등 농어

5)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 조성>. 2020.02.19.

촌 지역에 새로운 기회요인도 있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통한 농촌의 변화가 절실한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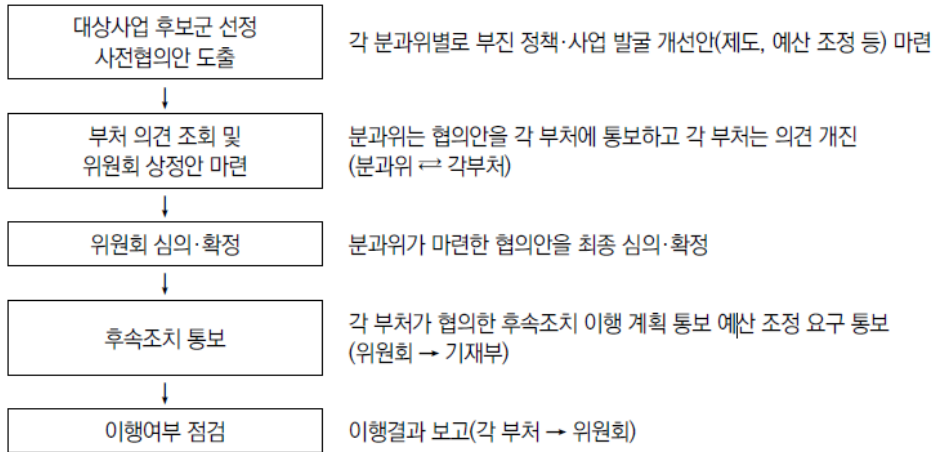
- 이러한 농어촌의 여건을 감안하여, 21개 부·청이 참여,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수요에 대응하여 도농간 격차 및 농어촌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어촌을 조성하기 위한 제4차 삶의질 기본계획을 마련, 4대 전략에 따라 5년간 약 51조원을 투·융자할 계획임
- 기본계획은 ①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과 포용적 공동체 육성, ② 교육·문화 기회의 형평성 보장, ③ 농어촌다움이 살아 있는 정주기반 구축, ④ 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 등 4대 전략별 183개 과제를 제시함
- 한편, 이번 계획에서는 농어촌 지역 노인에 통합적 돌봄 제공을 위한 농어촌형 커뮤니티케어 모델 개발, 귀농어·귀촌인 및 고령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보급 등 농어업인의 체감도가 높은 다양한 신규과제가 도입됨
- 또한 정부는 그동안 삶의질 기본계획의 이행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삶의질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추진체계도 개편하기로 함
 - 농어촌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요구되는 공공서비스의 최소 목표수준을 설정한 ‘농어촌 서비스기준’을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미흡한 과제는 개선방안을 의무적으로 마련하기로 함
 - 또한, 소관 정책 이행에 대한 부처 책임을 강화하고 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전년도 삶의 질 시행계획 실적 점검 결과 부진과제 및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도가 미흡한 과제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추진토록 하는 사전협의를 제도화하였음

그림 3-8 <제4차 삶의질기본계획>의 전략체계

비전	전국 어디서나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	
목표	① 주민을 포용하는 자립적 지역사회 ② 어디서나 서비스 접근성이 보장되는 3·6·5생활권 ③ 농어촌다움이 살아있는 생명의 터전	
전략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과 포용적 공동체 육성	① 농어촌 의료서비스 여건 개선 ② 농어촌 통합 돌봄시스템 구축 ③ 보육, 육아 친화적 농어촌 지역사회 조성 ④ 농어촌 사회안전망 내실화
	교육·문화 기회의 형평성 보장	①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교육 서비스 확충 ② 농어촌 평생교육 강화 ③ 농어촌지역 문화·여가 향유 여건 향상 ④ 주민주도형 문화·여가 향유 지원
	농어촌다움이 살아 있는 정주기반 구축	① 농어촌 지역 교통 여건 확충 ② 농어촌 주거 여건 및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 ③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정주기반 마련 ④ 농어촌다움을 유지하는 환경·경관 보전
	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	① 농어촌 지역자원을 활용한 소득 기반 다각화 ② 농어촌 관광 활성화 ③ 농어촌 취업·창업 촉진 ④ 농어촌 여성 취업 지원 및 일손 부족 해소
추진 기반	○ 농어촌서비스 기준 개편, 사전협의 제도 도입 및 농어촌 영향평가 지침 제정을 통한 삶의 질 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범부처 정책 조정 ○ 농촌협약 도입을 통한 지역 주도 삶의 질 정책 추진기반 제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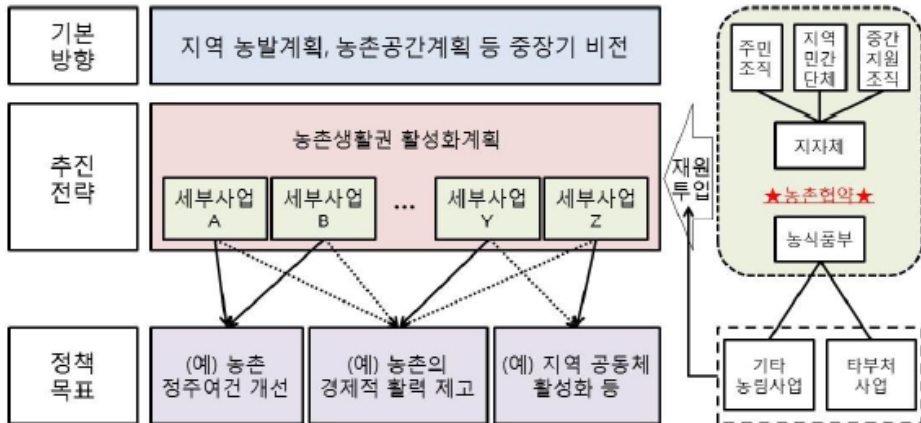
※ 출처: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 조성>, 2020.02.19.

그림 3-9 사전협의 절차



※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1). 『2021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연차보고서』.

그림 3-10 농촌협약의 개념도



※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1). 『2021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연차보고서』.

- 동시에, 국가·지자체의 주요 계획·정책·사업들이 농어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도입한 ‘농어촌 영향평가’의 실효적 운용을 위해 영향평가의 대상·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농어촌 영향평가 운용지침’을 제정하기로 하였음

- 지방재정 이양으로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 정책 추진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파트너십 구축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을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지원하는 ‘농촌협약’을 도입함

3. 위원회 통합 추진 경과 및 주요 쟁점

3.1. 통합 추진 경과

□ 정부의 위원회 폐지 및 통합 결정

- 행정안전부는 '22년 7월 5일 국무회의에서 위원회의 30% 이상을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정부위원회 폐지 및 통합 추진계획을 보고함
- 이후 2개월간 행정안전부는 각 부처 및 민관합동 진단반과 함께 모든 위원회의 필요성 및 운영 실정 등을 점검함
- 행정안전부는 정부위원회 636개 중 246개(약 39%)를 폐지 또는 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법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함
 - 정비 유형별로 구분하자면, 폐지된 위원회가 166개이며, 유사·중복 위원회 간 통합을 통해 감소된 위원회가 80개임
 - 소속별로 구분하자면,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13개, 총리 소속 위원회가 21개, 부처 소속 위원회는 212개가 해당됨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23개 법률안 개정 추진

- 정부는 '22년 9월 30일 국회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7682호)을 제출함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경우 통합을 통해 3개의 위원회를 줄이고, 12개를 비상설화하며, 2개를 폐지하는 계획을 발표함
-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의 경우 통합을 통해 1개의 위원회를 줄이고자 함
- 산림청의 경우 통합을 통해 3개의 위원회를 줄이고자 함

표 3-10 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 소관 위원회 정비 방안

구분	근거법률	위원회 명	정비방안	비고
농식품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통합	대통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국무총리
	가축전염병 예방법	중앙가축방역심의회	통합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통합	
	식물신품종 보호법	농림종자위원회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간척지운영위원회	비상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	비상설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	비상설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비상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중앙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	비상설	
	농업협동조합법	농협경제사업평가협의회	비상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	비상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시농업협의회	비상설	
	식생활교육지원법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	비상설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비상설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심의회	비상설	
	축산법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비상설	
		축산발전심의회	폐지	

	농업기계화 촉진법	농업기계화정책심의회	폐지	
농진청	농촌진흥법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	통합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지역특화작목위원회		
산림청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심의위원회	통합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산림교육심의위원회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탄소흡수원증진 및 목재이용 위원회	통합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 출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 농어업위와 삶의질위를 통합하기 위한 법률안 개정이 포함됨

- 제정안은 삶의질법 제10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를 삭제하여 삶의질위를 폐지하고, 해당 기능을 농어업위법에 따른 농어업위에서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 또한 제정안은 삶의질위의 폐지 및 농어업위로의 통합을 위하여 농어업위위원을 기존 3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농어업위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음

표 3-11 농어업위 통합 관련 기타 개정 사항

구분	현행	개정
위원회 인원	30명	50명
위원회 구성	기획재정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 출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3.2. 통합 주요 쟁점

□ 위원회 통합의 특성

- 농어업인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는 사항으로, 농어업위와 삶의질위 통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유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음
 - 농어업위와 삶의질위는 각각 농어민의 큰 기대를 받으며 설립·운영되었음
 - 두 위원회가 통합되더라도 각 위원회 고유의 기능이 훼손되어서는 안 됨
- 형식상 위원회의 통합이나 실질적으로는 농어업위가 삶의질위의 기능을 추가적으로 수행하는 방식으로 통합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삶의질위는 심의기구이자 정책 총괄·조정기구이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며 농어업위는 협의기구이자 자문기구이나 대통령 직속 기구이기 때문임
 - 삶의질위는 삶의 질 업무만을 전담하는 별도의 사무국이 존재하지 않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간사위원의 역할을 하고, 외부의 전문지원기관의 지원을 받는데 반해 농어업위는 사무국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농어업위는 존속기한이 '24년 4월로 제한되어 있는데, 존속기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법정 5개년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삶의질위와 통합되는 만큼 상설기구를 가정하여 통합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 농어업위는 비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나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같이 헌법에 명시된 기구는 아니나, 헌법 123조에서 정한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자문하는 기구로서 그 역할을 설정해야함

□ 농어업위에 대한 평가

- 농어업위는 조직목표가 분명하다고 말하기 어려움
 - 농정 전환은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으나 농정 전환 자체가 조직목표가 될 수는 없음
 - 아울러 농정 전환의 방향은 시점과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조직 구

- 성원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조직목표라고 말할 수 없음
- 농정 전환은 상당히 거시적이며 장기적인 목표로서 성과측정이 어렵기에 조직 구성원의 활동을 활성화하는 조직목표라고 말하기 어려움
 - ※ 농어업위에서 지나치게 많은 의제가 다뤄졌다는 평가가 많은데(예: “수많은 정책이 난무하는 것은 무정책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농정 전환이라는 조직목표가 모호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음⁶⁾
 - 농어업위는 협의기구의 역할을 수행했으나 자문기구의 역할은 미진하였음
 - 분과위원회에 다양한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원활한 협의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협의 주제와 결과도 시의적절하였다고 평가가능함
 - 그러나 대통령이 참여하는 회의는 단 한 차례만 개최되었으며, 그 회의 역시 본위원회 의결 안건을 활용한 자문이 아니라 타운홀미팅 보고대회였음
 - 농어업위 당연직 위원들의 직접 참석은 거의 없었으며, 차관 및 실장이 대리 참석함으로써 실질적인 정책 결정이 이뤄졌다고 평가하기도 어려움
 - 협의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부처가 연관된 복잡한 현안을 다루기보다 중장기적인 방향만을 주로 제시할 수밖에 없었음
 - 농어업위는 협의기구로서 자체적으로 안건을 발굴하기 어려우며, 의결한 안건을 직접 집행할 수 없으며, 평가·환류조차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음
 - 농어업위는 관련 부처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자문할 뿐 행정적인 권한이 없어 의결 사안에 대한 구속력이 없음
 - 농어업위에서 다루었던 계획 및 정책은 과제별로 나뉘어 관계 부처에서 집행하면서 관계부처의 성과로 측정될 수밖에 없음
 - 농어업위는 조직자원이 충분하다고 말하기 어려움
 - 사무국에는 관계부처 및 단체에서 파견된 전문가들이 근무하고 있으나 근무의 연속성이 떨어져 전문성의 축적과 집행력의 유지가 어려움
 - 전문임기제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으나 조직의 존속기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고용의 불안이 클 수밖에 없으며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이 제한됨

6) 국회의원 홍문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역할과 발전 방향 정책 토론회>, 2023.02.02.

□ 삶의질위에 대한 평가

- 삶의질위는 삶의질 기본계획 심의기구로서 역할만 담당할 뿐 실질적 활동이 부족하였음
 - 본위원회 회의는 서면 위주로 개최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제대로 개최되지 않았으며, 실무위원회나 분과위원회 회의조차 활발하게 이뤄졌다고 말하기 어려운 실정임
- 근거 법률에 따라 관련 정책의 총괄 및 조정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정책 총괄 및 조정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했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 삶의질법 제10조는 “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삶의질위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음
- 실무위원회가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하나,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농식품부 장관이 맡음으로써 농식품부 중심으로 운영되었다고 말할 수 있음
- 분과위원회는 활발하게 운영되지 못했음
- 운영을 지원하는 별도의 전담 사무국이 없었으며 농식품부에서 간사 역할을 담당하였음
- 전문지원기관에서 상당한 역할을 해 왔음이 확인됨
 - 삶의질 기본계획 수립을 주도했으며, 관련 사업 및 연구를 수행한 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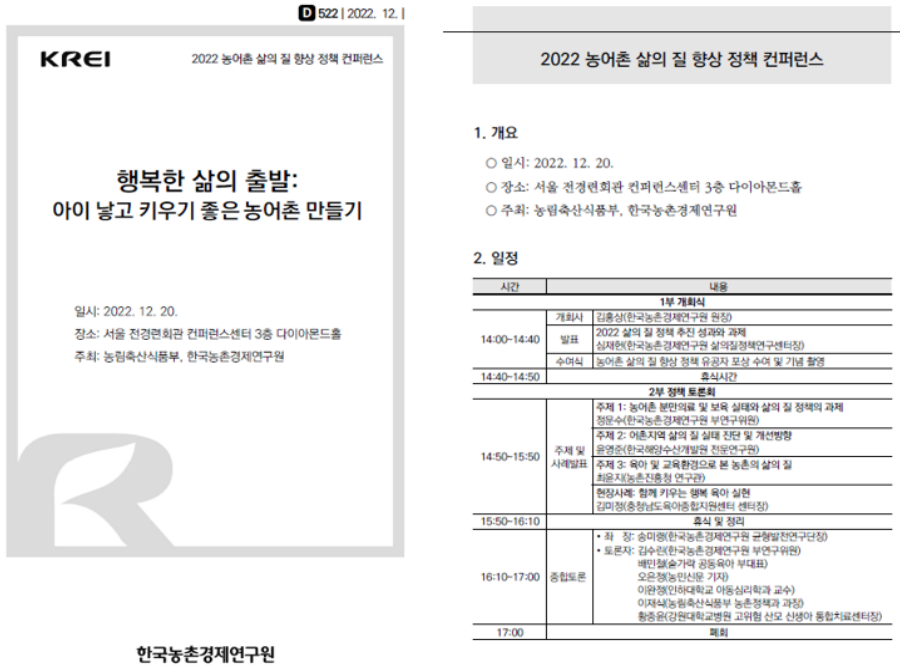
그림 3-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 홈페이지

번호	제목	파일	조회수	작성일
94	202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우수사례집		746	2022.12.21
93	202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우수사례집 연구보고서		430	2022.09.16
92	[심층연구] 인구감소 시대, 농촌 삶의 질 향상 정책 개선방안 연구		448	2022.09.16
91	농어촌 생활행기: 농촌농도사랑 교통지킴이 개선		495	2022.09.16
90	2021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평가		247	2022.09.16
89	2021 농어촌사회복지조사기관 역할실태 점검 평가		304	2022.09.16
88	2021 농어촌 삶의 질 실태에 관한 농촌 정책도 조사		560	2022.09.19
87	농어촌 생활행기: 농어촌 행복 대안 마련		449	2022.04.12
86	[심층연구] 농촌 지역 학교시설 확충과 지역 경제		523	2022.01.28
85	[심층연구] 도농 상생을 위한 스마트농업과 혁신농업 육성 방안 연구		597	2022.01.14

※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홈페이지 (검색일: 2023.04.20.)

- 특히 농식품부와 함께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사업 내용을 공개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이어왔음

그림 3-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 자료집



※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홈페이지 (검색일: 2023.04.20.)

○ 삶의 질 기본계획은 몇 개의 큰 주제로 나눠 부처별 계획 및 정책들을 취합하는 것에 그치고, 협력 및 조율 기능이 미흡하여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성과 창출에 한계가 존재함(송미령, 2023)

※ 기본계획은 단일 부처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을 부처간 협업을 통해 수립하는 범부처 계획으로, 총리 주재 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부처별 시행계획 및 지자체 계획의 지침이 되어야 함

- 삶의 질 기본계획 수립 절차가 체계적이지 못하여, 관련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거나 조정되지 못하였음

- 삶의질법은 지역 조직의 설치 및 운영을 정하고, 시·도 계획과 시·군·구 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등 지역과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확인되지 않음
 - 삶의질법 제7조는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계획을 세우고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삶의질법 제10조의2는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수립·변경과 그 밖에 관할 농어촌지역의 개발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그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시·도 위원회”라 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시·군·구 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다만, 시·도 위원회 또는 시·군·구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에 따른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농촌복지실태조사를 시행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농어업위나 지원기관과의 관계가 모호한 측면이 있음
- 사전협의, 농어촌영향평가, 농촌협약 등 다양한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으며 상당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발전 여지가 있음
 - 가령, 농어촌영향평가는 삶의질법 45조에 따라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 및 소관 중요 정책이 농어촌지역의 경제·사회·문화·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21년에는 ‘농어촌 통학 여건 개선’ (교육부)와 ‘농촌형·도시형 교통모델 개선’ (농식품부, 국토교통부) 2개만 시행되었음
- 농업 이외의 분야에서 활동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못함

4. 소결

□ 삶의질위의 한계

- 삶의질위는 기본계획 심의기구로서 역할만 담당할 뿐 실질적 활동은 부족하였음
- 정책 총괄 및 조정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했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농식품부 장관이 맡고 농식품부 중심으로 운영됨
 - 운영을 지원하는 별도의 전담 사무국이 없었으며 농식품부에서 간사 역할을 하였음
- 전문지원기관에서 상당한 역할을 해 왔음이 확인됨
- 삶의질기본계획은 부처별 계획 및 정책들을 취합하는 것에 그치고, 협력 및 조율 기능이 미흡하여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성과 창출에 한계가 존재함(송미령, 2023)
- 삶의질법은 지역과의 연계를 강조하는데 그 성과가 확인되지 않음
- 사전협의, 농어촌영향평가, 농촌협약 등 다양한 제도들을 마련하여 활용 가능함

□ 위원회 통합의 특성

- 농어업인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는 사항으로, 통합으로 시너지 효과의 유발이 필요함
- 농어업위 위원회 및 사무국을 기반으로 삶의질기본계획을 비롯하여, 사전협의, 농어촌영향평가, 농촌협약 제도들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형식상 위원회의 통합이나 실질적으로는 농어업위가 삶의질위의 기능을 추가적으로 수행하는 방식으로 통합할 수밖에 없음
- 삶의질위의 기능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농어업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농어업위의 인력, 조직,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제4장

국내외 사례 분석

국내외 사례 분석

1. 국내 사례 분석

1.1. 행정기관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⁷⁾

□ 행정기관위원회 설치 현황

- '22년 6월말 기준, 법률과 대통령에 근거한 행정기관위원회는 총 636개임
 - 이중 대통령, 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행정위원회가 42개, 자문위원회가 594개에 이룸
 - 설치근거별로 보면, 법률에 근거를 둔 위원회가 569개이며 대통령령에 근거를 둔 위원회가 67개임

표 4-1 행정기관위원회 설치근거별 현황

구분	계	법률	대통령령
계	636	569	67

7) 행정안전부(2022)을 발췌함. 행정안전부(2022). 『2022년 행정기관 위원회 현황』.

행정위원회	42	42	-
자문위원회	594	527	67

※ 출처: 행정안전부(2022). 『2022년 행정기관 위원회 현황』

- 소속별로 보면, 대통령 소속이 21개, 국무총리 소속이 61개, 각 부처(소속 기관 포함) 소속이 554개임

표 4-2 행정기관위원회 소속별 현황(총괄)

구분	대통령	국무총리	각 부처
기관 수	21	61	554

※ 출처: 행정안전부(2022). 『2022년 행정기관 위원회 현황』

- 부처별 위원회 현황은 다음과 같은데, 중앙부처 중에서는 국토교통부가 가장 많은 60개이며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기획재정부가 그 뒤를 잇고 있음

※ 행정안전부는 조직규모가 크고 민간부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처에서 위원회를 많이 운영하고 있다고 평가함

표 4-3 소속별 행정기관위원회 현황(세부)

소속	소계	행정위원회	자문위원회
대통령	21	2	19
국무총리	61	10	51
고용노동부	15	3	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3	0	23
교육부	30	2	28
국무조정실	1	0	1
국방부	22	1	21
국토교통부	60	3	57

소속	소계	행정위원회	자문위원회
기획재정부	28	1	27
농림축산식품부	24	2	22
문화체육관광부	26	2	24
법무부	20	1	19
보건복지부	49	1	48
산업통상자원부	32	2	30
여성가족부	8	0	8
외교부	4	0	4
중소벤처기업부	14	0	14
통일부	4	1	3
해양수산부	22	0	22
행정안전부	35	3	31
환경부	26	1	25
국가보훈처	3	1	2
법제처	2	0	2
식품의약품안전처	15	0	15
인사혁신처	8	2	6
관세청	6	0	6
검찰청	0	0	0
경찰청	0	0	0
국세청	6	0	6
기상청	1	0	1
농촌진흥청	3	0	3
문화재청	7	0	7
방위사업청	1	0	1
병무청	2	1	1
산림청	7	0	7
새만금개발청	0	0	0
소방청	7	0	7
조달청	0	0	0

소속	소계	행정위원회	자문위원회
질병관리청	2	0	2
통계청	0	0	0
특허청	3	0	3
해양경찰청	3	0	3
행복도시건설청	0	0	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	0	1
공정거래위원회	1	0	1
국민권익위원회	2	1	1
금융위원회	13	1	12
방송통신위원회	10	0	10
원자력안전위원회	2	0	2
기재부, 산업부	1	0	1
교육부, 문체부	2	0	2
산업부, 국토부	1	0	1
해수부, 환경부	1	0	1
경찰청, 해양경찰청	1	0	1
총계	636	42	594

※ 출처: 행정안전부(2022). 『2022년 행정기관 위원회 현황』

○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총 21개로, 행정위원회는 2개, 자문위원회는 19개임

표 4-4 대통령 소속 행정기관위원회 설치 현황

구분	위원회 명
행정위원회(2)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자문위원회(19)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가교육회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물관리위원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국가우주위원회, 국가인적자원위원회, 국가 지식재산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국방경제협력위원회,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위원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출처: 행정안전부(2022). 『2022년 행정기관 위원회 현황』

-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는 총 61개로, 행정위원회는 10개, 자문위원회는 51개임

표 4-5 국무총리 소속 행정기관위원회 설치 현황

구분	위원회 명
행정위원회(2)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회위원회,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 동의대사건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자문위원회(19)	2023 새만금세계스카우트잰버리정부지원위원회,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회위원회,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공직인사혁신위원회, 국가기록관리위원회,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국가보훈위원회, 국가산학협력위원회,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국토정책위원회, 군공항이전사업지원위원회, 기반시설관리위원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새만금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소비자정책위원회, 수소경제위원회, 시민사회위원회,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양성평등위원회, 외국인정책위원회, 융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원자력진흥위원회, 유아교육보육위원회,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자원봉사진흥위원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정보공개위원회,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중앙징계위원회,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유치지역지원위원회,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행정협의조정위원회

※ 출처: 행정안전부(2022). 『2022년 행정기관 위원회 현황』

□ 행정기관위원회 운영 현황

- 대통령 소속 위원회들의 평균 회의 예산은 5억 4천여만원으로 1년간('21.07.~'22.06.) 평균 출석회의 26.57회, 서면회의 3.48회를 실시하였음

표 4-6 행정기관위원회 운영 현황

연번	위원회 명	회의실적('21.07.~'22.06.)			예산(천원)
		출석	서면	합계	
1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27	1	128	1,270,640
2	4차산업혁명위원회	21	1	22	716,400
3	국가우주위원회	5	1	6	-
4	국가지식재산위원회	16	1	17	430,000
5	국가교육회의	44	0	44	940,000
6	국가인적자원위원회	0	0	0	-
7	규제개혁위원회	20	4	24	1,059,000
8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8	39	47	63,600
9	국가건축정책위원회	22	0	22	110,000
10	북방경제협력위원회	2	0	2	81,000
11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16	3	19	438,000
12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14	2	16	184,000
13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4	1	5	193,854
14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3	1	4	21,400
15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44	5	49	-
16	국가균형발전위원회	48	10	58	200,000
17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4	0	4	331,000
18	자치분권위원회	25	1	26	571,000
19	국민통합위원회	0	0	0	1,054,288
20	국가물관리위원회	11	2	13	1,332,951
21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124	1	125	681,040
평균	-	26.57	3.48	30.05	537,676

※ 출처: 행정안전부(2022).『2022년 행정기관 위원회 현황』

1.2. 대표 사례 분석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분석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현황은 아래와 같음

표 4-7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현황

구분	내용		
	소속	주관	성격
소식 및 성격	대통령	보건복지부	자문위원회
설치근거 및 시행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2005.05.18.)		
위원회 구성일	、「05.09.01.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설치목적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기능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한 중·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전망에 관한 사항 심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심의 「5개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심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		
예산('22년)	、「해당 없음		
위원	「위원장: 대통령 「총 24명: 당연직(8명), 위촉직(16명)		
회의 개최 실적 (‘21년 7월~’22년 6월)	「본회의: 출석 1회, 서면 3회 「분과회의 43회, 서면 2회		
분과위원회	「정책운영분과, 미래기획분과, 세대공감분과, 지역상생분과, 일생활균형 분과, 성평등노동권분과, 가족다양성분과, 아동돌봄분과		

※ 출처: 행정안전부(2022). 『2022년 행정기관 위원회 현황』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현황은 아래와 같음
 - 관계 기관과의 활발한 협력을 통해 관련 정책의제들을 주도하고 있음
 - ※ 최근 국민통합위원회 간담회, 인구미래전략 차관회의 주제, 사회단체 및 지방정부와 업무협약을 맺음
 -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인구미래전략위원회로

명칭 변경 추진('22.11.25.)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 경과는 다음과 같음

표 4-8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 경과(1차)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보완)>('06~'10)

- 제1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개최 및 기본계획 수정·보완 추진계획 보고('08.4.18.)
- '새로운 정부 출범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신규과제 발굴'을 주제로 연구 용역 실시('08.5~8월)
-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08.5.21~28, 5차례 개최)
- 권역별 지자체 간담회('08.6.19~30, 4차례 개최)
- 신규발굴과제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수렴('08.6)
- 실무위원회 2차례 개최 및 분야별 중점 보완과제 논의
 - ♦ 저출산인구분야 실무위원회('08.7.15.)
 - ♦ 고령화 및 고령사회경제산업분야 실무위원회('08.9.18~24)
- 기본계획 보완(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08.9.18~24)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개최 및 기본계획 보완(안) 심의·의결('08.11.24)

표 4-9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 경과(2차)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11~'15)

- 제1차 기본계획 평가 및 정책수요 조사
 - ♦ 지난 5년간 추진성과에 대한 종합 평가('10년)
 - ♦ '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실시('09년, 보사연)
 - * 저출산정책에 대한 정책수혜정도, 만족도 및 욕구 등 조사
 - ♦ 출산·고령사회 정책 국민체감도 및 우선순위 조사('09년, 보사연)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실시('09.10월~'10.11월)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7개 국책기관 참여
- 저출산 대책관련 대통령 보고대회 개최(미래기획위원회, 저출산대응 전략회의, '09.11.25.)
- 총리실 중심 관계부처 협의·조정
 - ♦ 5대분야 부처합동 T/F 구성·운영('10.5월~8월)
 - * 출산·양육, 고용·인력, 고령 복지, 재정·제도, 교육·홍보

- ◆ 총리실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추진협의회 구성·운영('09.12월~10.10월, 13회)
- ◆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10.6.25, 7.2, 7.16, 10.15, 4회)
- ◆ 관계부처 차관회의('10.8.27, 9.1, 9.24, 3회)
- 사회적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간담회 개최
 - ◆ 학계·경영계·고용계·사회단체 대상 대토론회('10.5~6월, 9차)
 - ◆ 복지부 장관 주재 토론회·간담회 개최('10.5~7월)
 - * 장관 주재 민간연구기관 정책제안 토론회(5월), 연구소장 간담회(5월)
 - * 미혼·기혼여성 등 대국민 초청 장관주재 간담회(7월)
- 인구변동전망과 대응방안에 관한 국제학술대회 개최('10.7.15~16)
- 제2차 기본계획 시안(試案) 발표('10.9.10.)
- 제2차 기본계획 시안(試案) 공청회 개최('10.9.14.)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심의('10.9.29.)

표 4-10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 경과(3차)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16~'20)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저출산 추세 반전, 고령사회 연착륙 등 추진방향과 민간·정부 공동 수립추진 체계 확정('15.2.6.)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산하 정책운영위원회, 분야별 분과위원회 논의를 통해 기본계획 과제 검토 및 실행계획 작성 등 추진
 - * 결혼·출산, 인구경쟁력, 삶의 질, 지속발전, 총괄 및 분과위원회 운영, 총 90여회 회의 개최
 - ◆ 쟁점 과제에 대해서는 민간간사위원 주재 조정회의(3회), 사회관계장관 회의(7.17, 9.21), 국무조정실 조정회의(2회) 등을 통해 협의·조정
- '5천만이 함께 만드는 기본계획'을 위해 온라인 국민제안 운영(2.1~362건), 장관 현장방문(6회), 시도지사 현장토크(18회) 등 현장 소통 강화
 - ◆ 저출산의 구조적 문제 대응방향, 고령자 기준 및 복지·고용시스템 개선방향, 저출산사회의 인구역동성 등 토론회 개최(5.29, 7.23, 9.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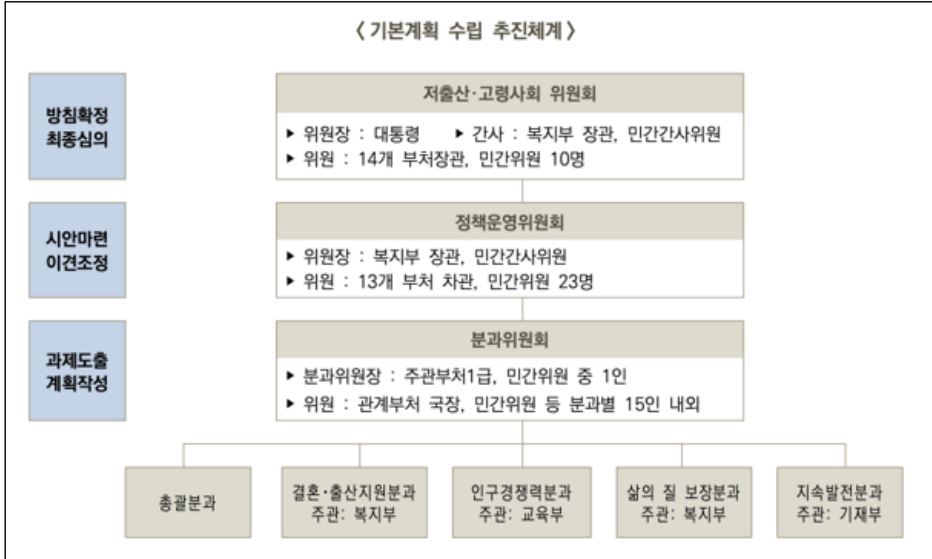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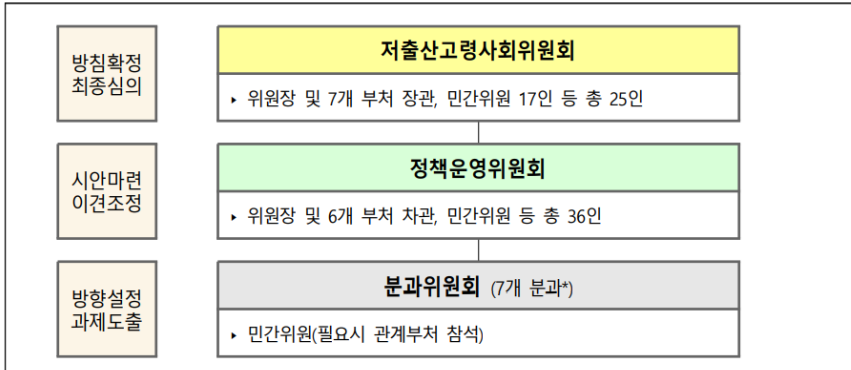


표 4-11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 경과(4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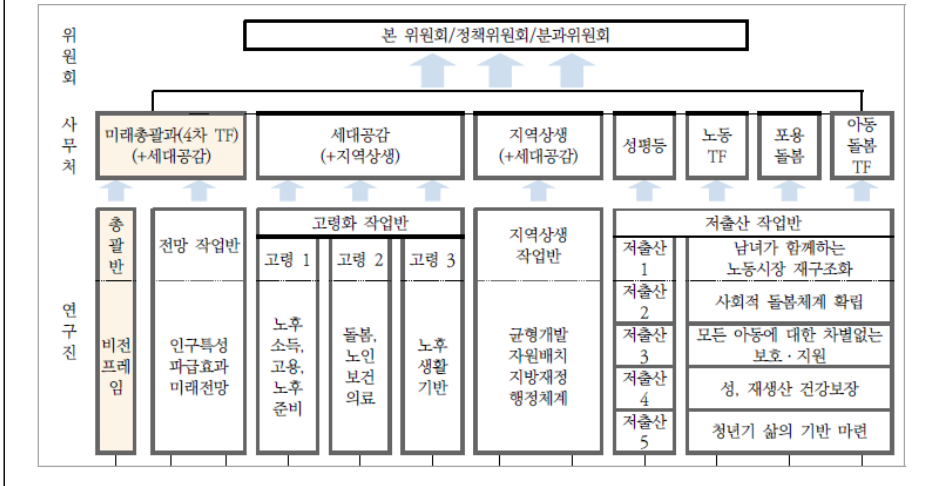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1~'25)

- 위원회 산하 정책운영위원회, 7개 분과위원회 등 130여명의 각 분야 전문가들과 10개월간 약 120여 차례 회의를 거쳐 논의 및 검토
 - * 7개 분과위원회, TF 등 (110회) / 정책운영위원회 (5회) / 본위원회 (4회)
 - ◆ 관계부처 과제제출(5월),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실무협의('20.9~11월) 실시
 - ◆ 지역순회토론회('19.11~12월), 아이디어 공모전 운영('20.5월, 4,620개 제출), 현장방문 및 청년 간담회('20.3~7월), 주요과제 토론회('20.7~11월), 시안 공청회('20.11.26.) 등 국민 참여 유도
 - ◆ 저출산 현장의 기저에 있는 경제·사회·문화적 토양과 인식을 통해 저출산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인문사회 포럼 운영('20.6~8월, 보건복지부)
 - ◆ 국무총리 주재 목요대화 실시 및 총리실·BH 통한 관계부처 협의
 - * 대통령실, 복지부, 총리실 주관 핵심·쟁점 과제 조정회의(5회), 국무총리 목요대화(2회), 사회·경제 현안조율회의 등 개최
- 분과위원회별 추진방향 및 정책과제 논의·검토 후 정책운영위 사전 검토·조정을 거쳐 본위원회의 심의·의결

< 기본계획 수립 추진체계 >



* 미래기획/세대공감/일·생활균형/성평등노동권/가족다양성/아동돌봄/지역상생 분과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국 조직 구성은 다음과 같음

- 부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 사무국장 1명, 5개과로 구성됨
-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그림 4-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조직도



※ 출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홈페이지(검색일: '23.04.20.)

□ 국민통합위원회 분석

○ 국민통합위원회 현황은 아래와 같음

표 4-12 국민통합위원회 현황

구분	내용		
	소속	주관	성격
소식 및 성격	대통령	행정안전부	자문위원회
설치근거 및 시행일	、「국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22.05.30.)		
위원회 구성일	、「22.07.27.		
존속기한 및 근거	、「27.05.31. (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		
설치목적	、「내재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통합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기능	、「국민통합을 위한 기본방향, 국가전략의 수립·변경 및 시행, 국민통합에		

	관한 정책의 조정·평가 및 지원·국민적 통합가치의 도출 및 확산, 국민통합 공감대 형성 및 문화 확산·회 갈등의 예방 및 해결, 국민통합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소통 활성화·법제도의 제개정 및 폐지 등
예산('22년)	· 총 5,003,666천원(회의예산: 1,054,288천원, 사무국예산: 2,169,378천원, 사업예산: 1,780,000천원)
위원	· 위원장: 위촉직·총 36명: 당연직(11명), 위촉직(25명)
회의 개최 실적 (‘21년 7월~’22년 6월)	
분과위원회	· 기획분과, 정치·지역분과, 경제·계층분과, 사회·문화분과+지역협의회

※ 출처: 행정안전부(2022). 『2022년 행정기관 위원회 현황』

○ 비전과 정책과제의 유기적 연결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음

그림 4-2 국민통합위원회 비전과 목표



※ 출처: 국민통합위원회 홈페이지(검색일: '23.04.20.)

- 17개 시도 지역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서 지역별 업무협약 체결식 및 출범식을 개최함
- '23년 국민통합 컨퍼런스를 개최함
- 3국 9과의 국민통합지원단을 구성함

그림 4-3 국민통합위원회 조직도



※ 출처: 국민통합위원회 홈페이지(검색일: '23.04.20.)

□ 사회보장위원회 분석

- 사회보장위원회 현황은 아래와 같음

표 4-13 사회보장위원회 현황

구분	내용		
	소속	주관	성격
소식 및 성격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자문위원회
설치근거 및 시행일	、「사회보장기본법」(2013.01.27.)		

위원회 구성일	· 2013.05.01.
존속기한 및 근거	· 미설정
설치목적	· 사회보장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조정
기능	·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을 수립·범부처차원의 주요 사회보장 시책을 심의·조정
예산('22년)	· 총 2,904,000천원(회의예산: 285,000천원, 사무국예산: 2,201,000천원, 사업예산: 418,000천원)
위원	· 위원장: 국무총리·총 30명: 당연직(15명), 위촉직(15명)
회의 개최 실적 (‘21년 7월~’22년 6월)	· 본회의: 출석 1회, 서면 2회·분과회의: 출석 9회, 서면 4회
분과위원회	· 기획전문위, 제도조정전문위, 평가전문위, 재정·통계전문위, 통합돌봄전문위, 행정데이터전문위

※ 출처: 행정안전부(2022). 『2022년 행정기관 위원회 현황』

○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함

그림 4-4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타 계획간 관계



-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보다 우선함
 - 「사회보장기본법」 제17조는 “제1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 내부에 사무국을 구성하여 직할하고 있음

그림 4-5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 출처: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검색일: '23.04.20.)

- 본위원회-실무위원회-전문위원회로 구성함

- 본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고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위원장을 맡음
- 정부위원: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국무조정실장
- 민간위원: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함
- ※ 5기('22.11.22.~'24.11.21.)의 경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청년재단 이사장, 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 등을 위촉함
-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 중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됨
- 정부위원: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법무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여성가족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국가보훈부차관, 국무2차장
- 민간위원: 사회보장, 지역사회복지, 경제, 고용 등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함
- 전문위원회의 역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기획전문위원회: 복지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아젠다 설정을 담당함(보편/선별, 국가와 지자체 역할 분담, 부처 간 산재된 전달체계 개선 방안 등)
- 제도조정전문위원회: 복지사업 효율화를 위한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사회보장 사업 유사·중복조정·연계 등을 담당함
- 평가전문위원회: 현장지향적 정책개발을 위한 현장 모니터링, 체감도 분석, 사회보장제도 평가 및 개선안 제언 등을 담당함
- 재정·통계전문위원회: 중장기 재정추계 시행 등을 통한 지출 효율화와 재원조달방안 모색, 사실과 입증된 통계 등에 근거한 정책개발을 담당함

- 통합돌봄전문위원회: 중앙·지자체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방안을 검토함
 - 행정데이터전문위원회: 사회보장 및 행정데이터 관련 분야를 검토함
 - 본위원회에 연구기관장, 관련 단체장, 관련 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여함
 - 전문위원회 구성이 분야가 아닌 기능 중심임
-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경과는 다음과 같음

표 4-14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립 경과(1차)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14~'18) ▪ 사회보장기본법 전면 개정('13.127., 시행)으로 '평생사회안전망 구축' 등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제시 ◆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제16조에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 ◆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이념과 국정운영방향에 부합하도록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보장정책을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보장정책'으로 통합·연계 추진 ▪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실시('13.2~11월, 보사연) ◆ 그간 5년간 사회보장 분야(소득보장, 고용·일자리, 교육, 사회서비스 등) 정책평가 및 향후 5년간 핵심과제 발굴 추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9개 국책연구기관*과 분야별 민간전문가 참여 *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국토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등 ▪ 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 민관합동기획단 구성·운영('13.5~12월) ◆ 제1차 사회보장위원회에 기본계획의 수립방향, 절차 등 추진계획 보고('13.5.14.) ◆ 민관합동기획단 및 분야별 TF 구성·운영('13.5~12월) ◆ 민관합동기획단 총괄분과 회의('13.5~11월, 9차) ◆ 민관합동기획단 분과장 회의('13.6.5., 8.13.) ◆ 민관합동기획단 분과별 회의('13.6~11월) ◆ 총괄분과 외 전달체계, 소득보장, 고용·일자리 등 7개 분과 운영

- 사회보장기본계획 초안 작성 및 정부 내 협의
 - ◆ 사회보장기본계획 초안 부내 협의('13.12~'14.1, '14.5), 부처협의('14.1~2, '14.5)
 - ◆ 사회적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14.5.20.)

표 4-15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립 경과(2차)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19~'23)

- 사회보장 중장기방향 및 제2차 기본계획 수립 위한 연구 수행
 - ◆ '비전 사회보장 2040' 기초연구(보건사회연구원) 실시('17) 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연구결과 논의('18.2.9.)
 - ◆ '2018년 사회보장 인식조사' 실시(보건사회연구원, '18.6~10월)
 - ◆ 사회보장 2040 및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19~'23) 수립 연구(보건사회연구원, '18.4~12월)
- 분야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보장 2040·기본계획' 추진 기획단(단장: 복지부차관) 구성·운영
 - ◆ 기획단 출범회의('18.5월), 전체워크숍('18.7월)을 통해 중장기 방향, 중점추진 과제 등 발굴
 - ◆ 고용교육·소득·건강·사회서비스 등 4개 분과별 회의를 통한 세부과제 발굴 및 부처협의('18.10~11월)
- 연구수행 및 기획단 운영 과정에서 사회보장포럼, 사회보장위원회 논의, 공청회 개최 등 다양한방안을 활용하여 의견수렴 실시
 - ◆ '사회보장 2040' 포럼 운영('18.4~7월)
 - ◆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 대상 의견수렴('18.10월)
 - ◆ 사회적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18.12.18.)
- 사회보장위원회 기획전문위원회('19.1.22.), 실무위원회('19.1.24.), 본위원회('19.1.31.) 심의

2. 국외 사례 분석

2.1. 미국 사례 분석

□ 농업법(Farm Bill) 제·개정⁸⁾

○ 미국은 5-7년 주기로 농업법을 포괄적으로 개정해옴

- 1933년 농산물 가격과 농가소득을 지지해주는 농업조정법이 입법된 이후 1980년 중반까지 식부면적 통제를 통한 공급관리 정책이 근간이었음
- 1985년부터 보호농정을 기본으로 하고 시장지향성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1996년 농업법 개정에서는 직접지불을 통한 소득지지와 시장의 생산량을 조절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여 가장 시장지향적인 성격을 가지게 됨
- '02년 농업법에서는 1990년 말 농산물 가격 파동의 영향으로 보호농정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08년에는 기존 직접지불제(DP), 가격보전직접지불(CCP), 판매촉진활동용 융자(marketing loan), 융자부족불제도(LDP)에 평균수입보전직불(ACRE)를 추가함

○ '14년 농업법에는 생산 중립적 직불제도⁹⁾와 가격보전직접지불제도(CCP)와

8) 2008년 농업법 개정에는 박성재 외. 2008. 『선진국형 농정으로의 전환을 위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R577. 2008.12., pp. 25~26의 자료를 참고하였음. 이외 2014년 농업법과 관련해서는 임정빈. 2014. 「2014년 미국 농업법의 배경과 개요-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세계농업』 제168호를, 2018년 농업법과 관련해서는 김상현·임정빈. 2018. 『2018년 미국의 농업법 개정 동향과 시사점-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 포커스』 제173호를 참고함

9) 생산 중립적 직불제도의 폐지에 따라 연간 약 50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해당 금액은 품목별 농가지원과 작물보험의 강화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분석됨(서진교, 2021: 48)

수입보전직불제도(ACRE)를 폐지하고, 가격손실보상(PLC)나 수입손실보상(ARC) 제도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변경함

- '14년 농업법 개정에 영향을 미친 주변 환경과 요인으로 임정빈(2014)은 ① 국가부채와 재정적자 문제, ② 농산물 가격 급등과 양호한 농가경제 상태, ③ 품목정책 개혁의 필요성과 품목들 사이에서의 형평성 요구 증가, ④ 국제 통상협정 관련 의무 이행 문제, ⑤ 농업과 농가소득 지원에 대한 미국 연방 의회의 호의적 시각을 언급하고 있음
- '18년 농업법에서는 '14년 농업법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품목별 농가지원 정책을 강화하여 농가의 소득과 경영 안전망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으며, ① 주요 품목에 대한 유통융자지원제도의 융자단가율(loan rate) 인상하고, 수혜농가에 대한 지급상한(payment limit) 적용 배제 ② 기존 가격손실보상제도(PLC)에 실효기준가격개념을 도입하여¹⁰⁾ 농가에 유리하게 개선하였으며, 또한 수입손실보장제도(ARC)의 기준 수입 계산에도 동일하게 활용함(농민신문, 2019.1.24.)
- '18년 농업법은 미국 연방정부의 국가재정 감축 기조 아래 농업 부문의 예산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을 반영하여 재정지출 축소와 농정개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최근 수년간 농산물가격이 하락 추세를 보여 농가소득이 감소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무역분쟁으로 미국산 농축산물의 수출이 감소하는 등 미국 농업을 둘러싼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전통적으로 농업에 호의적인 민주당이 중간선거에 승리한 정치적 현실이 주요하게 작용하여 농업친화적인 방향으로 개정된 것으로 보임(농민신문, 2019.1.24.)
-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4-1>과 같음

10) 실효기준가격개념은 미국 연방의회 하원에서 제안한 것으로 과거의 농업법의 기준과 달리 미리 설정된 기준가격, 그리고 최근 5개년 중 최대·최소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의 85% 가운데 큰 것을 의미하며, 재정지출의 급격한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 기준가격의 115%를 넘지 않도록 함

표 4-16 미국 농업법의 변천과 주요 정책 내용

농업법	주요 정책
1996년 농업법	▪ 생산조정제 폐지 ▪ 가격지지용자제도 계속 ▪ 고정직불제 도입
'02년 농업법	▪ 가격지지용자제도 계속 ▪ 고정직불제 확대(대두 등 대상 확대) ▪ 가격보전 직불제(CCP) 도입 ▪ 환경정책 강화
'08년 농업법	▪ 고정직불제, CCP 유지(직불금 지급대상 제한, 지급상한 인하) ▪ 농촌개발정책 강화 ▪ 에너지정책 강화 ▪ 평균작물수입보전 도입
'14년 농업법	▪ 생산 중립적 직불제도 폐지 ▪ 가격보전직불제도(CCP), 수입보전직불제도(ACRE) 폐지 ▪ 가격손실보상(PLC)과 수입손실보상(ARC)을 도입하고, 농민에게 양자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18년 농업법	▪ 주요 품목에 대한 유통용자지원제도의 용자단가 인상 및 수혜농가에 대한 지급상한 적용 배제 ▪ 기존 가격손실보상제도(PLC)와 수입손실보상제도(ARC)에 실효기준가격개념 도입

※ 출처: 박성재 외(2008)의 내용을 기본으로하고, 이후 내용은 연구진 추가

□ 농어촌 혁신 및 경제발전 위원회(Council on Rural Community Innov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CRCIED)의 설치

○ CRCIED 설치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음

- CRCIED는 트럼프 행정부가 '17년에 대통령 행정명령 13790호에 (Executive Order 13790) 근거하여 설치했던 농업·농어촌의 번영 관련 범부처 작업단(Interagency Task Force on Agriculture and Rural Prosperity)을 확대·재편하고, 상설기구화시킨 위원회임

※ 개별 대통령이 발동하는 행정명령은 연방의회의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므로 그에 근거하는 연방행정부 기구의 설치에 쉽게 진행 가능하지만, 후임 대통령들이 새롭게 행정명령들을 발동하여 전임 대통령들의 행정명령들을 수정·폐지하기도 쉬우므로 행정명령에 근거하여서 설치한 연방

행정부 기구들의 안정성이 취약한데 법개정을 통해 상설기구화함

- CRCIED는 의회에서 제정한 「'18년 농업증진법(Agriculture Improvement Act of 2018)」에 근거하여 설치되었고 해당 법률은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하여서 제정하였으므로, 안정적 지속가능성을 보장 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 해당 위원회의 법제적 위상은 다음과 같음

- 행정부에서 국무부와 국토안전보장부를 제외한 모든 부의 장관과 백악관 직속 여타 연방행정부 기구의 수장 26명이 최소 규모 당연직 위원이고, 대통령 또는 해당 위원회의 당연직 의장인 농무부 장관은 필요하다면 다른 행정부 소속 국가기구의 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지명가능함

※ 행정부에서의 농림수산업과 향촌 대상 관련성을 지니는 모든 국가기구들이 관련 정책들 형성과정에서 참여를 촉진하도록 그 구조를 설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당연직 위원들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하여, 고위급 공무원을 대리 참석자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관심이나 권한이 없거나 크지 않은 하위 공무원들만이 참여하게 되는 문제를 예방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어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단순한 행정부 소속 자문위원회가 아니라, 행정부에서 농림수산업과 농어촌 관련 정책들을 조정하는 실질적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기능함

· 연방정부의 내부에서의 조정뿐만이 아니라 지방정부 및 민간 행위자들과의 조정도 담당하며, 대통령에게 권고사항들을 제안할 수 있음

- 해당 위원회에 참여하는 행정부 기구들은 해당 위원회가 요구하는 가능한 모든 자료들을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받음

- 해당 위원회에 참여에 따른 비용을 분담하여야 함

○ 해당 위원회가 관장하는 정책들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 농어촌에서 두드러지는 사회문제나 욕구 또는 특성에 한정하여 정책의 한계를 설정하지 아니하고, 지리적 적용 범위가 농어촌인 경우 거의 모든 사례와 관련하여 검토·조정이 가능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았음

- 행정부에서 국무부와 국토안전보장부의 참여 배제는, 이처럼 해당 위원회가 부여받게 되었던 권한의 포괄성을 반증함(내정과 관련한 거의 모든 관련 행정부 기구에서의 참여를 제도화함)
- 해당 위원회의 하부구조에서의 특성은 다음과 같음
 - 「18년 농업증진법」에서는 해당 위원회의 세부 조직들로 농어촌에서 전자통신기술 적용의 확대를 담당하는 작업단과 농어촌에서의 고용 촉진을 담당하는 작업단의 상설화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함
 - 필요시 해당 위원회는 산하에 작업단을 자유롭게 추가 설치할 수 있음
 - 작업단의 구성원들로는 해당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들이 자동 참여하게 규정하였고, 필요하다면 여타 행정부 소속 국가기구들의 수장이나 위촉받은 민간인들이 추가 참여 가능함

2.2. 일본 사례 분석

□ 지방농정국의 역사와 개요¹¹⁾

- 지방농정국의 역사와 기본개요는 다음과 같음
 - 1961년 농업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농업구조개선 그리고 기타 제반사항들과 관련된 시책은 지역의 자연적·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한 요청이 꾸준히 제기됨
 - 지방농정국이 설치되기 이전에는 농림수산성의 농지과, 식료과, 통계과, 어업임업과 등 각 과가 개별적으로 농업정책을 실시하였으나, 다양한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초기에는 농지과만을 대상으로 지방농정국을 설치하였고, 이후 식료과, 통계과, 어업임업과 등이 편입됨
 - 지방농정국과 각 도도부현청의 관계는 중앙정부·지방정부의 관계와 유사하

11) 오현석 외. 2018. 『해외 농정추진체계 사례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R836 연구자료 -1. 2018.12. pp. 108-118.

여, 법률적으로 현과의 업무 중복이 발생하지 않음

□ 지방농정국의 역할과 조직개편¹²⁾

○ 지방농정국의 업무는 다음과 같음

- 지방농정국은 농림수산성에서 정한 식량 농업·농촌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각 지역의 상황에 맞는 농정추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도도부현에서도 시정촌 등 기초지방정부와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추어 독자적으로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지방농정을 실현함
- 지방농정국은 농업분야의 예산집행에 관여하지 않으며, 농림수산성과 도도부현청 농정부와의 매개체 역할을 통해 현에서 실시하는 농업정책의 지원 및 감독 관리가 주요 업무임
- 지방농정국은 생산과 소비의 현장에 가까운 정부 기관이며 주요 업무는 ① 식량 농업·농촌에 관한 정책의 보급 및 지역의 실태 파악, ②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감시 및 지도와 행정업무, ③ 주요 식량업무의 실시, ④ 식품산업 행정의 추진, ⑤ 생산 및 경영을 통한 농업정책의 일체적 추진, ⑥ 농촌 및 중산간 지역의 진흥, ⑦ 농업·농촌 정비사업의 실시, 지도, 조정, ⑧ 통계작성 및 제공 등에 관한 사무로 구분됨

○ 지방농정국의 지방조직 개편은 다음과 같이 이뤄짐

- "농림수산업 지역의 활력 창조 계획"의 농정개혁 추진에 따라 마련된 "농림수산성 설치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이 '15년 10월 시행된 제189회 국회에 제출됨
- '일식'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되는 등 일본 국내외 외식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의 도모가 필요하며, 이에 "농림수산업지역의 활력창조 플랜"에서 '20년까지 농림수산물·농식품 수출액 수준을 1조엔 이상 증가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30년에는 수출액 5조엔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어 수출 촉진을 위한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

12) *ibid.*

- 이를 위해 ① 현장과 농정과의 접목을 통해 기능 강화를 위한 지방조직의 체제정비(지역센터 폐지 및 지방참사관의 지역거점 배치 시행), ② 수출확대를 위한 지방농정국의 소장사무 재검토(지방농정국의 소관사무에 농림수산성의 수출에 관한 업무 추가)를 실시함

□ 중앙행정부 농림수산업 관련 정책체계 변동¹³⁾

○ 1999년 이후 식료·농업·농촌정책심의회를 설치함

- 1999년에 농림수산업성 소속 자문위원회¹⁴⁾로서 식료·농업·농촌정책심의회(食料・農業・農村政策審議会[약칭 農政審])를 설치함
 - 식료·농업·농촌정책심의회는 그 내부에 하위조직들으로써 소위원회들을¹⁵⁾ 설치하여서 농업·농촌, 수산업·어촌, 그리고 임업·임촌과 관련성들을 지니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이해관계들을 반영할 수 있게 되었음
- ※ 현재 해당 심의회에 존재하고 있는 부회는 10개인데, 필요에 따라서 그 구성과 총수는 바뀌기도 함
 - 농림수산업성은 농업·농촌, 수산업·어촌, 그리고 임업·임촌과 관련성을 지니는 기본계획과 백서를 작성하면서 반드시 식료·농업·농촌정책심의 회로부터 의무적으로 검토받아야함
 - 1999년 이전에는 중앙행정부의 농림수산업과 자유민주당의 소속 국회의원들 가운데에서 농업·어업·임업의 이해관계들을 대표하는 이른바 농림족 그리고 과거에는 강력하게 중앙집권적 체계를 구축하고서는 적용하면서 농업·임업에서의 단일한 배타적 이익대표단체로서 기능하였던 전국농업협

13) <https://www.maff.go.jp/j/council/seisaku/index.html>,

<https://ja.wikipedia.org/wiki/%E8%BE%B2%E6%9E%97%E6%B0%B4%E7%94%A3%E7%9C%81%#%E7%B5%84%E7%B9%94>,

<https://ja.wikipedia.org/wiki/%E9%A3%9F%E6%96%99%E3%83%BB%E8%BE%B2%E6%A5%AD%E3%83%BB%E8%BE%B2%E6%9D%91%E6%94%BF%E7%AD%96%E5%AF%A9%E8%AD%B0%E4%BC%9A>를 참조하여 작성

14) 일본에서는 심의회(審議会)라고 지칭함

15) 일본에서는 흔히 부회(部会)라고 지칭함

- 동조합의(全国農業協同組合/Japan Agricultural Cooperatives[JAI]) 정상 기구인(peak organization) 전국농업협동조합 중앙회가 농업과 임업 관련 정책들의 결정권을 사실상 과점하면서 농업·임업 관련 보호무역정책을 지속하였음(농업·임업 관련 상품들의 수입 금지나 제한)
- 그러나 80년대 후반 혹은 90년대 전반부터는 일본에서 농업·임업 관련 기존 보호무역정책의 지속이 불가능해졌고 불만과 비판 여론이 증대함
 - 이에 농림수산성은 농림수산업에서의 경쟁과 혁신 촉진·보호 축소 위주의 합리화를 진행하고자 식료·농업·농촌정책심의회를 설치함
 - 50년대~80년대 후반 존재하였던 농림수산성, 자유민주당 농림족, 전국농업협동조합 중앙회가 농업·임업 관련 정책결정에서 주도권을 상실하게 됨
 - 다만, 농림수산성을 포함하는 중앙행정부는 식료·농업·농촌정책심의회 의원들을 선발하는 권한을 독점하므로, 식료·농업·농촌정책심의회 중앙행정부 대상 자율성은 많지 않으며, 식료·농업·농촌정책심의회는 자문 위원회이므로, 농림수산성을 포함하는 중앙행정부에서는 식료·농업·농촌 정책심의회가 표명한 견해에 구속받지 않음
- '16년 총리 직속 내각부의 산하기구로서 지방창생추진사무국(地方創生推進事務局)의 설치
- 일본에서는 '10년대 중반부터, 도시화율이 낮은 지역들에서의 인구 감소와 사회경제적 쇠퇴의 심화 때문에 발생하여 오고 있는 사회문제들을 경고하는 지방소멸 담론이 출현하여 지속되고 있음
 - 2차 아베 신조 행정부는 이러한 지방소멸 관련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2016년에 내각부에 지방창생추진사무국을 설치하였음
 - 지방소멸 위기를 겪는 일본의 거의 모든 지역들은 농촌·어촌·임촌이므로, 일본의 지방창생 관련 정책들은 거의 모두 농촌·어촌·임촌 대상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음
- 2차 아베 신조 행정부('12년~'20년)는 경제 전반을 담당하는 총리 직속 자문위원회들인 규제개혁회의와 산업경쟁력회의, 내각부 내부 한시기구인 농림수산업·지역활력창조본부(農林水産業・地域活力創造本部)를 농림수산업

에서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자 병용함

- 2차 아베 신조 행정부는 전국농업협동조합 중앙회가 오랫동안 고수하여 오고 있던 농업·임업에서의 경쟁 회피와 국가로부터의 비용 보조 의존을 약화시키려고 시도하였으며, 상당한 성공을 이룸
-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2차 아베 신조 행정부는 규제개혁회의와 산업경쟁력회의에서 농림수산업 개혁 제안들을 도출하도록 유도함
- 여기에서 도출된 제안은 내각부에서 발표하였던 일본재흥전략과 농림수산업·지역활력창조계획에 그대로 반영하거나 농림수산성, 농림수산성 식료·농업·농촌정책심의회, 자유민주당 농림족, 그리고 전국농업협동조합 중앙회에 전달하여서 농민·어민·임민들이 수용가능할 만한 타협안들을 도출하도록 설득하여 타협안들의 도출이 성공하였다면 이들을 내각부에서 발표하였던 일본재흥전략과 농림수산업·지역활력창조계획에 반영하는 정책환류체계를 활용함

○ 2차 아베 신조 행정부 시기('12년~'20년)에 일본 중앙행정부의 농림수산업 관련 정책체계에서 발생한 주요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음¹⁶⁾

- 전국농업협동조합 중앙회의 배타적 권한 약화(제거)
 - 전국농업협동조합 중앙회는 '10년대 중반까지 소속 조합들과 조합에 가입한 농업경영자들을 대상으로 독점적 통제권들을 행사할 수 있었음
 - 전국농업협동조합 중앙회는 특수법인으로서 부여받은 소속 조합들 대상 감독권과 지도권을 활용할 수 있었으며, 농업생산용 요소들과 농업생산물들의 유통·판매 대상 실질적 독점을 유지하였음
 - 2차 아베 신조 행정부는 '15년에 「전국농업협동조합법」의 개정을 통해 전국농업협동조합 중앙회의 배타적 대표권을 폐지하고 그 소속 조합들에게 경영에서의 자유를 확대했으며, 금융을 제외한 다른 상품들의 거래와 관련하여 전국농업협동조합의 전국 기구를 경유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

16) 한국에서 이미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나타난 변동사항을 제외하고, 고유하고 주목할 만한 변동사항들만을 제시함

- 농업 대상 일반 법인기업들의 참여 촉진을 유도함
- 농업 대상 일반 법인기업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에 일반 법인기업들의 농업 참여 금지·제한 대상을 축소함
- 이러한 의도를 반영하였던 구체적 정책은 일반 법인기업들의 농업생산법인들 대상 참여 가능 상한들의 확대, 지역 단위 농업위원회들에서의 선거·임명 병행 구성에서 완전한 임명으로의 전환, 중간지원기구들의 도입, 농업특구 지정이 포함됨

□ 식량안정공급·농림수산업기반강화본부(食料安定供給・農林水産業基盤強化本部)¹⁷⁾

- 농림수산업·지역이 미래에 국가활력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폭넓게 검토하고자 '13년 5월 21일 총리가 본부장이 되고, 내각관방대신, 농림수산대신을 공동 부분부장으로 하며 관계 각료가 참석하는 농림수산업·지역의 활력창조본부를 설치함
- 한편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림수산업의 기반 강화를 도모하고 스마트 농림수산업의 추진, 농림수산물·식품의 수출 촉진, 농림수산업의 그린화 등의 농림수산업의 성장산업화 및 식량안보 강화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22년 6월 28일 농림수산업·지역의 활력창조본부를 식량안정공급·농림수산업기반강화본부로 개편함
- 본부는 <농림수산업·지역활력창조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업 전반에 걸친 개혁을 실행함
 - 후계자에게 농지 집약·농지집적뱅크를 신설, 농협개혁, 수요에 대응한 쌀 생산 실현·쌀 정책 개혁 등을 이룸
 - 세계시장을 목표로 농림수산물·식품 수출 촉진에 앞장서고 있음
 - 이외에 임업의 성장산업화, 수산자원·산림자원의 적절한 관리, 식품 유통 개혁 등에 나서고 있음

17) https://www.maff.go.jp/j/kanbo/katsuryoku_plan/index.html

- 2020년 개정을 통해 본격적인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있음
- 소득 및 고용 기회의 확보를 추진함
- 다양한 형태로 농업에 관여하는 인구의 농산어촌 대상 유입을 꾀함
- 다양한 농지 이용 등과 사업체 육성을 통한 농산어촌발 혁신을 추진함
- '23년 6월 2일에 개최된 제4차 회의에서 '식량·농업·농촌정책의 새로운 전개 방향'을 결정하고, 다음의 3가지를 축으로 농정전환을 추진하기로 함
- 불가촉적인 식량확보 뿐만 아니라, 평시부터 국민 개개인이 식량에 접근할 수 있고 건강한 식생활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함
- 환경부담 저감 등 지속가능한 농업을 주류화할 것임
- 인구 감소 속에서도 지속가능하고 강력한 식량공급 기반의 확립을 위해 스마트 기술의 개발이나 서비스 사업체의 육성 등을 촉진하는 체계를 구축함

3. 소결

□ 국내 사례 시사점

- 위원회 통합에 따른 조직 및 절차 설계에 국내 사례들을 참고할 수 있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하고, 7개 분과위원회 130여명의 전문가들이 10개월에 걸쳐 계획을 작성하는 점을 참고할 수 있음
- 국민통합위원회: 비전과 정책과제의 유기적 연결, 17개 시도 지역협력위원회 구성 통한 연계 활동을 참고할 수 있음
-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기본계획과 타 계획의 관계, 보건복지부 내 사무국 설치 등을 참고해볼 수 있음

□ 국외 사례 시사점

- 미국과 일본에서 한국의 농어업위와 유사한 조직을 발견할 수 있음
 - 미국은 근거 법령을 정비하고 일본은 조직 명칭을 변경하는 등 해당 조직을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강화하고 있음이 확인됨
- (미국 CRCIED) 미국은 농림수산업 관련 범부처조직 설치하여 충분한 권한을 부여함
 -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통령 행정명령에 의해 설치했던 조직을 여야 합의를 거친 농업법 개정을 통해 상설기구화함
 - ※ 농업법에서 미국 인구의 16%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미국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지역 유지가 필수적이라는 점과 농어촌은 식품/섬유/에너지를 공급하면서 동시에 자연환경 보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음
 - 농무부 장관이 당연직 위원장이면서 연방정부에서 최소 26개 기관장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함
- (일본 식량안정공급·농림수산업기반강화본부) 일본은 농림수산업 관련 범부처조직을 설치하고, 식량안보 등의 정책방향을 강조하고 있음
 - '13년에 설치하였던 농림수산업·지역의 활력창조본부(본부장: 총리)를 '22년 식량안정공급·농림수산업기반강화본부로 명칭을 변경함
 - 농림수산업·지역활력창조계획을 수립하여 농정전환을 추진하고 있음
- 미국과 일본 사례에서 범부처 조직의 운영과 농림수산업 통합 계획의 수립·집행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음

제5장

추진체계 정비방안

추진체계 정비방안

1.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회 기능 강화의 필요성

1.1. 농어업, 농어촌 관련 정책조정의 중요성 증가

- 기후위기 및 지방소멸을 비롯한 다양한 농어촌 정책 환경의 변화로 국가 전체의 농어촌 관련 정책조정 기능의 필요성이 강화됨
- 비록 여러 부처들이 각각의 정책영역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종합적인 조정이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한계가 발생함
 - 윤석열 정부는 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영농 안정 대책, '27년 식량자급률 목표치 달성, 농산물 유통 디지털화 진전, 스마트농업 인프라 강화 등 다양한 농어촌 분야의 정책 난제를 해결하도록 요구받고 있음
 - 기후위기에 따른 식량자급률의 유지나 향상을 위한 국가 수준의 정책과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농어업 분야의 생산성 향상과 산업 전반의 변화가 필요함
 - 농어업,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국가 수준의 정책조정기구가 필요하며, 농어업위의 실효적 기능과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

- 기존 농어업위가 갖던 대통령 자문기구로서의 소극성을 개선하고, 농어업, 농어촌, 농어민의 삶과 관련된 정책조정과 정책기획의 기능 강화가 필요함. 미국의 농어촌 혁신 및 경제발전위원회와 같이 정책의 적극적 조정 기능이 필요한 상황임
-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다수의 정책이 농어촌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에 따라 부처 간의 기능 중복과 미래의 관련 정책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조정의 한계점 발생 가능. 농어촌 정책은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이 국정과제를 추진하거나 다수의 사업이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높은 상황임
- 농업 분야는 농산촌 지원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등의 국정과제가 추진중임
- 어업 분야는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과 관련된 다양한 국정과제 관련 사업이 추진중임
- 복지 분야는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 하는 사회 구현 등 중요한 국정과제들이 농어촌 지역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상황임
- 보건 분야는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등의 국정과제가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수행 중임
- 지방 분야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소통·협력 강화, 지방소멸 방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 등 직접적인 국정과제들이 여러 부처에 사업과 기능을 달리하여 수행중임

1.2. 농어업·농어촌 정책의 조정기능 기구의 한계점

□ 삶의질위 및 사무국 기능의 한계점

- 삶의질위가 형식적으로 운영된 측면이 있고, 삶의질기본계획을 심의하는 역

할을 담당하였으나 기본계획의 이행 수준을 점검하고 선도적인 정책을 제안하는 기능에 한계가 존재하였음

- 실무위원회나 분과위원회 회의조차 활발하게 이뤄졌다고 말하기 어려움
- 본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14개 부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22년 말 기준 9명의 민간위원이 위촉돼 총 2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5년마다 삶의 질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임무를 담당함
- 다만, 삶의 질위는 5년마다 수립되는 기본계획 심의를 위해서 제한적으로 개최됨. '05년~'22년까지 총 21회 개최되었는데, 그 중 13회가 서면보고였으며, 총리 대면보고는 8회에 불과하여 계획의 수립 후 조정·점검기능이 미흡
- 위원회 기능 미흡: 법률에 따라 정책 총괄·조정기구이지만 역할 미수행. 농어민 삶의 질, 보건의 질, 서비스의 질 등 정책총괄 기능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기본계획의 수립기능 이외에 정책의 집행수준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기능이 미흡하였음
- 농식품부 중심 운영: 실무위원회가 상당한 역할을 하였으나, 위원장을 농식품부 장관이 맡음으로써 농식품부 중심으로 운영되었다고 말할 수 있음
- 삶의 질위의 사무국 부재: 삶의 질 위원회를 구성하는 별도의 전담 사무국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농식품부에서 간사 역할을 하였으며, 전문지원기관에서 삶의 질 계획 수립 및 관련 제도 운영을 맡은 바 있음
- 삶의 질 위원회는 별도의 전담 사무국이 존재하지 않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간사위원의 역할을 하고, 외부의 전문지원기관의 지원을 받음
- 삶의 질 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소속 공무원 2인이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이로 인해 위원회의 본래 기능을 충실히 하는데 한계점이 발생함
- 부실한 기본계획: 몇 개의 큰 주제로 나눠 부처별 계획 및 정책들을 취합하는 것에 그쳐 방대하고 여타 계획과 중복한다는 비판이 존재함
- 지역 연계 부족: 삶의 질법은 지역 조직의 설치·운영을 정하고, 지역의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등 지역 연계를 강조하였으나 성과가 미비함

- 추진체계 미활성화: 사전협의, 농어촌영향평가, 농촌협약 등 다양한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어 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농어업위 및 사무국 기능의 한계점

- 농어촌의 정책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정책의 기획기능과 성과점검 기능이 다소 미흡함
- (농어업위 위원회 운영) 본위원회의 운영에서 장관 및 차관의 참석 실적이 다소 저조하였으며, 농식품부와 해수부가 관련 정책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함. 다만, 위촉직 위원들의 참석률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농어업위 사무국 기능) 과거 농어업위 사무국은 위원회 개최 및 회의자료 준비, 분과·특별위원회 개최 및 회의자료 준비, 위원회·분과·특별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협의·조정, 회의자료 배포 및 회의록 작성·보고 등 지원기능을 중심으로 운영됨

2. 위원회 기능강화 방향

2.1. 위원회의 5대 기능 강화

① 대통령 자문기능 강화: 임무 중심형 기관으로서 부처 발굴 과제와 자체 발굴 과제별 자문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변경

- 난제 중심(식량위기, 지방소멸 등)으로 의제를 발굴하고, 하위 의제로 구체화하면 대통령 자문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일본의 식량안정공급·농림수산업기반강화본부는 식량위기와 지방소멸 등

국가 단위의 임무를 보다 강조하고 있음

- 농어업위는 국가단위 먹거리 종합전략인 국가식량계획을 수립한 바 있음
-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시키는 것도 검토 가능함
- 참고사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임

② 부처간 정책 조정 및 협업기능 강화: 실태조사 → 사전협의 → 기본계획 → 실행 계획 → 이행점검 절차 활용-절차 제도화 통해 부처와의 협업 활성화

- 삶의질기본계획이 농업·임업·어업 분야의 다른 계획보다 높은 위상을 갖도록 하는 방향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 사회보장위원회의 근거 법률인 「사회보장기본법」 제17조는 사회보장기본계획이 다른 계획보다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고 정하고 있음
- 또한 국외사례에서 미국의 CRCIED의 높은 법제적 위상을 참조할 수 있음
- 대통령 또는 해당 위원회의 당연직 의장인 농무부 장관이 필요하다면 다른 행정부 소속 국가기구의 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지명함
- 이는 농어촌에 대한 관련성을 지니는 모든 국가기구들이 관련 정책 형성과정에 참여하게 하는 구조임
- 협업기능 강화를 위하여 삶의질위의 실무위 같은 위원회 조직 구성이 필요함
- 절차 제도화를 통해 부처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부처에서 예산 및 인력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함

③ 농어민 소통기능 강화: 농어업위의 차별화 기능으로, 적극적 소통의 필요

- 이를 위하여 조직에 대외협력팀을 강화하여 직능별·직업별·이슈별 소통 등 소통 채널의 체계화 및 다양화 필요함
- 국민통합위원회는 다양한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음
- 다양한 채널을 통한 적극적인 소통이 우선시되어야 함

④ 미래 대응 농정 의제 주도 기능 강화: 농업과학기술 혁신 및 확산 등에 나서 농업·농어촌의 지속가능성 위기 해결 방안 모색 필요

- 농정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소극적인 자문기구에서 탈피하여 중장기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조정하는 기능이 필요함
- 농어민이 활용, 체감하는 미래 대응을 위해서 기술 중심에서 농업인 중심으로의 재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조직 비전체계의 재설정이 요구됨¹⁸⁾
- 또한 스마트 팜/농장/양식 등은 부처간 협력과 민관협력이 필요하므로 통합적인 아젠다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¹⁹⁾

⑤ 정책 및 계획의 심의 및 평가기능 강화: 농어업위에 부재한 정책 및 계획의 점검, 평가, 심의기능 강화 필요

- 통합 위원회에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증가와 삶의 질 관련 정책 범위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부처에서 분야별 인력 파견이 필요함
- 위의 5대 기능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어업위법 및 관련 법령들의 개정이 필요함

□ 위의 5대 기능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어업위법 및 관련된 법령들의 개정이 필요함

- 농어업위의 설립 목적과 기능을 규정하는 법령의 개정이 필요함
- 농어업위가 후술하는 농업·농어촌 국가기본계획에 따라 부처간 정책 조정 및 협업 기능을 담당하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함
- 정책 및 계획의 심의 및 평가기능 강화를 위해 기존 삶의질법에서 관련된 기능의 법령 개정이 필요함

18) 농어업위는 <윤석열 정부 농정 비전과 중장기 정책 방향> 연구를 실시한 바 있음

19) 농어업위는 미래기술특위, 미래신산업특위, 규제완화특위를 신설·운영하는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발표하고(2023.4.6. 제31차 운영위원회), 5월 특별위원회 신설을 완료함

- 이 밖에도 농어민 소통기능 및 참여 등 5대 기능과 관련하여 향후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함

2.2. 위원회 기능강화를 위한 고려사항

□ 기존 지역조직 및 위원회의 협력적 연계 고려 필요

- 중앙-지방의 정책연계성 및 확장성을 위해서는 기존 지역조직 및 위원회와의 협력적 연계 고려가 필요함
 - 타 위원회의 경우 지역조직과 지방위원회 기능을 협력적으로 운영하여 의견 수렴과 정책확산의 매체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조직, 시도지사협의회 등 기존 협의체와의 협력적 연계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농어업위가 농어촌 현장과 보다 밀접한 정책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농어업회 의소와 연계한 농어업위 정책확산과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이 필요함

□ 법·제도적 근거 마련

- 농어업위 존치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법령의 개정이 필요함
 - ※ 현재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임
 - 미국 사례에서 농업·농어촌의 번영 관련 범부처 TF(Interagency Task Force on Agricultural and Rural Prosperity)를 농어촌 혁신 및 경제발전 위원회(CRCIED)로 확대재편하여 상설화시킨 것을 참조할 수 있음
 - 농어업위법에 삶의질법 구성요소들을 포함하여 법안 수정안의 재발의가 필요함(삶의질 조사 및 계획 수립과 관련된 사항 명료화 등)
 - 농어촌영향평가, 사전협의제도 등의 활용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위원회 환경 변화: 대통령 자문기구로서의 실효성 강화에 대한 관심, 지지, 참여가 요구됨

- 대통령실의 의사소통 및 결정 구조에서 농어업위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함으로써 의사결정자의 관심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함
- 1기 농어업위는 중장기 농정이슈 대응 전략에 집중하였는데, 앞으로도 농촌소멸, 삶의질 이슈 등은 타위원회와의 연합전략 모색이 필요함
- 2기 농어업위는 현안이슈 대응에 주력하였는데, 앞으로도 이해관계 기관과 집단의 조정자 역할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정기적인 농정이슈 보고대회, 현장형 보고대회 마련하여야 함(예: 봄·가을·농촌, 여름·겨울·어촌)

3. 분과위원회 및 사무국 조직 정비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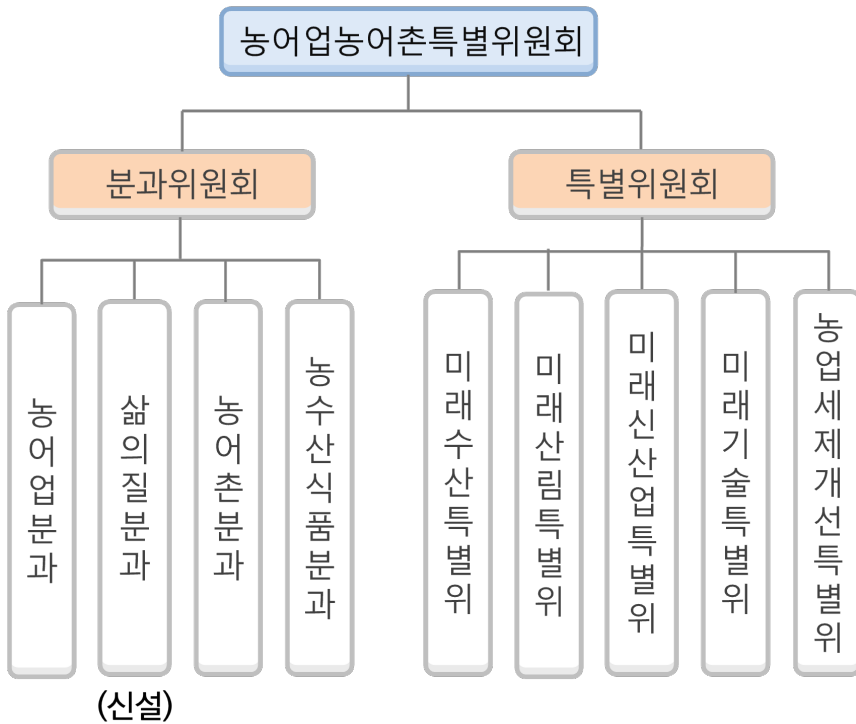
3.1. 분과위원회 정비 방안

□ 삶의질 위원회 기능을 위한 분과위원회 설치

- '23년 5월 현재 농어업위와 삶의질위가 통합되는 행정적 개편은 있었으나 각각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통합법령 개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삶의질위를 새롭게 출범한 농어업위의 분과위원회 중 하나로 임시적으로 설치하여 해당 기능을 담당케 하는 방안이 적절함
- 과거 삶의질위는 본회의 개최가 미흡하였으나 실무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활동이 활발하였으므로 해당 기능을 새롭게 출범한 농어업위의 분과위원회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삶의질 분과위원회와 타 분과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중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재는 근거법령의 통합 및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

- 은 상황에서 삶의질 분과위원회의 기능 및 기구 명칭의 유지가 적정함
- 다만, 향후 농어업위법과 삶의질법이 개정되어 두 법령의 통합 수준이 높은 상황에 이르게 되면 분과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재조정하는 후속 조치가 필요함

그림 5-1 농어업위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정비방안 구성(안)



□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중장기 변화 방향

- 현재 설치된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는 정책 영역과 대상이 다소 중복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농촌, 어촌, 산촌 지역의 주민들의 삶의 질은 산업(경제), 공간, 행정 서비스 등에 공통으로 영향을 받음

- 예를 들어 농어촌 분과위원회의 정책은 삶의질 분과위원회와 밀접한 연계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분과위원회 간의 의제 설정과 정책조정에 있어서 다소의 혼란이 발생가능함
- 현재 분과위원회에는 수산과 산촌에 관한 정책기능이 상대적으로 관심이 소홀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정책대상자(예: 농촌, 어촌, 산촌)와 정책기능(예: 산업, 복지, 공간·지역개발, 기술, 상품)으로 혼합된 분과위원회를 증장기적으로 정책기능 중심으로 재편하는 접근이 필요함
- 후술하는 농어업위의 정책기획과 조정기능을 ‘미래’, ‘산업’, ‘공간’, ‘사람’, ‘상품·기술’로 구분하여 분과위원회를 정책기능을 중심으로 개선하는 변화방향의 모색이 필요함
- 이에 따라 현재의 분과위원회는 예를 들어 △(가칭)미래농림수산분과(미래), △(가칭)농산어촌분과(공간), △(가칭)농림산업분과(산업), △(가칭)농림어업인분과(사람·복지·교육 등), △(가칭)농림수산상품분과(상품·기술)로 구분하는 접근도 고려 가능함

3.2. 사무국 조직정비 방안

□ 삶의질위 사무국 부재와 삶의질 사무국 기능 설치

- 삶의질위는 별도의 전담 사무조직이 부재하여 사실상 농어업위에 삶의질위의 사무국이 신설되는 상황임
- 두 개의 위원회가 통합되기 때문에 독립적인 사무국이 존재하는 2개의 위원회가 수평적으로 통합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삶의질위에 관한 기능과 사무는 농어업위에 신설됨
- 신설되는 삶의질위 사무국의 기능과 역할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직구조 및 인력구성 방안 마련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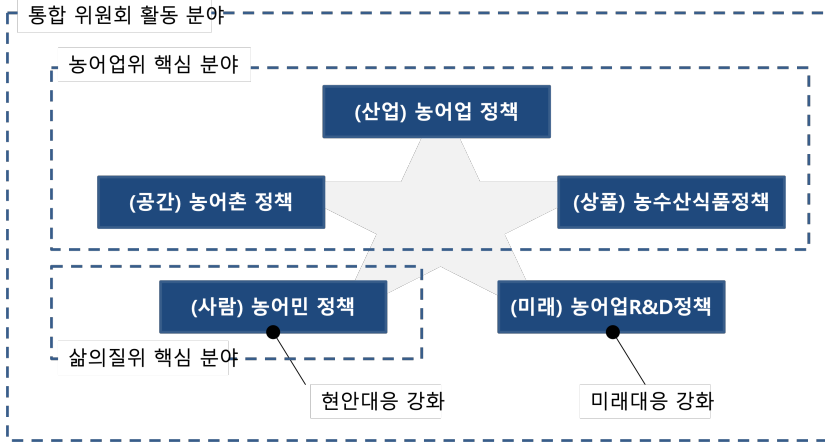
□ 정책의 심의·총괄·조정기구로서의 기능강화

- 대통령 자문기구와 관련 정책들의 조정기구로서의 속성들을 종합하여 정책의 심의·총괄·조정기구로서 기능강화가 필요함
- 농어업위의 고유기능과 이질적인 속성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농어업위의 핵심기능의 확립과 기능강화 필요성이 제기됨
 - 농어업위는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협의 및 협의 요청 권한 중심 분과위원회였으나 삶의질위의 정책 심의·총괄·조정 관련 조직·권한을 통합시킴
 -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위주의 운영에서 부처가 참여하는 실무위원회 운영도 고려가 필요함
 - 기존 농어업위는 사무국이 설치되어 지원기능 수행이 주요 업무였으나 삶의질위는 농식품부가 간사 기능을 담당하는 기구로서 운영됨

□ 기능의 체계화 및 영역별 정책 구분

- 농어업위의 기능을 체계화하고 영역별로 정책을 구분해볼 수 있음
- 위원회가 현안 대응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미래 정책과 현안 이슈에 균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영역과 대상을 구분하여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및 사무국을 구성해야 함
- 통합 위원회는 ‘미래’, ‘산업’, ‘공간’, ‘상품·기술’, ‘사람’ 5개 핵심영역으로 조직하고, 미래 정책과 현안 이슈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로 구성함
 - 특히,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의제 주도 기능이 중요함
 - 농어업·농어촌 위기 대응, 삶의 질 향상 등 다부처 협업, 중장기 정책방향, 사회적 합의 필요 과제의 논의 관련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부처 제출 자료를 단순 취합·평가하는 한계에서 벗어나 현장 목소리 중심의 의제를 발굴하고, 관계기관 사이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의제 선정이 요구됨
 - 미래 농어업·농어촌 정책의제를 주도하면서 원활한 농어업·농어촌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관련 중장기 발전계획을 담당해야 함

그림 5-2 농어업위 정책영역



□ 위원회 위상 및 권한 강화

- 농어업위의 정책조정 역량 강화를 위해 위원회의 위상 및 권한 강화가 필요함
- 사무국의 전문성과 업무 지속성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위상 확보가 필요하며, 이에 다음과 같은 쟁점이 도출됨
 - 통합된 농어업위의 정책 조정기능 강화를 위해서 사무국의 직급과 직제 개편 필요
 - 국(2급) → 단(1급), 팀(4급) → 과(3·4급), 개인사무의 분화 및 팀 개편
 - 기존 농어업위 내에 삶의질과 지역개발 등의 정책 총괄과 조정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정책점검 및 평가기능의 명확화 및 확대가 필요함
 - 교육, 보건복지, 교통, 통신 등 관련된 정책분야의 정책조정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통합된 농어업위에 담당 기능과 사무를 제시하고 관련 부처의 공무원 파견 및 전문인력의 확보 필요함(농어업인삶의질법 제10조2)
 -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운영·관리·안전상정 지원 기능에서 확대하여 (삶의질 관련 등) 정책의 조정심의, 평가기능 확대 필요함
- 중장기적으로 위원장 체계를 개편하여 정책 조정기능의 강화를 모색할 수도 있으며, 특히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향 고려 가능함

- 대통령(위원장) - 민간전문가(부위원장) 모형: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국무총리(공동위원장, 민간전문가(공동위원장) 모형: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통합 농어업위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및 사무국 구성 방향

-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설치 형태에 따른 사무국의 국(과)단위, 과(팀)단위 조직의 업무와 기능연계성을 고려하여 사무국의 기능과 역할을 조정하는 접근이 필요함
- 사무국의 전문성과 업무 지속성 강화를 위해 전문지원기관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위원회 내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충원하는 접근이 필요함
 - 전문지원기관 연계성 확대 및 강화: 통합된 농어업위는 기존 삶의질위의 전문지원기관에서 확대하여 전문지원기관과의 연계성 확대 및 강화를 추구하는 접근이 필요함
 - 특히, 삶의질기본계획을 비롯한 각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된 조사·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지원기관과의 밀접한 거버넌스가 필요함
 - 기존 전문지원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삶의질 정책연구센터),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 전문지원기관 확대: 정책기획 및 평가(한국행정연구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법률 및 제도개정(한국법제연구원) 등
 - 연구·조사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의 확보와 안정적인 인력 운영이 필요함
 - 전임 공무원의 증원: 사무국의 조사·평가 담당 부서의 신설, 전문직 전임 공무원 증원이 필요함
 - 업무 특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배분: 파견 인력은 현안 이슈 및 기관과의 협의와 조정에 유리하도록 하며, 전담인력은 조사, 평가, 정책기획 등의 중장기적 계획 업무를 수행하도록 업무 배분 설정이 필요함
- 위원회의 정책조정 및 미래 정책기획을 위한 사무국의 예산 확보 필요함
 - 정책조정과 추진을 위한 지원 예산: 정책조정을 위한 시범사업 등 정책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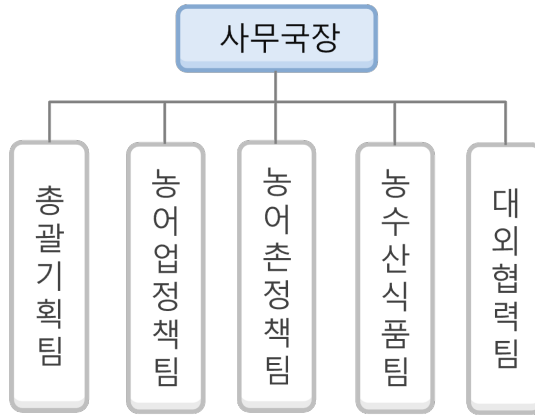
- 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예산 확보와 편성이 필요함
- 현재는 관련 부처의 사업 예산을 지원받아 조사를 수행하고 있음
- 전문지원기관의 역할 지원 예산: KREI, KMI 등을 통해서 농어촌 사회의 현황을 조사·평가하므로, 관련 정책에서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전문 지원기관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예산의 확보가 필요함

3.3 사무국 조직 개편(안)

□ 사무국 조직 개편 방안

- 직제변경: 1국 5팀 → 1단 2국 9과
 - 국-팀의 2단계로 구성된 단순한 조직 형태(직제)를 단-국-과로 3단계 형태로 정비함
 - 기능 조정 및 강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정책기획과 조정을 위한 평가기능 강화가 필요함
 - 삶의질기본계획의 수립과 조사 및 분석 지원 기능 강화가 필요함
 - 다양한 정책관계자들과의 대외소통 기능 강화가 필요함
- 기존 두 위원회의 한계점(형식적 운영, 위원회 실효적 기능 미흡, 사무국 전문성 및 기능 미비,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부족, 추진체계 미활성화) 개선 필요함
- 조직도 변경(안)은 다음과 같음
 - 현행(개편 전) 농어업위 조직도는 다음과 같음
 - 분과위 및 특별위 운영 지원기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 위원회 결정사항 점검 및 평가 기능이 미흡함
 - 부처간 정책사업 및 시행계획 조정기능이 부재함
 - 전문지원기관이 부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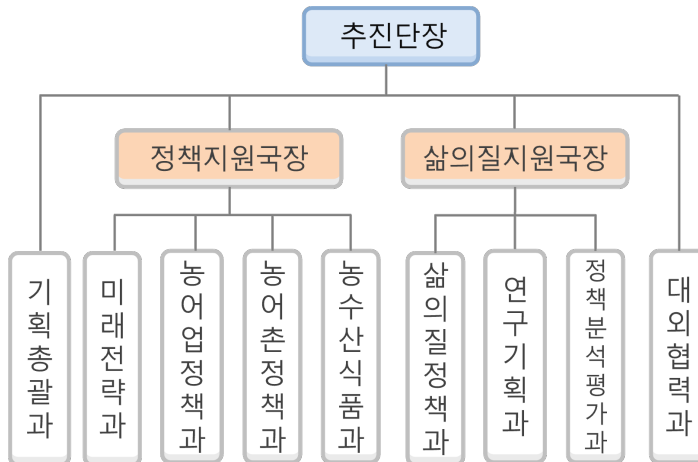
그림 5-3 현행(개편 전) 농어업위 조직도



* 삶의질위 사무국 부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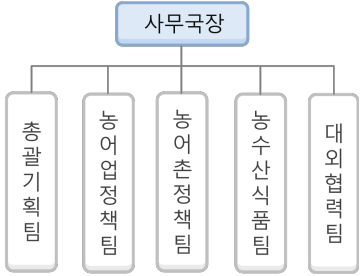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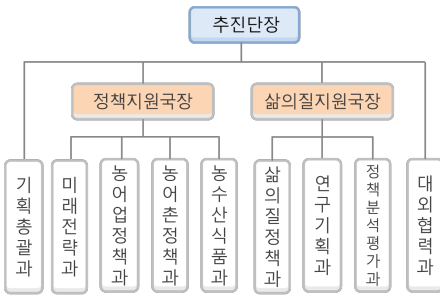
- 개편 후 (통합)농어업위의 조직도는 다음과 같음
 - 삶의질 및 각종 시행계획 수립 및 조사 기능 부여
 - 부처별 시행계획 점검 및 성과분석·평가 기능 부여
 - 대외협력과를 통한 농어촌 소통기능 부여
 - 전문지원기관과의 협력 및 조사와 분석 기능 부여

그림 5-4 통합(개편 후) 농어업위 조직도



○ 조직변화의 기능 조정사항은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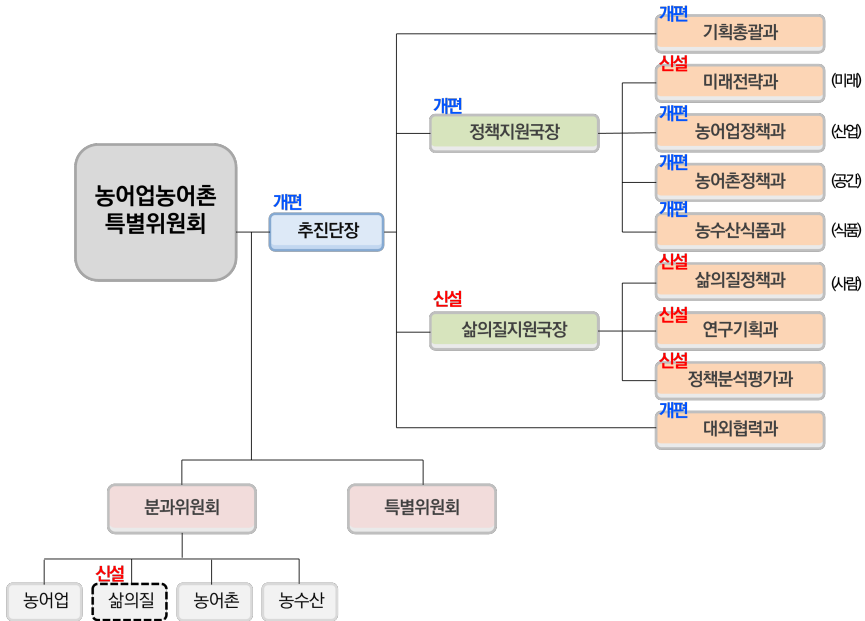
표 5-1 농어업위 개편전후 비교

개편 전	개편 후
 ※ 삶의질위 사무국 부재	
● 분과위 및 특별위 운영지원기능에 초점 ● 위원회 결정사항 점검 및 평가기능 미흡 ● 부처간 정책사업 및 시행계획 조정기능 부재 ● 전문지원기관 없음	● 삶의질지원국 신설 ● 미래전략과 신설: 장기발전계획 등 미래 정책 기획 및 조정기능 강화 ● 삶의질 정책과 신설: 삶의질 특별위원회, 실무위원회 운영시 위원회 지원과 정책아젠다 발굴과 관리 ● 연구기획과 신설: 삶의질 법에 근거한 각종 조사기획 및 시행(연구결과와 도출). 전문지원기관과의 협력 및 연구기획 기능 강화 ● 정책분석평가과 신설: 부처별 시행계획 점검 및 성과분석·평가를 통한 위원회의 실효적 조정기능 강화 ● 대외협력과 기능강화: 지방농어촌 소통기능 강화

- 기존 사무국장은 추진단장으로 명칭변경과 위상 강화
- 삶의질지원국을 신설하여 삶의질 분과위원회 지원·운영, 농어업위의 정책 전반의 기획과 분석평가 기능을 담당함

○ 농어업위 위원회 및 사무국 구성(안)은 다음과 같음

그림 5-5 통합(개편 후) 농어업위 위원회 및 사무국 구성(안)



- 농어업위는 대통령 자문기구에서 임무중심형 위원회 기관으로 기능변화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개편되는 사무국은 다음과 같은 기능과 활동이 필요함
- 미래 농림어업정책의 의제를 주도하기 위해 농어업위가 장기발전계획을 담당함
 - 농어업위의 정책조정기능의 적용 범위 확대가 필요함(교육, 보건복지, 산업 등)
 - 농어업위와 추진단에 다양한 부처 참여를 위한 인력(현원) 파견이 요구됨
 - 정책 및 계획의 심의 및 평가기능 강화: 농어업위에 부재한 정책 및 계획의 점검, 평가, 심의 기능의 강화 필요함

3.4 사무국 조직의 부서별 직제 및 적정 인력규모(안)

- 위원회 운영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고려한 조직 구조, 인력 규모, 예산의 편성이 필요함
- 현원 변경: 26명 → 60명(삶의질지원국 신설, 농어업인정책(삶의질 관련))

표 5-2 직제 및 적정 인력규모(안)

현재 직제/정원		공무원/ 타 기관 파견	임기제· 공무직	직제 개편(안)		공무원/ 타 기관 파견	임기제· 공무직
명칭	현원			명칭	정원		
총괄기획팀	5	3	2	기획총괄과	7	3	4
농어촌 정책팀	6	4	2	정책 지원국 (1)	미래전략과	2	4
농어업 정책팀	5	4	1		농어업정책과	2	4
농수산 식품팀	5	4	1		농어촌정책과	2	5
					농수산물식품과	2	4
대외협력팀	3	1	2	삶의질 지원국 (1)	삶의질정책과	2	5
					연구기획과	2	4
					분석평가과	2	4
				대외협력과	5	1	4
합계 (비서1인 추 가)	26	17	8	합계 (단장1인, 국장 2인, 비서1인 추가)	60	18	38

- 사무국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인력과 예산의 증가가 불가피하지만, 효율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접근이 필요함

- 현원이 26명에서 60명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임기제 및 공무원 인력의 신규 채용을 최소화하며, 관계부처의 인력을 파견받아 정책 집행과 조정에서의 실효성을 강화함
- 삶의질위 기능을 수행하고자 보건복지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의 인력과 사업인력을 이관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인원 증원과 예산 증액 최소화함(파견:임기직인력 비율을 38:18로 조정함)
 - 삶의질위 관련 사무국 신설 및 인력(교육, 보건복지 등 분야별 파견인력의 필요) 충원이 필요함
 - 위원회의 전문성과 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공무원 및 타기관 파견인력과 임기제 공무원 인력은 약 38:18 비율로 구성함

표 5-3 업무분장(안)

구분		기능	계
기획총괄과		● 예산, 인사, 회계 등의 총괄 기능 ● 주요업무계획 및 당면현안 보고에 관한 사항 ● 「농어업위 법령」 및 「위원회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 부처 실천계획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 국정과제협의회 등 타 위원회 협력에 관한 사항 ● 국회에 관한 업무 총괄 ● 계약, 재산등록, 정보공개 및 기록물 관리 등	7
정책지원국	미래전략과	● 농어촌 장기발전계획 수립 ● 주요 부처의 법정계획 간 조정 ● 미래 아젠다 발굴(신기술, 농정전환) 및 안건개발 ● 대통령실 정기보고 사항 점검 및 지시사항 대처 ● 삶의질, 농어촌복지 및 서비스 등 기본계획수립 기획 ● 실무위원회 운영 및 지원	6
	농어업정책과(산업)	● 농어업분과위원회 운영·관리 ● 미래신산업특별위원회 운영 ● 소관 의제 정책연구 및 안건 상정 ● 소관 의결의안 이행계획 관리에 관한 사항	6

삶의 질 지원국		● 의결의안 이행계획 관리, 성과점검 사항지원 및 보고(서무 등)	
	농어촌 정책과 (공간)	● 농어촌분과위원회 운영 ● 농업 세제개선 특별위원회 운영 ● 미래산림특별위원회 운영 ● 소관 의제 정책연구 및 안건 상정 ● 소관 의결의안 이행계획 관리에 관한 사항 ● 의결의안 이행계획 관리, 성과점검 사항지원 및 보고(서무 등)	7
	농수산 식품과 (수산/식품)	● 농수산식품분과위원회 운영 ● 미래수산혁신특별위원회 운영 ● 미래수산특별위원회 워킹그룹 운영 ● 소관 의제 정책연구 및 안건 상정 ● 소관 의결의안 이행계획 관리에 관한 사항 ● 의결의안 이행계획 관리, 성과점검 사항지원 및 보고(서무 등)	6
	삶의 질 정책과 (사람)	● 삶의 질 분과위원회 운영 ● 삶의 질 특별위 운영 및 관리(보건복지, 교육 등) ● 실무위원회 운영 및 관리(보건복지, 교육 등) ● 소관 의제 정책연구 및 안건 상정 ● 소관 의결의안 이행계획 관리에 관한 사항 ● 의결의안 이행계획 관리, 성과점검 사항지원 및 보고(서무 등)	7
	연구 기획과 (시행-전)	● 농어촌 장기발전계획 관련 연구 기획 ● 미래 농정 아젠다 정책연구 및 안건 상정 ● 지역개발, 농어촌서비스 기준설정, 농어촌영향평가 기획 ● 부처별 시행계획 사전협의 및 조정(연계·적절성) ● 전문기관의 조사 및 점검계획	6
	정책 분석 평가과 (시행-후)	● 삶의 질, 농어촌복지 및 서비스 시행계획 점검 및 평가환류 ● 현장 모니터링 및 정책 현안과제 발굴 ● 전문기관의 조사시행 및 결과분석 ● 부처별 이행계획 성과점검 및 개선사항 안건 상정	6
	대외협력과	● 지방·농어촌 소통 및 협력기능 ● 국회 등 대관 협조 및 지원기능 ● 소관 위원회 소통, 홍보에 관한 업무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홍보 운영·관리 업무 ● 언론사 취재 협조 및 대응 업무(지원) ● 정책홍보 및 지방기구(조직) 협력	5
인원 합계(단장1인, 국장 2인, 비서1인 포함)			60

3.5 적정규모의 예산(안)

○ 적정 예산 규모는 다음과 같음

- 예산편성의 효율화와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려는 최대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무실 임차료, 소수의 전문임기제·공무직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등의 증액이 불가피함
- 예산의 규모를 살펴보면 농어업위 사무국 36.5억 원, 삶의질위 업무관련 20.0억 원이 기존에 소요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22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전문지원기관)에 10.1억 수준의 민간위탁사업비 예산을 농어업위 예산으로 편성함
 - 어업인 삶의질 실태조사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수행 예정이며 사업예산(7억 원) 편성함
 - 농촌진흥청은 농어업인복지실태조사 및 농어촌서비스 기준 관련 전문기관 지원(3억 원) 예산 편성함

표 5-4 농어업위 및 삶의질위 연도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농어업위 합계	2,908	3,966	3,969	3,954
회의예산	433	302	1,093	438
사무국예산	1,609	3,664	1,276	2,016
사업예산	866	-	1,600	1,500
삶의질위 합계	1,155	1,099	1,099	1,044
회의예산	-	27	-	-
사무국예산	157	79	106	51
사업예산	998	993	993	993

* 출처: 각 년도 행정기관위원회 현황 자료

- 예산편성의 효율화와 재무건전성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무실 임차료, 소수의 전문임기제·공무직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정책기획을 위한 연구용역비 등의 증액이 불가피하며 적정 예산은 92.8억 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위에서 제시한 농어업위·삶의질위가 기존에 집행한 예산에 예산 산출안 약 60억 원에서 임차료, 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포함할 경우 92.8억 원으로 도출됨

표 5-5 농어업위 사무국 운영 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분	'23년 예산	조직개편예산(안)	비고
합계	3,658	9,280	
인건비	591	997	
운영비	1,897	3,186	
여비	118	191	
업무추진비	102	174	
직무수행경비	93	111	
연구용역비	800	2,000	
민간이전	39	2,065	전문지원기관 예산
건설비	-	150	
유형자산	20	170	
무형자산	-	235	

3.6 법률의 개정방향 및 부분개정(안)

□ 농어업·농어촌위원회 법령 개정 방향

- 외국의 사례(예: 미국, 일본)에서 나타나듯이 주요 선진국은 농어업 정책이 범부처 정책의제로 매우 중요하며 이에 따라 정책조정의 체계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기구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함
- 하지만 현재 농어업위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구분된 법령체계에 근거함
- 기존 농어업위법과 삶의질법은 분절적으로 설계되어 종합적인 농어업 관련 정책을 조정하는 권한과 기능을 명확하게 제시하는데 큰 한계점이 발생하고 있음
- 이 밖에도 부처들은 개별적으로 국가법정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고 있어 농어산촌분야, 농수산업분야, 산림분야, 주민복지 등 농어업과 관련된 국가 기본계획이 중복적·분절적으로 수립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며, 농어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정책수립과 조정이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됨
 - 예를 들어 농업식품기본법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기본계획」, 공공보건의료법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 해양수산법에 따른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등이 있음
 - 이 밖에도 농어업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국가법정계획은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지역특화작목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 「고령자고용촉진 기본계획」, 「축산계열화사업발전 기본계획」,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 기본계획」, 「조경진흥 기본계획」 등 종류와 대상이 다양함
- 상술한 국가법정계획의 난립과 정책조정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농

- 어업위의 근거 법령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법률안으로 명시(포함)하여 정책조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농어업위 기능 강화가 필요함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명칭을 농어업농어촌위원회로 변경함
 - 개정된 법률안에 농어업위 기능으로 “농어업·농어촌위원회가 「농어업·농어촌 국가장기발전계획」 수립한다.”의 명시가 필요함
 - 개정된 법률안에 농어업위가 수립한 “농어업·농어촌 국가장기발전계획은 부처별 법정계획을 수립하는데 근거가 된다.”의 명시가 필요함
 - 이에 따라 농업, 어업, 축산업, 보건·복지, 교육, 고용 등의 정책을 관장하는 부처가 국가법정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장기발전계획을 참조하고 정책조정이 이루어지도록 변화를 촉진함. 또한, 부처에 관련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관계기관은 농어업·농어촌 국가장기발전계획의 농어업 정책환경과 정책방향에 근거하여 국가법정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고 조정한다”고 명시가 필요함
 - 개정된 법령에는 농어업 국가장기발전계획에 근거하여 부처의 정책과 각종 계획·사업에 대해 “농어업·농어촌위원회는 농어업·농어촌 국가장기발전계획의 달성을 위해 관련 국가법정계획의 적정성 심의와 관련 사업의 정책평가를 수행한다.”고 명시가 필요함
 - 통합 농어업위에 설치되는 삶의질지원국과 삶의질정책과가 과거 삶의질위의 실무위원회를 대체한다는 사항을 법률 개정에도 포함 필요
 - 농어업위 법률에서 농어업위의 존속 시한 규정 조항 삭제도 개정사항에 포함 필요함

□ 법률부분 개정(안)

- 농어업위는 현재 2개의 법령에 근거하고 있음
 - 농어업위법과 농어업인 삶의질 법에 의해서 농어업위의 권한과 책임을 명문화되고 있음
- 농어업위법의 일부개정(안)은 다음과 같음

표 5-6 농어업위법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생략)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② ----- 사항에 대한 협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신설>	8의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원회의 심의·평가 등을 거치도록 한 사항
9. (생략)	9. (현행과 같음)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 50명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③ ----- -----.
1. 기획재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

2. (생 략) ④ (생 략)	、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 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 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 가족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 양수산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 관、국무조정실장、식품의약품안 전처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	--

○ 농어업인 삶의 질 법 일부개정(안)은 다음과 같음

표 5-7 농어업인 삶의 질 법 일부개정(안) 신규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② 정부는 기본계획을 세울 때 에는 제10조에 따른 농어업인 삶 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 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 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정부는 기본계획을 세울 때 에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를 거쳐야 한다. ----.
제10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① 농어업	제10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삭 제>

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를 둔다.

② (생 략)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단체의 대표자와 농어촌의 복지, 교육, 지역개발 분야에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현행 제2항과 같음)

<삭 제>

<삭 제>

위촉하는 사람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 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삭 제>
⑥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 되, 간사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 관이 된다.	<삭 제>
⑦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의 소속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삭 제>
⑧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 원회”라 한다)를 둔다.	<삭 제>
⑨ 위원회의 운영 및 실무위원 회의 구성·기능·운영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